

制憲國會經過報告書

國會事務處

制憲國會經過報告書

國會事務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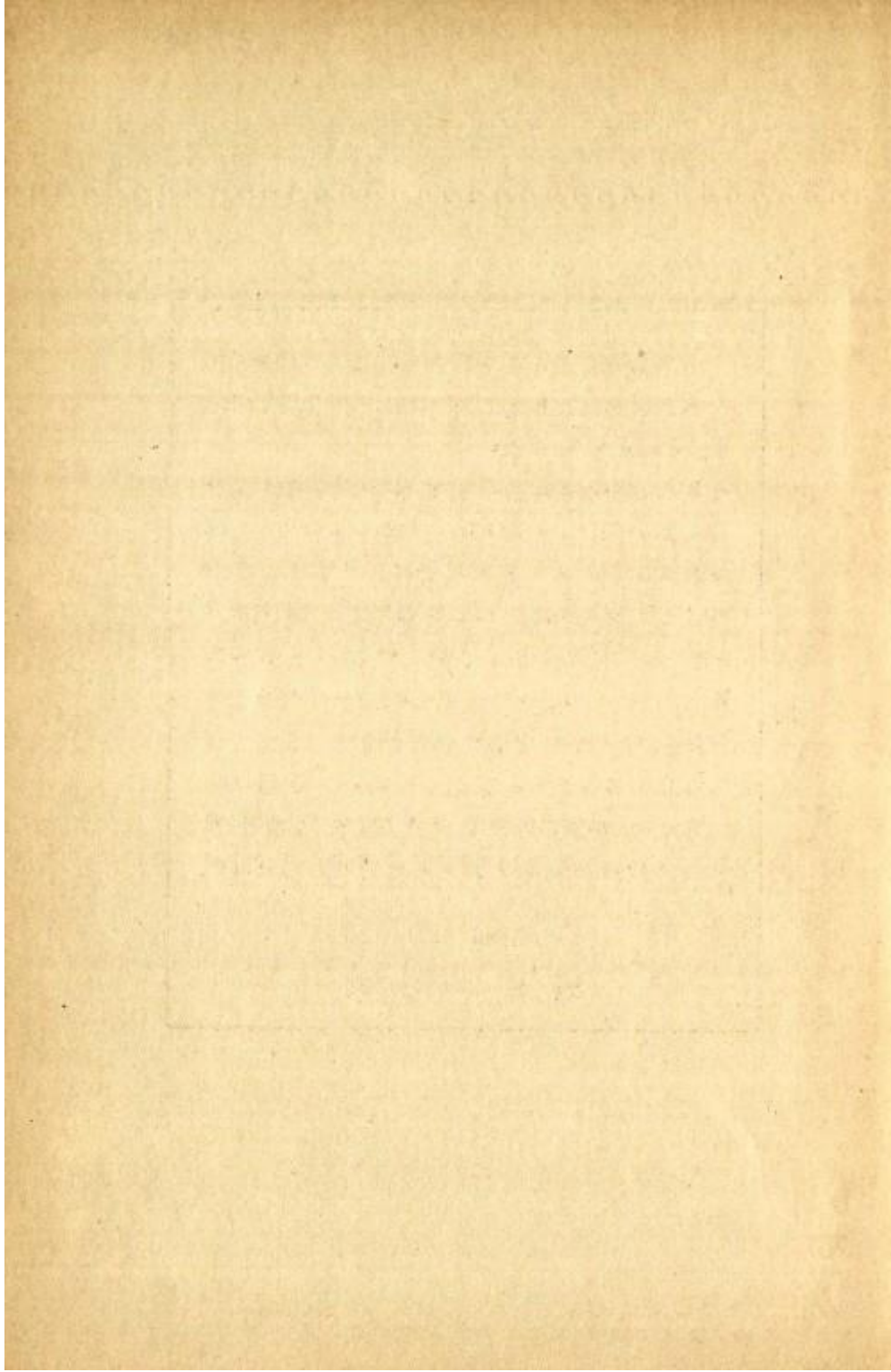
이 經過報告書는 制憲國會부터 第5代國會까지의 代別經過報告書 年次發刊計劃의 마무리 段階로서 發刊하게 된 것입니다.

本 經過報告書를 作成함에 있어 制憲國會 本會議會議錄·國會十年誌·國會史·議政30年史등 國會事務處에서 이미 發刊한 資料를 中心으로 整理하였으나 制憲國會를 비롯한 議政史 初期 過程에 대한 資料의 未備 또는 保存上의 問題와 6.25 動亂으로 인한 各種 史料의 紛失로 인하여 作成上에 難點이 많았으며, 他資料와 統計數值 또는 一部 內容上에 多少差異도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追後 本 經過報告書에 대한 補訂이 必要할 때에는 再發刊코자 하니 많은 高見있기를 바랍니다.

1986. 12. .

國 會 事 務 處



目 次

1. 集會와 會期

가. 集會一覽	3
나. 年度別 集會一覽	3
다. 集會公告日과 集會日	4
라. 會期·本會議開議日數와 時間	4
마. 國會議事堂所在	5
바. 委員會와 그 開會日數	5

2. 議員과 委員

가. 議員姓名과 그 異動	8
(1) 議員姓名	8
(2) 議員異動	19
(3) 會期別 議員異動一覽	21
나. 交涉團體와 그 變遷	22
(1) 交涉團體所屬議員	22
(2) 交涉團體의 構成員數 및 比率	30
다. 委員姓名과 그 異動	35
(1) 全院委員	35
(2) 常任委員	35
(3) 特別委員	58

3.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

가. 國務總理	65
나. 國務委員	65
다. 政府委員	67

4. 議 案

가. 議案提出 및 處理	70
(1) 豫算案과 決算	71
(2) 法律案	73
(3) 法律案再議의 件	90
(4) 同意(承認)案	91
(5) 建議案	94
(6) 決議案	99
(7) 重要動議	108
(8) 議員懲戒	114
나. 國政監査와 事件調查報告	117
다. 選舉와 任命承認	119
(1) 選舉	119
(2) 任命承認	120
라. 請願提出 및 處理	121

5. 演 說

가. 大統領施政方針演說	135
나. 外賓演說	135

6. 質問と 答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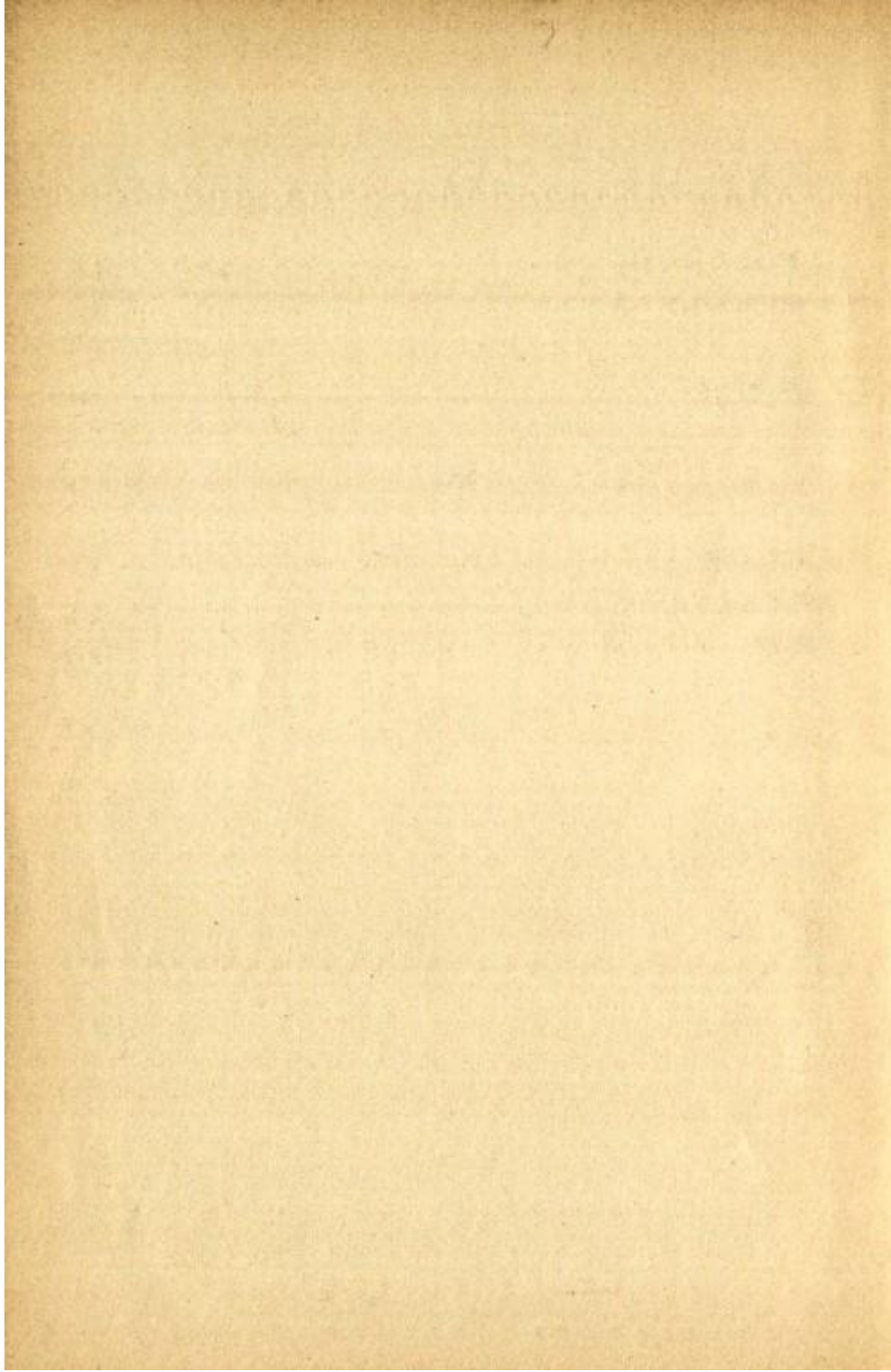
가. 緊急質問과 答辯	136
나. 質問과 答辯	141

7. 國會運營

143

附 錄

○ 式辭와 致辭	227
○ 大統領施政方針演說	295
○ 外賓演說	313



概 況

制憲國會는 1948年 3月 17日 美軍政法令 第175號로 公布된 國會議員選舉法에 따라 同年 5月 10日 選舉possible한 南韓地域에서만 國會議員總選舉를 實施한 결과 共產主義者들에 의한 暴動때문에 選舉를 實施할 수 없었던 北濟州 甲·乙 地域區의 2人(1949年 5月 10日 選舉)을 제외한 全地域區에서 193人的 議員을 選出하여 構成하게 되었다.

總選後 制憲國會의 最初集會召集 및 會議進行節次를 論議하기 위하여 5月 21日 「國會召集을 爲한 準備委員會」가 結成되었으며 5月 27日에는 「國會議員豫備會議」를 召集하여 制憲國會最初召集日을 5月 31日로 決定하고 開院式節次와 國會法이 制定될 때까지의 國會運營에 관한 臨時規則의 立案을 「國會召集을 爲한 準備委員會」에 委任하였다.

그리하여 1948年 5月 31日 午前 10時에 中央廳議事堂에서 第1次本會議를 開議하여 開會式節次 및 「國會準則」을 議決하고 議長團을 選出한 다음 午後 2時에는 歷史的인 開院式을 舉行함으로써 制憲國會의 構成은 完了되었다. 그翌日인 6月 1日에는 第2次本會議를 열어「憲法 및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와 「國會法起草委員會」를 設置하였으며, 同年 6月 10日에 「國會法」을, 7月 12日에 「憲法」을 그리고 7月 16日에는 「政府組織法」을 制定함으로써 大韓民國 政府樹立을 위한 基本的 立法措置를 完了하게 되었다.

또한 7月 20日 第33次本會議에서는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出하였고 8月 5日에는 大法院長任命承認要請을 同意함으로써 마침내 8月 15日에는 새政府樹立을 世界萬邦에 宣布하게 되었다.

2年間의 制憲國會 任期中 第1回國會부터 第6回國會까지 2回의 定期會와 4回의 臨時會를 가지면서 總會期 640日동안 399次의 本

會議와 總 902 次의 常任委員會를 開議하였으며, 5 次의 全院委員會를 開催하였다. 이 중 399 次의 本會議 總會議時間은 1,158 時間 47 分이었고 1 日 平均會議時間은 2 時間 54 分이었다.

議員異動狀況을 보면, 退職 8 人, 死亡 2 人, 資格喪失 10 人과 補闕選舉에 의한 選出 8 人, 再選舉에 의한 選出 1 人으로서 任期滿了 時의 議員在籍數는 188 人 이었다.

制憲國會中 議案提出 및 處理現況을 보면, 提出된 議案의 總件數는 488 件으로 그중 可決된 것이 346 件이고, 否決된 것이 9 件, 廢棄 50 件, 撤回 7 件, 保留 13 件 그리고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가 63 件으로 議案處理比率는 約 87.1 % 였다.

그리고 請願은, 總 226 件이 提出되어 그중 29 件이 採擇되었고 5 件이 未上程 되었으며 나머지는 廢棄되었다.

1986 年 12 月 日

國會事務處 議事局

1. 集會와 會期

가. 集會一覽

集 會 回 數						會 期 總日數	開 議 總日數	會 議 總時間	一日平均 會議時間
臨 時 會				定期會	計				
國會選 舉委員 會要求	大統領 要 求	議員 要求	小計						
1回	1回	2回	4回	2回	6回	640日	399日	1,158:47	2:54

나. 年度別 集會一覽

年度別	臨 時 會				定期會	計	備 考
	國會選舉 委員會要求	大統領 要 求	議員 要求	小計			
1948	第1回			1	第2回	1	第2回： 1948. 12. 20 ~ 1949. 4. 30
1949		第5回	第3回 第4回	3		4	第6回： 1949. 12. 20 ~ 1950. 5. 30
1950					第6回	1	
計	1	1	2	4	2	6	

※ 計는 會期末 基準으로 算定함.

다. 集會公告日과 集會日

回別	會別	集會要求者	集會公告日	開會日	閉會日	開會式
						閉會式
第1回	臨時會	國會選舉 委員會	1948. 5.25	1948. 5.31	1948.12.18	1948. 5.31 1948.12.18
第2回	定期會	憲法第 34條		1948.12.20	1949. 4.30	1948.12.20 1949. 5. 2
第3回	臨時會	李源弘議員 外 84 人	1949. 5.13	1949. 5.21	1949. 6.19	1949. 5.21 1949. 6.20
第4回	"	金秉會議員 外 56 人· 崔錫和議員 外 50 人	1949. 6.23	1949. 7. 1	1949. 7.30	1949. 7. 1 1949. 8. 1
第5回	"	大 統 領	1949. 9. 2	1949. 9.12	1949.12. 3	1949. 9.12 1949.12. 3
第6回	定期會	憲法第 34條		1949.12.20	1950. 5.30	1949.12.20 1950. 6. 2

라. 會期·本會議開議日數와 時間

回別	會別	會期	開議日數	會議總時間	1日平均會議時間
第1回	臨時會	203 日	128 日	399 時間 12 分	3 時間 7 分
第2回	定期會	132 日	88 日	236 時間 25 分	2 時間 41 分
第3回	臨時會	30 日	20 日	58 時間 45 分	2 時間 56 分
第4回	"	30 日	23 日	59 時間 0 分	2 時間 34 分
第5回	"	83 日	57 日	175 時間 45 分	3 時間 7 分
第6回	定期會	162 日	83 日	229 時間 40 分	2 時間 46 分
計		640 日	399 日	1,158 時間 47 分	2 時間 54 分

마. 國會議事堂所在

會 期	期 間	所 在 地	備 考
第 1 回 ~ 第 6 回	1948. 5. 31 ~ 1950. 5. 30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中央廳 (會議室)	第 2 代國會中인 1950. 6. 26 까지 使用함.

바. 委員會와 그 開會日數

(1) 全院委員會

區 分	第 1 回	第 2 回	第 3 回	第 4 回	第 5 回	第 6 回	計
會議日數	2 日	2 日	-	-	-	1 日	5 日

(2) 常任委員會

委員會 回別	法制 司法	外務 國防	內務 治安	財政 經濟	產業	文教 社會	交通 遞信	懲戒 資格	計
第 1 回	38 日	9 日	13 日	20 日	26 日	7 日	5 日	7 日	125 日
第 2 回	52	22	20	51	44	26	21	9	245
第 3 回	9	2	6	6	12	7	4	1	47
第 4 回	10	4	7	16	18	5	7	1	68
第 5 回	17	14	23	36	43	27	8		168
第 6 回	35	21	31	34	68	31	27	2	249
計	161	72	100	163	211	103	72	20	902

(3) 特別委員會

委員會名	構成回別	審查期間	備考
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	第 1 回	1948.6.1~6.23 (23 日間)	
國會法及國會規則起草委員會	第 1 回	1948.6.1~6.7 (7 日間)	
美駐屯軍司令官「하아지」中將으로부터 國會議員에게 보낸 書翰에 대한 答翰과 유엔·美軍政當局에게 國會가 開會된 通知 및 開會式에 參席한 外國來賓에게 感謝狀을 보내는 件起草委員會	第 1 回	"	
對外關係에 있어서 交渉 및 連絡을 할 交渉委員會	第 1 回	1948.6.2~7.5 (34 日間)	
議員宿所 등의 便宜를 圖謀할 連絡委員會	第 1 回	1948.6.2~6.16 (15 日間)	
國內外新聞通信 등에 發表를 擔當할 通信委員會	第 1 回	1948.6.2 ~	會期末로 因한 終了
特別法(反民族行爲處罰法) 起草委員會	第 1 回	1948.8.5~8.17 (13 日間)	
政府內親日派 肅清에 關한 建議 特別調查委員會	第 1 回	1948.8.19 ~	會期末로 因한 終了
美駐屯軍司令官「하아지」中將 歸國餞送에 關한 節次와 感謝文 起草委員會	第 1 回	1948.8.25~8.26 (2 日間)	
時局(叛亂)收拾對策委員會	第 1 回	1948.10.30~ 1949.2.3 (97 日間)	
國會厚生委員會	第 1 回	1948.11.26 ~ 12.8 (13 日間)	

委員會名	構成回別	審査期間	備考
유엔總會議長及大韓民國代表에 보내는 感謝決議文 起草委員會	第 1 回	1948.12.13～	會期末로 인한 終了
監察委員會의 通告(農林部長官의 非行)에 關한 調査委員會	第 2 回	1949.2.4～2.16 (13 日間)	
監察委員會의 通告(商工部長官의 非行)에 關한 調査委員會	第 2 回	1949.4.16～6.3 (49 日間)	
開城事件 負傷兵 慰問委員會	第 3 回	1949.5.26～	會期末로 인한 終了
薺津地區 38 線 事件 真相 調査委員會	第 3 回	1949.5.31～	"
國會及反民族行爲 特別 調査委員會 襲擊示威事件 對策 交涉에 關한 委員會	第 3 回	1949.6.3～	"
保稅倉庫 調査委員會	第 5 回	1949.11.1～11.19 (19 日間)	
公務員 處遇 改善 對策 委員會	第 6 回	1950.1.19～3.22 (63 日間)	
大韓政治工作隊 事件 調査委員會	第 6 回	1950.4.12～4.19 (8 日間)	
信託銀行 不正貸付 調査委員會	第 6 回	1950.4.14～4.18 (5 日間)	

2. 議員과 委員

가. 議員姓名과 그 異動

(1) 議員姓名(가, 나, 다順)

制憲國會中 議員의 姓名은 다음과 같다.

議 長	李承晚	1948. 5.31	被選
		1948. 7.24	退職
"	申翼熙	1948. 8. 4	被選
		1950. 5.30	任期滿了
副議長	申翼熙	1948. 5.31	被選
		1948. 8. 4	議長被選
"	金東元	1948. 5.31	被選
		1950. 5.30	任期滿了
"	金若水	1948. 8. 4	被選
		1949. 7. 2	辭任
"	尹致暎	1949. 7. 4	被選
		1950. 5.30	任期滿了

(黨籍은 當選當時의 黨籍임)

選舉區	姓 名	黨 籍	備 考
山 淸	姜己文	無 所 屬	1949.1.13 補選 {1950.2.10 쿠라 치 사건으로 자격 상실
河 東	姜達秀	釜 山 一 五 俱 樂 部	
木 浦	姜善明	無 所 屬	
咸 安	姜旭中	朝 鮮 民 族 青 年 團	
仁 川 甲	郭尙勳	無 所 屬	
昌 寧	具中會	"	

選 舉 區	姓 名	黨 籍	備 考
義 城 乙	權 柄 魯	大 韓 獨 立 促 成 國 民 會	
馬 山	權 泰 郁	無 所 屬	
金 泉 甲	權 泰 義	"	
咸 陽	金 景 道	大 韓 獨 立 促 成 國 民 會	
延 白 甲	金 庚 培	無 所 屬	
蔚 珍	金 光 俊	"	
茂 朱	金 教 中	大 同 青 年 團	1949.1.13 補選
報 恩	金 教 賢	無 所 屬	
忠 州	金 基 喆	大 同 青 年 團	
楊 州 甲	金 德 烈	無 所 屬	
西 大 門	金 度 演	韓 國 民 主 黨	
龍 山	金 東 元	"	
瑞 山 乙	金 東 準	無 所 屬	
公 州 甲	金 明 東	"	
麗 水 甲	金 汶 桴	大 韓 獨 立 促 成 國 民 會	1950.2.10 무라치 사건으로 자격상실
珍 島	金 秉 會	無 所 屬	
長 水	金 奉 斗	"	
青 松	金 鳳 祚	教 育 協 會	
高 靈	金 尙 德	民 族 統 一 本 部	
麻 浦	金 相 敦	無 所 屬	
長 城	金 相 舜	韓 國 民 主 黨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羅州乙	金尙浩	韓國民主黨	
蔚山乙	金壽善	無所屬	
東萊	金若水	朝鮮共和黨	1950.2.10 부락 치사건으로 자격 상실
安城	金英基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高敞甲	金永東	無所屬	
光陽	金沃周	"	1950.2.10 부락 치사건으로 자격 상실
唐津	金用在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務安甲	金用鉉	韓國民主黨	
天安	金鏞化	無所屬	1949.6.10補選 當選. 1949.6.23 選舉無效로議 員資格喪失
達城	金禹埴	傳道會	
坡州	金雄權	無所屬	
水原乙	金雄鎭	"	
安東甲	金翼基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迎日乙	金益魯	無所屬	
甕津乙	金仁湜	大同青年團	
莞島	金長烈	無所屬	
統營甲	金載學	韓國民主黨	
井邑乙	金鍾文	"	
求禮	金鍾善	"	
靈岩	金俊淵	"	
長興	金仲基	無所屬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三陟	金振九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慶州甲	金喆	"	
扶餘乙	金鍊洙	"	
昌原甲	金泰洙	"	
陝川乙	金孝錫	"	{1949.1.5 退職 (內務部次官任命)
井邑甲	羅容均	韓國民主黨	
扶餘甲	南宮炫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淳昌	盧鎰煥	韓國民主黨	{1950.2.10 푸락치사 건으로 자격상실
釜山甲	文時煥	朝鮮民族青年團	{1948.10.19 退職 (G正知事任命)
龍仁	閔庚植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清州	朴己云	無所屬	
醴泉	朴湘永	韓國民主黨	
迎日甲	朴順碩	無所屬	
永同	朴愚京	"	
南海	朴允源	"	{1950.2.10 푸락치사 건으로 자격상실
光山	朴鍾南	"	
清道	朴鍾煥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軍威	朴峻	無所屬	
釜山丁	朴瓊鉉	"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密陽乙	朴海克	無所屬	1950.2.10 무라치사 건으로 자격상실
慶山	朴海植	"	
奉化	裴重赫	大同青年團	
裡里	裴憲	無所屬	
高敏乙	白寬洙	韓國民主黨	
大邱丙	白南塚	"	
益山甲	白亨南	大同青年團	
大邱乙	徐相日	韓國民主黨	
高陽甲	徐成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統營乙	徐淳永	無所屬	
牙山	徐容吉	"	
谷城	徐禹錫	韓國民主黨	
鬱陵	徐二煥	無所屬	
抱川	徐廷禧	韓國民主黨	
大田	成樂緒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洪城	孫在學	"	
海南甲	宋鳳海	"	
大德	宋鎮百	"	
利川	宋昌植	"	
鎭川	宋必滿	韓國民主黨	
開豐	申光均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公州乙	申邦鉉	無所屬	
金海甲	辛柏學	"	
全州	申性均	"	
廣州	申翼熙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茂朱	申鉉敏	"	{ 1948.10.19 退職 (道知事 任命)
延白乙	申鉉謨	韓國民主黨	
宜寧	安駿相	朝鮮民族青年團	
北濟州乙	梁秉直	大韓青年團	{ 治安關係로 1年延期하여 1949年 5月 10日에 選舉하였음
槐山	延秉吳	無所屬	
鎮安	吳基烈	"	
高興甲	吳錫柱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南濟州	吳龍國	無所屬	
甕津甲	吳澤寬	韓國獨立黨	
盈德	吳宅烈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橫城	元容均	"	
驪州	元容漢	大同青年團	
江陵甲	元長吉	"	
楊平	柳來琬	無所屬	
高興乙	柳聖甲	檀民黨	
完州甲	柳俊相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論山甲	俞鎮洪	"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堤川	柳鴻烈	無所屬	
善山	陸洪均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禮山	尹炳求	無所屬	
群山	尹錫龜	"	
江華	尹在根	"	
永登浦	尹在旭	大同青年團	
中區	尹致暎	韓國民主黨	
晉州	李康雨	無所屬	
固城	李龜洙	"	{1950.2.10 卞락치 사건으로 자격 상실
木浦	李南圭	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8.10.19 退職 (道知事 任命)
清原乙	李萬根	無所屬	
益山乙	李文源	"	{1950.2.10 卞락치 사건으로 자격 상실
永川乙	李範教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金泉乙	李炳璉	無所屬	
天安	李炳國	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9.4.8 死亡
天安	李相敦	民主國民黨	{1949.7.23 再選舉 에서 當選
慶州乙	李錫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完州乙	李錫柱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開城	李聖得	無所屬	
咸平	李成祐	"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海南乙	李聖學	大同青年團	1948.7.24 退職 (大統領候補)	
東大門甲	李承晚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東大門乙	李榮俊	韓國民主黨		
沃溝	李要漢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陝川甲	李源弘	"		
富川	李裕善	"		
鍾路甲	李允榮	朝鮮民主黨		
陰城	李宜相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鍾路乙	李仁	無所屬		1949.3.30 補選
洪川	李在鶴	"		
始興	李載滢	"		
南原	李珥器	朝鮮民族青年團		
寶城	李晶來	韓國民主黨		
青陽	李鍾根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瑞山甲	李鍾麟	無所屬		
春城	李鍾淳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密陽甲	李周衡	"		
楊州乙	李鎮洙	無所屬	((改名: 池人字,池青人))	
城東	李青天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大同青年團		
羅州甲	李恒發	無所屬		
星州	李浩錫	"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舒川	李勳求	無所屬	
保寧	林爽奎	大同青年團	
安東乙	任永信	大韓女子國民黨	1949.1.13補選
寧越	張基永	無所屬	
鍾路乙	張勉	"	{ 1948.12.22退職 (駐美大使任命)
漆谷	張炳晚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務安乙	張洪瑛	韓國民主黨	
尙州乙	錢鎮漢	大韓獨立勞動總聯盟	
光州	鄭光好	韓國民主黨	
沃川	鄭求參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潭陽	鄭均植	朝鮮民族青年團	
永川甲	鄭島榮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義城甲	丁又一	無所屬	
金浦	鄭潁	"	
梁山	鄭鎮璉	"	
錦山	鄭海駿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安東乙	鄭顯模	無所屬	{ 1948.10.19退職 (道知事任命)
和順	曹國鉉	大成會	
金海乙	曹奎甲	無所屬	
聞慶	趙炳漢	"	
仁川乙	曹奉岩	"	
靈光	曹泳珪	韓國民主黨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順天乙	趙玉鉉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扶安	趙在勉	"	
丹陽	趙鍾勝	無所屬	
長湍	趙重顯	"	
金堤甲	趙漢栢	"	
英陽	趙憲泳	韓國民主黨	
昌原乙	朱基鎔	無所屬	
任實	晉直鉉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燕岐	陳憲植	"	
康津	車庚模	無所屬	
高陽乙	崔國鉉	"	
春川	崔圭鈺	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9.12.21 退職 (道知事任命)
泗川	崔凡述	無所屬	
蔚山甲	崔奉植	"	
榮州	崔錫洪	大同青年團	
平澤	崔錫和	無所屬	
論山乙	崔雲教	"	
大邱甲	崔允東	韓國民主黨	
陝川乙	崔昌燮	無所屬	1949.3.30補選
旌善	崔泰奎	"	{1950.2.10 腐敗 사건으로 자격상실
江陵乙	崔獻吉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選舉區	姓名	黨籍	備考
居昌	表鉉台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釜山丙	韓錫範	韓國民主黨	
尙州甲	韓巖回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釜山甲	許永鎬	無所屬	1949.1.13 補選
釜山乙	許政	韓國民主黨	
水原甲	洪吉善	大同青年團	
原州	洪範憲	無所屬	
東大門甲	洪性夏	韓國民主黨	1949.10.30 補選
北濟州甲	洪淳寧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治安關係로 1年延期하여 1949年5月10日에選舉하였음. 1949.12.22 死亡
清原甲	洪淳玉	無所屬	
加平	洪翼杓	"	
金堤乙	洪煒種	朝鮮民族青年團	
順天甲	黃斗淵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麗水乙	黃炳珪	無所屬	
晉陽	黃潤鎬	"	
平昌	黃虎鉉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計	209人		

(2) 議員異動

制憲國會中 議員의 異動은 다음과 같다.

選 舉 區	姓 名	黨 籍	異動年月日 및 事由
서울特別市 鍾路乙區	張 勉	無 所 屬	1948.12.22 退職 (駐美大使任命)
"	李 仁	"	1949. 3.30 補闕選舉에서 當選
서울特別市東大門甲區	李承晚	大韓獨立促 成 國民會	1948.7.24 退職(大統領就任)
"	洪性夏	韓國民主黨	1949.10.30 補闕選舉에서 當選
忠清南道 天 安	李炳國	大韓獨立促 成 國民會	1949. 4. 8 死亡
"	金鏞化	無 所 屬	1949. 6. 10 補闕選舉에서 當選
"			1949. 6. 23 資格喪失 (選舉無效)
"	李相敦	民主國民黨	1949. 7. 23 再選舉에서 當選
全羅北道 茂 朱 郡	申鉉燮	大韓獨立促 成 國民會	1948.10.19 退職 (全北道知事 任命)
"	金教中	大同青年團	1949.1.13 補闕選舉에서 當選
全羅北道 淳 昌 郡	盧鎰煥	韓國民主黨	1950.2.10 資格喪失 (國會부락치事件)
" 益山乙區	李文源	無 所 屬	"
全羅南道 木 浦 市	李南圭	大韓獨立促 成 國民會	1948.10.19 退職 (全南道知事 任命)
"	姜善明	無 所 屬	1949.1.13 補闕選舉에서 當選
全羅南道 珍 島 郡	金秉會	"	1950.2.10 資格喪失 (國會부락치事件)
" 光 陽 郡	金沃周	"	"

選 舉 區	姓 名	黨 籍	異動年月日 및 事由
慶尙北道 安東乙區	鄭顯模	無 所 屬	1948.10.19 退職 (慶北道知事任命)
"	任永信	大韓女子 國 民 黨	1949.1.13 補闕選舉에서 當選
慶尙北道 奉化郡	裴重赫	大同青年團	1950.2.10 資格喪失 (國會무락치事件)
慶尙南道 釜山甲區	文時煥	朝鮮民族 青 年 團	1948.10.19 退職 (慶南道知事任命)
"	許永鎬	無 所 屬	1949.1.13 補闕選舉에서 當選
慶尙南道 陝川乙區	金孝錫	大韓獨立促 成 國 民 會	1949.1.5 退職 (內務部次官任命)
"	崔昌燮	無 所 屬	1949.3.30 補闕選舉에서 當選
慶尙南道 咸安郡	姜旭中	朝鮮民族 青 年 團	1950.2.10 資格喪失 (國會무락치事件)
" 東萊郡	金若水	朝鮮共和黨	"
" 南海郡	朴允源	無 所 屬	"
" 固城郡	李龜洙	"	"
江原道 春川	崔圭鈺	大韓獨立促 成 國 民 會	1949.12.21 退職 (江原道知事任命)
" 旌善郡	崔泰奎	無 所 屬	1950.2.10 資格喪失 (國會무락치事件)
濟州道 北濟州甲區	洪淳寧	大韓獨立促 成 國 民 會	1949.12.22 死亡

※ 備考: 「國會무락치事件」이란 第2回 國會가 閉會된 後 1949年 5月 18日 少壯派議員 3名이 國家保安法 違反嫌疑로 逮捕된 것을 爲始하여 7月 30日 第4回 國會가 閉會되는 날까지 前後 3회에 걸쳐 13名의 同成會 所屬인 少壯派議員이 拘束된 것을 世稱함.

(3) 會期別 議員異動一覽

區分 回別	開會時 議員數	減				增				閉會時 議員數
		退職	死亡	資格 喪失	小計	補闕 選舉	再選舉	追選 後舉	小計	
第 1 回 (臨) 閉會中	198	5			5					193
第 2 回 (定) 閉會中	193	2	1		3	6			6	196
第 3 回 (臨) 閉會中	196					1		北濟州	3	199
	199			1	1					198
第 4 回 (臨) 閉會中	198						1		1	199
第 5 回 (臨) 閉會中	199					1			1	200
第 6 回 (定)	200	1	1	10	12					188
計		8	2	11	21	8	1	2	11	188

※ 政黨 及 團體別 當選議員數 現況 (1948 年 5 月 10 日 選舉當選者)

政黨 及 團體名	當選議員數	政黨 及 團體名	當選議員數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 (55) 人	教 育 協 會	1 人
韓 國 民 主 黨	29 人	檀 民 黨	1 人
大 同 青 年 團	12 人	大 成 會	1 人
朝 鮮 民 族 青 年 團	6 人	傳 道 會	1 人
大 韓 獨 立 促 成		民 族 統 一 本 部	1 人
農 民 總 聯 盟	2 人	朝 鮮 共 和 黨	1 人
大 韓 勞 動 總 聯 盟	1 人	釜 山 一 五 俱 樂 部	1 人
朝 鮮 民 主 黨	1 人	無 所 屬	85 人
大 韓 青 年 團	(1) 人	計	198(200) 人
韓 國 獨 立 黨	1 人		

※ 備考: () 內는 治安關係로 1 年延期 (1949. 5. 10) 하여 實施한 北濟州 甲·乙區의 選舉에서 當選된 議員數를 算入한 것임.

나. 交渉團體와 그 變遷

各 交渉團體의 構成과 所屬議員의 名簿는 다음과 같다.

※ 參考事項

① 交渉團體는 1949年 7月 29日 公布된 國會法中改正法律에 의해 두게 됨에 따라 同年 9月 12日에 開會된 第5回 國會初에 登錄된 交渉團體를 掲載함.

② 本 交渉團體名簿는 第5回 國會 會議錄에 掲載된 常任委員의 名單을 中心으로 拔萃하여 掲載하였으며 ○標는 代表議員임

③ 各 交渉團體別 構成員數에 대하여는 任期中 異動이 있었으나 正式 通告가 없거나 資料의 未備로 그 異動狀況을 記載치 못함에 따라 統計 上의 差異가 있음.

(1) 交渉團體 所屬議員

民主國民黨 (1949. 9. 12 (第5回) ~ 1950. 5. 30 (第6回))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池 大 亨		崔 允 東	
白 寬 洙		金 泰 洙	
徐 禹 錫		鄭 均 植	
宋 必 滿		尹 在 旭	
李 源 弘		金 仁 湜	
晉 直 鉉		曹 泳 珪	
徐 淳 永		朴 鍾 煥	
徐 成 達		崔 錫 洪	

姓名	備考	姓名	備考
金俊淵		洪熿種	
羅容均		金相舜	
崔國鉉		金尙浩	
崔奉植		趙憲沐	
李萬根		崔錫和	
朴瓚鉉		李相敦	
金翼基		閔庚植	
張洪瑛		李錫柱	
洪性夏		申邦鉉	
趙漢栢		金振九	
李晶來		俞鎮洪	
申鉉謨		韓錫範	
金鍾文		金載學	
金用鉉		李榮俊	
白南塚		曹國鉉	
金汶杵		崔凡述	
李理器		金教賢	
鄭島榮		洪吉善	
吳龍國		金尙德	
金鍾善		元長吉	
金益魯		鄭光好	
徐相日		林爽奎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裴重赫		徐廷禧	
金相敦		洪淳寧	
鄭海駿			

一民俱樂部(1949. 9. 12(第5回)~1950. 5. 30(第6回))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元容漢		張炳晚	大韓國民黨에 加入
徐二煥		權炳魯	
吳宅烈	大韓國民黨에 加入	表鉉台	
陳憲植	"	宋鳳海	大韓國民黨에 加入
朴 峻	"	李要漢	"
李鍾麟		李聖得	
鄭求參		韓巖回	
丁又一	大韓國民黨에 加入	宋昌植	大韓國民黨에 加入
任永信	"	崔獻吉	"
崔昌燮	"	李浩錫	
李聖學		金景道	
金鍊洙		柳鴻烈	大韓國民黨에 加入
安駿相	大韓國民黨에 加入	李 錫	
李恒發		黃虎鉉	大韓國民黨에 加入
金庚培	大韓國民黨에 加入	李範教	
金 喆		李鍾淳	大韓國民黨에 加入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元容均	大韓國民黨에 加入	朴順碩	
趙在勉	"	權泰義	
趙炳漢		朴湘永	
李裕善	大韓國民黨에 加入	金鳳祚	
黃斗淵	"	金禹埴	
李周衡		李宜相	大韓國民黨에 加入
姜達秀		申光均	
李炳瑾		趙鍾勝	大韓國民黨에 加入
黃炳珪	大韓國民黨에 加入	梁秉直	"
朱基培		郭尙勳	
具中會		崔圭鈺	

新 政 會 (1949. 9. 12 (第 5 回) ~ 1950. 1. 26 (第 6 回))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吳錫柱	大韓國民黨에 加入	尹錫龜	大韓國民黨에 加入
金雄鎭	"	金壽善	"
金雄權	"	南宮炫	"
延秉吳	"	李載濬	"
尹在根	"	姜己文	"
尹炳求	"	姜善明	"
辛相學	"	金用在	"

姓名	備考	姓名	備考
柳來琬	大韓國民黨에 加入	李在鶴	大韓國民黨에 加入
李鍾根	"	宋鎮百	"
金德烈	"	洪範憲	"
陸洪均	"	趙重顯	"
金明東	"		

大韓勞農黨 (1949. 9. 22 (第 5 回) ~ 1950. 1. 26 (第 6 回))

姓名	備考	姓名	備考
○李勳求		吳基烈	大韓國民黨에 加入
崔雲教	大韓國民黨에 加入	柳俊相	"
柳聖甲	"	李鎮洙	"
金長烈	"	金仲基	"
李成佑	"	朴愚京	"
金基喆	"	白亨南	"
朴鍾南		許永鎬	"
襄憲	大韓國民黨에 加入	洪淳玉	
孫在學	"	金永東	大韓國民黨에 加入
趙玉鉉	"	車庚模	"
吳澤寬	"	金東準	"
朴己云	"		

大韓國民黨(1950. 1. 27 (第6回)~1950. 5. 30 (第6回))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李載濬	新政會에서 加入	金基喆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尹致暎	(副議長으로서 前所屬 不分明)	柳鴻烈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李仁	無所屬에서 加入	趙鍾勝	"
曹奉岩	"	宋鎮百	新政會에서 加入
金德烈	新政會에서 加入	陳憲植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李鎮洙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金明東	新政會에서 加入
柳來琬	新政會에서 加入	崔雲教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宋昌植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南宮炫	新政會에서 加入
金英基	無所屬에서 加入	李鍾根	"
金雄鎮	新政會에서 加入	孫在學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李裕善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尹炳求	新政會에서 加入
尹在根	新政會에서 加入	金東準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金雄權	"	金用在	新政會에서 加入
趙重顯	"	尹錫龜	"
金庚培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裴憲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吳澤寬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柳俊相	"
朴己云	"	吳基烈	"
朴愚京	"	金永東	"
延秉吳	新政會에서 加入	趙在勉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李宜相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李要漢	"

姓 名	備 考	姓 名	備 考
白 亨 南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張 炳 晚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姜 善 明	新政會에서 加入	陸 洪 均	新政會에서 加入
黃 炳 珪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許 永 鎬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黃 斗 淵	"	權 泰 郁	無所屬에서 加入
趙 玉 鉉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安 駿 相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吳 錫 柱	新政會에서 加入	金 壽 善	新政會에서 加入
柳 聖 甲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辛 相 學	"
金 仲 基	"	姜 己 文	"
車 庚 模	"	崔 昌 燮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宋 鳳 海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李 鍾 淳	"
李 成 佑	大韓勞農黨에서 加入	李 在 鶴	新政會에서 加入
金 長 烈	"	元 容 均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朴 峻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洪 範 憲	新政會에서 加入
丁 又 一	"	黃 虎 鉉	一民俱樂部에서 加入
任 永 信	"	崔 獻 吉	"
吳 宅 烈	"	梁 秉 直	"

無所屬 (1949. 11. 30 現在)

姓名	備考	姓名	備考
李仁	大韓國民黨에 加入	金英基	大韓國民黨에 加入
朴海克		曹奉岩	大韓國民黨에 加入
權泰郁	大韓國民黨에 加入	錢鎮漢	
李康雨		曹奎甲	
朴海楨		成樂緒	
金光俊		金教中	
鄭滄		洪翼杓	

所屬交涉團體가 不分明한 議員 (1949. 11. 30 現在)

姓名	黨籍 (當選當時)	備考	姓名	黨籍 (當選當時)	備考
金度演	韓國民主黨	外務部長官	張基永	無所屬	遞信部長官
金東元	"	副議長	鄭鎮瑾	"	
金奉斗	無所屬		許政	韓國民主黨	交通部長官
徐容吉	"		黃潤鎬	無所屬	
申性均	"		姜旭中	朝鮮民族 青年團	國會부락지事 件에關聯된議員
申翼熙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議長	金秉會	無所屬	"
尹致暎	韓國民主黨	副議長 (追後:大韓 國民黨에加入)	金若水	朝鮮共和黨	"
李允榮	朝鮮民主黨	社會部長官	金沃周	無所屬	"

姓名	黨籍 (當選當時)	備考	姓名	黨籍 (當選當時)	備考
盧鎰煥	韓國民主黨	國會푸락치事件에 關聯된 議員	李文源	無所屬	國會푸락치事件에 關聯된 議員
朴允源	無所屬	"	崔泰奎	"	"
李龜洙	"	"			

(2) 交渉團體의 構成員數 및 比率

(第1回國會부터 第4回國會까지 交渉團體가 構成되지 않음)

第5回國會(臨時會)

交渉團體	1949. 9. 22 現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交渉團體	1949. 12. 3 現在 構成員數	在籍數에 대한比率
民主國民黨	75人(70)	37.5%	民主國民黨	70人	35.0%
一民俱樂部	54人(55)	27.0%	一民俱樂部	54人	27.0%
新政會	23人(23)	11.5%	新政會	23人	11.5%
大韓勞農黨	23人(23)	11.5%	大韓勞農黨	23人	11.5%
無所屬	25人(29)	12.5%	無所屬	30人	15.0%
計	200人(200)	100%	計	200人	100%

※ 備考: ① ()內는 1949. 9. 12 第5回國會 開會以後 交渉團體의 最初 登錄當時의 所屬議員數임.

② 交渉團體 所屬議員의 異動이 있었으나 資料의 未備로 區分하기가 困難하여 가장 많은 時의 所屬議員數를 拔萃(國會史) 掲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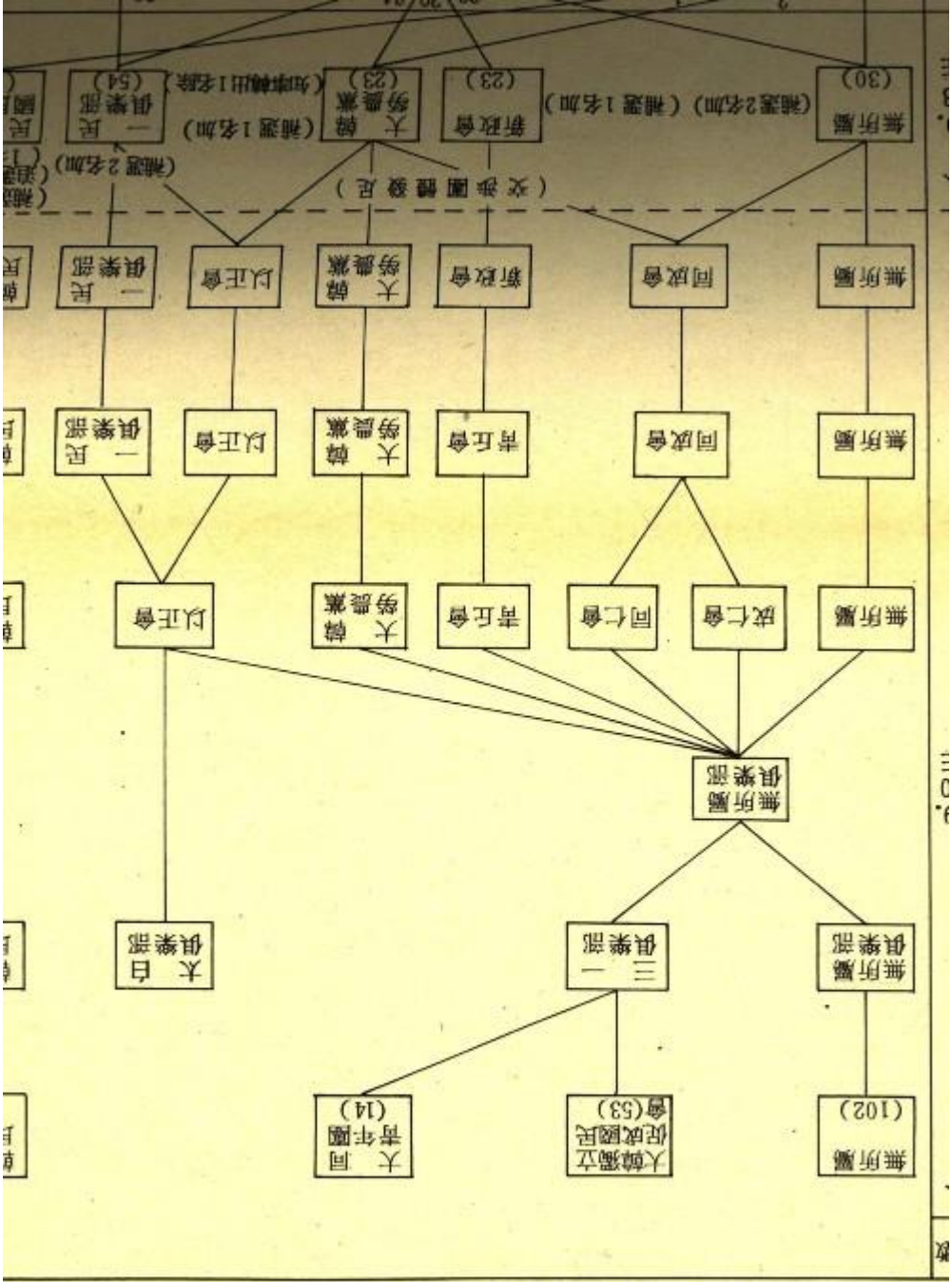
③ 交渉團體 人員數와 本表의 所屬議員數問의 差異가 있는것은 議長·副議長·國務委員(兼職議員) 및 國會푸라치事件 關聯議員등의 所屬이 記錄上 不分明하거나 資料의 不在로 掲載치 못한 까닭임.

第 6 回國會 (定期會)

交渉團體	1950. 3. 10 現 在 構 成 員 數	在籍數에 대 한 比 率	交渉團體	1950. 5. 30 現 在 構 成 員 數	在籍數에 대 한 比 率
大韓國民黨	71 人	35.8 %	大韓國民黨	(71人)	※ 在籍數의 不正確으로 比 率 算 定이 困難
民主國民黨	69 人	34.8 %	民主國民黨	(68人)	
一民俱樂部	30 人	15.2 %	一民俱樂部	(30人)	
無 所 屬	28 人	14.2 %	無 所 屬	(29人)	
計	198 人	100 %	計	188人(198人)	

※ 備考 : ① 交渉團體別 構成員數에 事實上 異動이 있었으나 正式 通告가 없었고 이에 대한 資料의 不在로 1950. 3. 10 現在의 統計(國會會議錄)와 任期滿了日(1950. 5. 30) 現在의 統計(國會 10 年誌)를 拔萃(括弧)하여 掲載하였으며 實際 在籍議員數는 188 人이었음.
② 交渉團體人員數와 本表問의 差異는 第 5 回國會 備考③參照.

制漢國會及新團體變遷圖表



다. 委員姓名과 그 異動

(1) 全院委員

(가) 制憲國會中 全院委員長은 다음과 같다.

回 別	選舉年月日	委員長名	備 考
第 1 回	1948. 6. 18	李 青 天	1948. 6. 18 ~ 未詳
第 2 回	.		
第 3 回			
第 4 回			
第 5 回			
第 6 回	1949. 12. 21	池 大 亨 (上記人と同一人)	1949. 12. 21 ~ 1950. 5. 30

(나) 全院委員會는 制定國會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員 全員으로 構成함에 따라 全院委員의 名單은 省略함.

(2) 常任委員

※ 參考事項

1. 第1回 國會에서의 常任委員의 黨籍은 當選當時의 所屬政黨 및 團體名임.
2. 第1回 國會부터 第4回까지는 交渉團體가 構成되지 않았으며, 記載치 못한 所屬黨籍은 資料不明으로 因함.
3. 第1回 國會부터 第4回까지의 圖表중 ○標는 補闕選任, △標는 辭任을 表示함.

第1回 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白寬洙	韓國民主黨	委員	崔雲教	無所屬
幹事	徐禹錫	"	"	洪翼杓	"
"	朴海克	無所屬	"	○李源弘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委員	陳憲植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姜旭中	朝鮮民族 青年團
"	宋必滿	韓國民主黨	"	金翼基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權泰郁	無所屬	"	晉直鉉	"
"	吳宅烈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徐淳永	無所屬
"	柳聖甲	檀民黨	"	○金孝錫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徐成達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允榮	朝鮮民主黨
"	洪範憲	無所屬	"	△金孝錫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吳龍國	"	"	△李南圭	"
"	裴重赫	大同青年團			

外務國防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崔允東	韓國民主黨	主查	崔允東 (國防)	韓國民主黨
"	△尹致暎	"	"	△張勉	無所屬
主查	○金俊淵 (外務)	"	委員	張勉	"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金泰洙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委員	辛相學	無所屬
"	尹炳求	無所屬	"	曹泳珪	韓國民主黨
"	金雄權	"	"	延秉昊	無所屬
"	李青天	大同青年團	"	郭尙勳	"
"	張基永	無所屬	"	崔泰奎	"
"	鄭均植	朝鮮民族 青年團	"	安駿相	朝鮮民族 青年團
"	金基喆	大同青年團	"	林爽奎	大同青年團
"	尹在旭	"	"	尹在根	無所屬
"	金長烈	無所屬	"	朴鍾煥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聖學	大同青年團	"	白亨南	大同青年團
"	金鍊洙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崔錫洪	"
"	金仁湜	大同青年團	"	丁又一	無所屬
"	徐二煥	無所屬	"	△許政	韓國民主黨

內務治安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申性均	無所屬	內務分科		
幹事	洪淳玉	"	主查	袁憲	無所屬
"	張洪琰	韓國民主黨	委員	金庚培	"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孫在學	大韓獨立促成國民會	主查	李萬根	無所屬
"	朴鍾南	無所屬	委員	崔國鉉	"
"	權炳魯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金光俊	"
"	成樂緒	"	"	朴海楨	"
"	李炳國	"	"	李康雨	"
"	李恒發	無所屬	"	羅容均	韓國民主黨
"	崔奉植	"	"	朴瓊鉉	無所屬
治安分科			"	張炳晚	大韓獨立促成國民會

財政經濟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鄭海駿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委員	金秉會	無所屬
"	△金度演	韓國民主黨	"	姜己文	"
第1分科(豫算·決算)			"	金鍾文	韓國民主黨
主查	○趙漢栢	無所屬	"	南宮炫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鄭海駿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崔國鉉	無所屬
委員	李晶來	韓國民主黨	第2分科(金融·通貨)		
"	申鉉謨	"	主查	吳澤寬	韓國獨立黨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白南塚	韓國民主黨	第4分科(貿易)		
"	李龜洙	無所屬	主查	鄭求參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聖得	"	委員	金汶杵	"
"	金英基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金景道	"
"	徐容吉	無所屬	"	朴己云	無所屬
"	金相敦	"	"	金壽善	"
"	李載溙	"	"	朴允源	"
"	黃虎鉉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金用鉉	韓國民主黨
第3分科(稅務·專賣)			第5分科(一般經濟·統計)		
主查	○鄭島榮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主查	金明東	無所屬
"	△鄭顯模	無所屬	委員	金用在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委員	崔獻吉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宋鳳海	"
"	韓巖回	"	"	李要漢	"
"	李錫	"	"	鄭潯	無所屬
"	○金孝錫	"	"	金奉斗	"
"	李瑛器	朝鮮民族 青年團	"	黃潤鎬	"
"	△李源弘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晉直鉉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浩錫	無所屬			

產業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徐相日	韓國民主黨	委員	柳鴻烈	無所屬
農林分科			商工分科		
主查	金雄鎮	無所屬	主查	趙憲泳	韓國民主黨
委員	李炳權	"	委員	趙炳漢	無所屬
"	李範教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鎮洙	"
"	洪煒種	朝鮮民族 青年團	"	崔錫和	"
"	姜達秀	釜山一五 俱樂部	"	金鍾善	韓國民主黨
"	金相舜	韓國民主黨· 大同青年團	"	盧鎰煥	"
"	曹奎甲	無所屬	"	李周衡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黃斗淵	大韓獨立 促成農民 總聯盟	"	李裕善	"
"	閔庚植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鑛工分科		
"	李勳求	無所屬	主查	柳來琬	無所屬
"	李鍾淳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委員	李錫柱	大韓獨立 促成農民 總聯盟
"	金尙浩	韓國民主黨	"	朴愚京	無所屬
"	陸洪均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申邦鉉	"
			"	金振九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兪鎮洪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委員	金載學	韓國民主黨
"	李鍾根	"	"	○朴允源	無所屬
"	○徐淳永	無所屬	"	金德烈	"
水產分科			"	△曹奉岩	"
主查	黃炳珪	無所屬	"	△錢鎮漢	大韓獨立 勞動總聯盟
委員	金仲基	"	"	△尹錫龜	無所屬
"	趙在勉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文時煥	朝鮮民族 青年團
"	韓錫範	韓國民主黨			

文教社會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朱基塔	無所屬	委員	金尙德	民族統一本部
文教分科			"	崔凡述	無所屬
主查	權泰發	無所屬	"	朴湘永	韓國民主黨
委員	李在鶴	"	社會分科		
"	曹國鉉	大成會	主查	李榮俊	韓國民主黨
"	具中會	無所屬	委員	崔圭鈺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金鳳祚	教育協會	"	李鎮洙	無所屬
"	宋鎮百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金教賢	"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洪吉善	大同青年團	委員	朴順碩	無所屬
"	鄭光好	韓國民主黨	"	△申鉉燮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大同青年團
"	元容漢	大同青年團			
"	吳錫柱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交通通信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李鍾麟	無所屬	主查	金永東	無所屬
交通分科			委員	金雄鎮	"
主查	趙鍾勝	無所屬	"	申光均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委員	金沃周	"	"	鄭光好	韓國民主黨
"	元長吉	大同青年團	"	車庚模	無所屬
"	趙重顯	無所屬	"	金禹埴	傳道會
"	宋昌植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尹錫龜	無所屬
"	金載學	韓國民主黨	"	△金若水	朝鮮共和黨
通信分科					

懲戒資格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金英基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主查	表鉉台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主查	金東準	無所屬	委員	吳基烈	無所屬
委員	李文源	"	"	李成佑	"
"	朴峻	"	"	金益魯	"
"	元容均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徐廷禧	韓國民主黨
"	柳俊相	"	"	徐禹錫	"
"	李宜相	"	"	鄭島榮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趙玉鉉	"	"	裒重赫	大同青年團
"	金喆	"	"	金光俊	無所屬
"	鄭鎮瑾	無所屬			

※ 다음의 兩委員會는 制定國會法改正以前 (懲戒資格委員會로 改編되기 以前)의 委員會임.

資格審査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李文源	無所屬	委員	吳基烈	無所屬
主查	趙玉鉉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成佑	"
"	金益魯	無所屬	"	朴俊	"
委員	金東準	"	"	金喆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李宜相	大韓獨立 促成國民會	"	元容均	"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	鄭鎮瑾	無所屬	委員	申光均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表鉉台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徐禹錫	韓國民主黨
"	柳俊相	"			

懲戒委員會

區分	姓名	黨籍	區分	姓名	黨籍
委員長	金英基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委員	鄭求參	大韓獨立促成國民會
主查	徐淳永	無所屬	"	裒重赫	大同青年團
"	金東準	"	"	金孝錫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委員	徐廷禧	韓國民主黨	"	李文源	無所屬
"	李鍾麟	無所屬	"	金光俊	"
"	鄭島榮	大韓獨立促成國民會	"	韓錫範	韓國民主黨
"	徐禹錫	韓國民主黨	"	趙玉鉉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第 2 回 國會 (定期會)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法制司法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 徐 成 達		
"	△ 姜 旭 中		
"	△ 徐 淳 永		
"	△ 金 孝 錫		
"	○ 徐 二 煥		
"	○ 許 永 鎬		

外務國防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員長	○ 池 大 亨		
"	△ 崔 允 東		國防分科主査職은 계속 留任
主 査	○ 張 基 永 (外務)		
"	△ 金 俊 淵 (")		委員辭任
委 員	△ 張 勉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金 長 烈		
"	△郭 尙 勳		
"	○尹 致 暎		
"	○崔 昌 燮		

內務治安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員長	○羅 容 均		治安分科委員으로 補任
"	△申 性 均		
幹 事	○金 光 俊		委員辭任
"	△洪 淳 玉		
內 務 分 科			
委 員	△金 庚 培		
"	△李 炳 國		
治 安 分 科			
委 員	△崔 國 鉉		委員長選任으로 因함 幹事選任으로 因함
"	○金 教 中		
"	○金 喆		
"	○申 性 均		
"	△羅 容 均		
"	△金 光 俊		

財政經濟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員長	○ 洪 性 夏		
"	△ 鄭 海 駿		第4分科委員으로 補任
第1分科(豫算·決算)			
委 員	△ 崔 國 鉉		
"	○ 金 景 道		
"	○ 金 用 鉉		
第2分科(金融·通貨)			
主 查	△ 吳 澤 寬		委員辭任
委 員	○ 金 汶 杓		
"	○ 金 壽 善		
"	△ 徐 容 吉		
"	△ 金 相 敦		
第3分科(稅務·專賣)			
主 查	○ 李 錫		
"	△ 鄭 烏 榮		第3分科委員으로 殘留
委 員	○ 鄭 求 參		
"	○ 朴 己 云		
"	△ 金 孝 錫		
第4分科(一般經濟·統計)			
主 查	△ 鄭 求 參		第3分科委員으로 補任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 鄭 海 駿		
"	○ 姜 善 明		
"	△ 朴 允 源		
"	△ 晉 直 鉉		

※ 備考: 第1回國會時의 第4分科(貿易)를 廢止하고 第5分科(一般經濟·統計)를 第4分科로 變更하였음.

產業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農 林 分 科			
主 查	△ 金 雄 鎮		委員辭任
委 員	△ 曹 奎 甲		
"	△ 李 鍾 淳		
"	△ 閔 庚 植		
"	○ 錢 鎮 漢		
"	○ 曹 奉 岩		
商 工 分 科			
委 員	○ 閔 庚 植		
"	△ 盧 鎰 煥		
"	△ 李 鎮 洙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鑛工分科			
委 員	△ 朴 愚 京		
"	△ 徐 淳 永		

文教社會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員長	○ 李 榮 俊		
"	△ 朱 基 培		文教分科委員으로 補任
文教分科			
委 員	△ 金 尙 德		
"	○ 朱 基 培		
社會分科			
主 查	○ 崔 圭 鈺		
"	△ 李 榮 俊		委員長選任으로 因함

交通遞信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員長	○ 金 永 東		
"	△ 李 鍾 麟		交通分科委員으로 補任
交通分科			
委 員	○ 金 鍊 洙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 李 鍾 麟		
"	△ 趙 重 顯		
遞信分科			
主 查	○ 申 光 均		委員長選任으로 因함
"	△ 金 永 東		
委 員	○ 李 成 佑		
"	○ 李 宜 相		
"	○ 權 泰 郁		
"	△ 金 雄 鎮		

懲戒資格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員長	○ 金 益 魯		委員職은 계속 留任
"	△ 金 永 基		
委 員	○ 申 光 均		
"	○ 姜 旭 中		
"	△ 金 喆 喆		
"	△ 吳 基 烈		

第3回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法制司法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 李 仁		

財政經濟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第4分科(一般經濟·統計)			
委 員	△ 鄭 濟		退 任

交通遞信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交通分科			
委 員	○ 梁 秉 直		

懲戒資格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 趙 玉 鉉		退 任

第4回 國會(臨時會)

本會期中 常任委員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外務國防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主 查	△ 張 基 永		
"	○ 尹 致 暎		
"	△ 尹 致 暎		
"	○ 任 永 信		
委 員	○ 金 長 烈		
"	○ 金 禹 埴		
"	○ 金 俊 淵		

懲戒資格委員會

區 分	姓 名	黨 籍	備 考
委 員	○ 金 長 烈		

第 5 回 國會 (臨時會)

(1949.11.30 現在)

交涉團體 構成員數		民主國民黨	一民俱樂部	新 政 會	大韓勞農黨	無 所 屬	計
常任 委員會	委員 定數	65	54	23	23	15	180
法制 司法	20	○白寬洙 徐禹錫 宋必滿 李源弘 晉直鉉 徐淳永 徐成達 (7)	徐二煥 元容漢 吳宅烈 陳憲植 朴 峻 (5)	金雄鎮 金雄權 (2)	崔雲教 柳聖甲 (2)	李 仁 朴海克 權泰郁 (3)	19
		○池大亨 崔允東 金泰洙 鄭均植 尹在旭 金仁湜 曹泳珪 朴鍾煥 崔錫洪 金俊淵 (10)	李鍾麟 鄭求參 丁又一 任永信 崔昌雙 李聖學 金鉉洙 安駿相 (8)	延秉吳 尹在根 尹炳求 辛相學 (4)	金長烈 李成佑 金基喆 朴鍾南 (4)	26	
外務 國防	30						

交涉團體 構成 員數		民主國民黨	一民俱樂部	新 政 會	大韓勞農黨	無 所 屬	計
常任 委員會		65	54	23	23	15	180
內務 治安	20	○羅容均 崔國鉉 崔奉植 李萬根 朴贊鉉 金翼基 張洪琰 (7)	李恒發 金庚培 金 喆 張炳晚 權炳魯 表鉉台 (9)	尹錫龜 金壽善 (2)	裴 憲 孫在學 (2)	李康雨 朴海楨 金光俊 (3)	20
		○洪性夏 趙漢栢 李晶來 申鉉謨 金鍾文 金用鉉 白南採 金汶杵 李瑛器 鄭島榮 吳龍國 金鍾善	宋鳳海 李要漢 李聖得 韓巖回 宋昌植 崔獻吉 李浩錫 金景道 柳鴻烈 李 錫 黃虎鉉	南宮炫 李載澄 姜己文 姜善明 金用在	趙玉鉉 吳澤寬 朴己云 吳基烈 柳俊相	鄭 滄 金英基	
財政 經濟	40						

交涉團體 構成員數	民主國民黨					計	
	一民俱樂部	新 政 會	大韓勞農黨	無 所 屬			
常任 委員會	委員 定數	65	54	23	23	15	180
		金益魯 (13)	(11)	(5)	(5)	(2)	
產業	40	○徐相日 洪煒鍾 金相舜 金尙浩 趙憲泳 崔錫和 李相敦 閔庚植 李錫柱 申邦鉉 金振九 俞鎮洪 韓錫範 金載學 (14)	李範教 李鍾淳 元容均 趙在勉 趙炳漢 李裕善 黃斗淵 李周衡 姜達秀 李炳璠 黃炳珪 (11)	柳來琬 李鍾根 金德烈 陸洪均 金明東 (5)	李勳求 李鎮洙 金仲基 朴愚京 白亨南 (5)	曹奉岩 錢鎮漢 曹奎甲 (3)	38
文教 社會	20	○李榮俊 曹國鉉 崔凡述 金教賢	朱基略 具中會 朴順碩 權泰羲	李在鶴 宋鎮百	許永鎬 洪淳玉		16

交涉團體 構成 員數	民主國民黨	民俱樂部	新政會	大韓勞農黨	無所屬	計
	65	54	23	23	15	180
	洪吉善 金尙德 (6)	朴湘永 金鳳祚 (6)	(2)	(2)		
交通 遞信	20 元長吉 鄭光好 林爽奎 裴重赫 金相敦 鄭海駿 (6)	金禹埴 李宜相 申光均 趙鍾勝 梁秉直 (5)	吳錫柱 洪範意 (2)	○金永東 車庚模 (2)	成樂緒 金教中 洪翼杓 (3)	18
懲戒 資格	10 徐廷禧 洪淳寧 (2)	郭尙勳 崔圭珏 (2)	趙重顯 (1)	金東準 (1)	鄭鎮瑾 (1)	7

※ 備考：① ○標는 委員長을 表示함.

② 議長, 副議長, 國務委員(兼職議員) 및 國會「푸락치」事件
關聯議員은 常任委員會配定에서 除外되었음.

第 6 回 國 會 (定 期 會)

本 會 期 中 常 任 委 員 長 改 選 狀 況 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前 常 任 委 員 長	所 屬 團 體	新 常 任 委 員 長	所 屬 團 體	變 更 年 月 日
法 制 司 法	白 寬 洙	民 主 國 民 黨	李 仁	無 所 屬	1949.12.21
外 務 國 防	池 大 亨	"	李 鍾 麟	一 民 俱 樂 部	"
文 教 社 會	李 榮 俊	"	權 泰 義	"	"
交 通 遞 信	金 永 東	大 韓 勞 農 黨	鄭 海 駿	民 主 國 民 黨	"
懲 戒 資 格			徐 廷 禧	"	1950. 1.18

※ 備 考 : 上 記 以 外 의 常 任 委 員 會 의 委 員 長 은 留 任 됨.

本 會 期 中 常 任 委 員 異 動 狀 況 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會	姓 名	所 屬 團 體	備 考
懲 戒 資 格	洪 淳 寧	民 主 國 民 黨	1949. 12. 22 死 亡
"	崔 圭 鈺	一 民 俱 樂 部	1949. 12. 21 退 職 (江 原 道 知 事 로 1949. 11. 15 任 命)
法 制 司 法	徐 成 達	民 主 國 民 黨	懲 戒 資 格 委 員 兼 任 (懲 戒 資 格 委 員 會 의 缺 員 으 로 말 미 아 마 國 會 法 上 常 任 委 員 兼 職 은 할 수 없 으 나 臨 時 措 置 로 國 會 의 決 議 를 거 쳐 懲 戒 資 格 委 員 을 兼 任 하 게 된 것 임) (1950. 1. 17 補 選 됨)
產 業	申 邦 鉉	"	
財 政 經 濟	金 益 魯	"	
交 通 遞 信	申 光 均	一 民 俱 樂 部	
內 務 治 安	金 喆	"	

(3) 特別委員

※ 參考事項

1. 特別委員의 所屬政黨 및 團體에 대한 資料의 不在로 第1回 國會부터 第4回 國會까지는 그 所屬을 記載하지 못하였음.
2. ○標는 委員長, □標는 副委員長, △標는 幹事를 表示함

第1回 國會 (臨時會)

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 (30人)

(1948. 6. 1)
第2次 本會議決議

○徐相日 · □李允榮 · 李青天 · 曹奉岩 · 徐成達
洪翼杓 · 金庚培 · 金孝錫 · 朴海克 · 具中會
許政 · 李康雨 · 金尙德 · 鄭島榮 · 金翼基
趙憲永 · 延秉吳 · 柳鴻烈 · 李勳求 · 李鍾麟
金光俊 · 崔圭鈺 · 白寬洙 · 吳龍國 · 申鉉謨
尹錫龜 · 吳錫柱 · 金俊淵 · 金沃周 · 柳聖甲

國會法及國會規則起草委員 (15人)

(1948. 6. 1)
第2次 本會議決議

○徐廷禧 · □裴憲 · □張基永 · 尹致暎 · 李裕善
鄭求參 · 成樂緒 · 金明東 · 金奉斗 · 鄭光好
金長烈 · 金若水 · 李源弘 · 崔允東 · 錢鎮漢

美駐屯軍司令官「하이지」中將으로부터國會議員에게보낸書翰에 대한
答翰과유엔·美軍政當局에게國會가開會된通知및開會式에參席한外國來
賓에게感謝狀을보내는件起草委員(5人)

(1948. 6. 1)
第2次 本會議決議

張 勉 · 尹致暎 · 李青天 · 李勳求 · 白寬洙

對外關係에 있어서交涉및連絡을할交涉委員(5人)

(1948. 6. 2)
第3次 本會議決議

李勳求 · 尹致暎 · 張 勉 · 金度演 · 張基永

議員宿所等の便宜을圖謀할連絡委員(3人)

(1948. 6. 2)
第3次 本會議決議

金俊淵 · 金相敦 · 白寬洙

國內外新聞通信에發表을擔當할通信委員(3人)

(1948. 6. 2)
第3次 本會議決議

許 政 · 鄭海駿 · 李恒發

特別法(反民族行爲處罰法)起草委員(28人)

(1948. 8. 5)
第40次 本會議決議

○金雄鎮 · □金相敦 · 李榮俊 · 尹在旭 · 徐廷禧
金庚培 · 洪淳玉 · 宋必滿 · 延秉昊 · 金明東

宋鎮百 · 南宮炫 · 李文源 · 裴憲 · 吳基烈
 張洪瑛 · 趙玉鉉 · 黃炳珪 · 朴湘永 · 韓巖回
 李錫 · 朴海克 · 姜旭中 · 朴允源 · 金光俊
 洪範憲 · 張基永 · 吳龍國

政府內親日派肅清에대한建議特別調查委員 (11 人)

(1948. 8. 19.)
 第 44 次 本會議決議

○ 金仁湜 · 李載滢 · 李裕善 · 金雄鎮 · 朴己云
 金基喆 · 金明東 · 徐容吉 · 金用在 · 林爽奎
 李鍾根

美駐屯軍司令官「하아지」中將歸國餞送에관한節次와感謝文起草委員
 (5 人)

(1948. 8. 25.)
 第 48 次 本會議決議

張勉 · 張基永 · 李勳求 · 鄭顯模 · 羅容均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 (10 人)

(1948. 9. 29.)
 第 77 次 本會議決議

委員名	備考	委員名	備考
○ 金尙德	慶尙北道	金俊淵	全羅南道
吳基烈	全羅北道	金相敦	서울特別市
李鍾淳	江原道	趙重顯	京畿道
金庚培	黃海道 · 濟州道	金孝錫	慶尙南道
金明東	忠清南道	朴愚京	忠清北道

※ 本委員은 各道別로 1人씩 代表를 選定하였음.

時局(叛亂)收拾對策委員(20人)

(1948. 10. 30.)
(第92次本會議決議)

○李青天 · □徐相日 · 崔雲教 · 徐禹錫 · 郭尙勳
金長烈 · 金俊淵 · 孫在學 · 金光俊 · 吳澤寬
金汶杵 · 崔獻吉 · 李勳求 · 趙憲泳 · 權泰羲
李榮俊 · 李鍾麟 · 趙重顯 · 趙玉鉉 · 金東準

國會厚生委員(10人)

(1948. 11. 26.)
(第114次本會議決議)

○金秉會 · △權泰羲 · 徐成達 · 尹炳求 · 張炳晚
黃虎鉉 · 金雄鎮 · 崔錫和 · 金載學 · 裴重赫

유엔總會議長及大韓民國代表에게 보내는感謝決議文起草委員(3人)

(1948. 12. 13.)
(第128次本會議決議)

李允榮 · 金俊淵 · 金明東

第2回國會(定期會)

監察委員會의通告(農林部長官의非行)에關한調查委員(9人)

(1949. 2. 4.)
(第22次本會議決議)

趙憲泳 · 金沃周 · 申性均 · 李勳求 · 姜旭中
金用鉉 · 黃炳珪 · 徐二煥 · 崔圭鈺

監察委員會의 通告 (商工部長官의 非行) 에 關한 調查委員 (8 人)

(1949. 4. 16
第 77 次本會議決議)

徐禹錫 · 林爽奎 · 朴贊鉉 · 李晶來 · 朴允源
李在鶴 · 金沃周 · 姜旭中

第 3 回國會 (臨時會)

開城事件負傷兵慰問委員 (5 人)

(1949. 5. 27
第 5 次本會議決議)

元容漢 · 吳澤寬 · 表鉉台 · 趙鍾勝 · 李聖得

慶津地區三八線事件真相調查委員 (4 人)

(1949. 5. 31
第 8 次本會議決議)

權炳魯 · 尹在旭 · 吳澤寬 · 金仁湜

國會及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會襲擊示威事件對策交涉에 關한 委員
(5 人)

(1949. 6. 3
第 11 次本會議決議)

鄭 潛 · 金雄權 · 羅容均 · 鄭海駿 · 金長烈

第 4 回國會 (臨時會)

本會期中 特別委員會의 構成은 없었음.

第5回國會(臨時會)

保稅倉庫調查委員(10人)

(1949. 11. 1
第29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相敦	民主國民黨	吳澤寬	大韓勞農黨
金汶杓	"	金景道	一民俱樂部
黃炳珪	一民俱樂部	姜己文	新政會
尹炳求	新政會	金教中	無所屬
吳基烈	大韓勞農黨	曹奎甲	"

第6回國會(定期會)

公務員處遇改善對策委員(8人)

(1950. 1. 19
第9次本會議決議)

委員名	備考	委員名	備考
郭尙勳	懲戒資格	李在鶴	文教社會
徐淳永	法制司法	洪翼杓	交通遞信
李聖學	外務國防	崔奉植	內務治安
洪燧種	產業	金汶杓	財政經濟

※備考：本委員은 各常任委員會에서 1人씩 代表를 選定하였음

大韓政治工作隊事件調查委員（5人）

（1950. 4. 12
第74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朴峻	大韓國民黨	郭尙勳	無所屬
金俊淵	民主國民黨	趙憲泳	"
李聖學	一民俱樂部		

信託銀行不正貸付調查委員（5人）

（1950. 4. 15
第75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所屬團體	委員名	所屬團體
金教中	無所屬	金汶杵	民主國民黨
金光俊	"	金景道	一民俱樂部
李鎮洙	大韓國民黨		

3.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

制憲國會中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任·免은 다음과 같다.

가. 國務總理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8.2	國 務 總 理	李 範 奭	1950.4.21
1950.4.21		申 性 模	

나. 國務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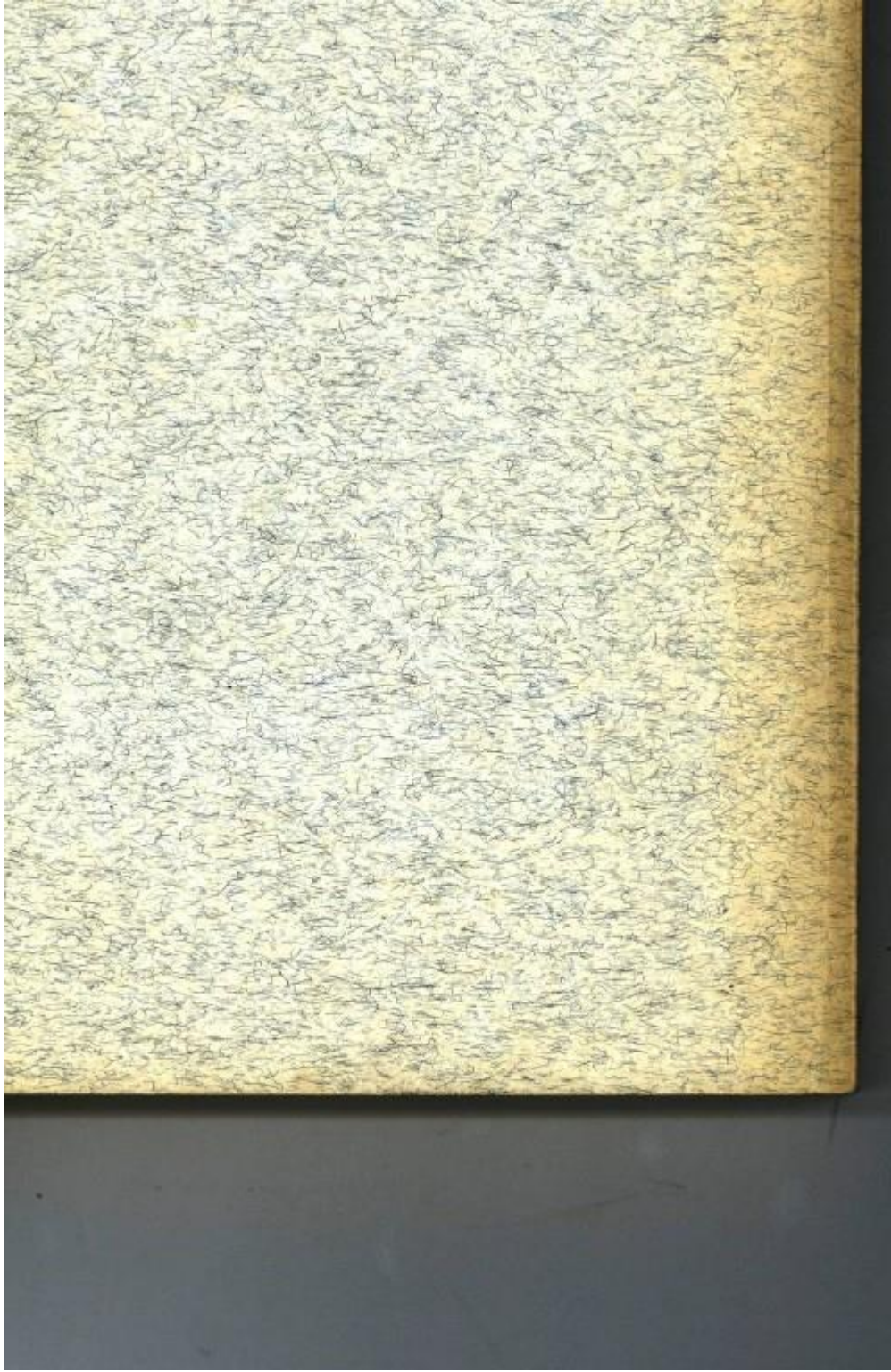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8.4	外 務 部 長 官	張 澤 相	1948.12.24
1948.12.25		林 炳 稷	
1948.8.3	內 務 部 長 官	尹 致 暎	1948.12.22
1948.12.22		申 性 模	1949.3.21
1949.3.21		金 孝 錫	1950.2.7
1950.2.7		白 性 郁	
1948.8.2	財 務 部 長 官	金 度 演	1950.4.22
1950.4.25		崔 淳 周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8. 2	法務部長官	李 仁	1949. 6. 6
1949. 6. 6		權 承 烈	1950. 5.22
1950. 5.22		李 愚 益	
1948. 8. 4	國務部長官	李 範 奭	1949. 3.21
1949. 3.21		申 性 模	
1948. 8. 3	文教部長官	安 浩 相	1950. 5. 2
1950. 5. 2		白 樂 濬	
1948. 8. 2	農林部長官	曹 奉 岩	1949. 2.23
1949. 2.23		李 宗 鉉	1950. 1.21
1950. 1.21		尹 永 善	
1948. 8. 4	商工部長官	任 永 信	1949. 6. 6
1949. 6. 6		尹 潛 善	1950. 5. 9
1950. 5. 9		金 勳	
1949. 6. 4	保健部長官	具 永 淑	
1948. 8. 8	社會部長官	錢 鎮 漢	1948.12.24
1948.12.24		李 允 榮	
1948. 8. 2	交通部長官	閔 熙 植	1948.10. 4
1948.10. 4		許 政	1950. 5.10
1950. 5.10		金 錫 寬	
1948. 8. 4	遞信部長官	尹 錫 龜	1949. 6.14
1949. 6.14		張 基 永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8.12	無任所長官	李 青 天	1948. 9.27
1948. 8.12		李 允 榮	1948.11.22

ㄊ. 政府委員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8. 9	外務部次官	高 昌 一	1949. 3.24
1949. 3.24		曹 正 煥	
1948. 8. 9	內務部次官	黃 熙 贊	1949. 1. 5
1949. 1. 5		金 孝 錫	1949. 3.21
1949. 4. 4		張 曠 根	1950. 3.26
1950. 3.26		金 甲 洙	
1948. 8. 7	財務部次官	張 熙 昌	1949.12.17
1949.12.17		金 裕 澤	
1948. 8.10	國防部次官	崔 用 德	1950. 3.15
1950. 3.15		張 曠 根	
1948. 8. 7	法務部次官	權 承 烈	1948.10.31
1948.10.31		白 漢 成	1949. 6. 7
1949. 6. 8		金 甲 洙	1950. 3.14
1950. 3.14		金 潤 根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8. 9 1948.10.15 1950. 5.12	文教部次官	文 章 郁 朴 鍾 萬 崔 奎 南	1948.10.15 1950. 5.12
1948. 8.11 1948. 9.30 1949. 4. 8 1950. 3.14	農林部次官	南 鳳 淳 姜 鋌 澤 鄭 求 興 朱 碩 均	1948. 9.30 1949. 3.24 1950. 3.14
1948.10. 4 1949. 9.16 1950. 5.22	商工部次官	金 秀 學 韓 通 淑 李 丙 虎	1949. 9.15 1950. 5.22
1949. 6.11	保健部次官	李 甲 洙	
1948. 8.10 1949. 1.26	社會部次官	吳 宗 植 崔 昌 順	1949. 1. 8
1948. 8. 9 1949. 1. 9 1949. 8.20 1950. 5.31	交通部次官	康 亨 燮 羅 基 湖 金 錫 寬 金 錫 明	1949. 1. 9 1949. 8.20 1950. 5.10
1948. 8. 9 1948.11. 1 1949. 7.29	通信部次官	白 泓 均 朴 容 夏 姜 直 淳	1948.11. 1 1949. 7.29
1948. 8. 4 1949. 6. 4	公報處長	金 東 成 李 哲 源	1949. 6. 4

任命年月日	部 署	姓 名	解任年月日
1948. 8. 7 1948.11.30	總 務 處 長	金 炳 淵 全 奎 弘	1948.11.30
1948. 8. 4 1949. 6. 6	法 制 處 長	俞 鎮 牛 申 泰 益	1949. 6. 6
1948. 8. 7 1949. 7.22	企 劃 處 長	李 順 澤 金 勳	1949. 7.22 1950. 5.9
1949.12.17	外資購買處長	金 佑 杓	

※ 政府委員은 次官級 이상만 掲載하였음.

4. 議案

가. 議案提出 및 處理

(議案種類別處理狀況表)

區分 議案種類別	提出數	處 理						會期不繼續 으로因 한廢棄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返戻	
豫算案及決算	19	15		1	2			1
法 議員發議	89	43	1	23		6		16
律 政府提出	145	106		8	1	3		27
案 小 計	234	149	1	31	1	9		43
(再議法律案)	(14)	(12)		(2)				
同意(承認)案	27	25	2					
建 議 案	52	34		10	1	2		5
決 議 案	93	67	6	6	1	2		11
重 要 動 議	63	56	1	1	2			3
(議員懲戒)	(5)	(2)	(1)					(2)
計	488	346	10	49	7	13		63

※: 備考 1. 再議法律案은 統計에 算入하지 않음.

2. 議員懲戒는 重要動議中에서 懲戒動議 部分을 별도로 算出한 것임.

(1) 豫算案과 決算

會期別	提出數	可決	廢棄	撤回	會期不繼續 으로因한 廢棄
第 1 回					
第 2 回	6	5	1		
第 3 回	2				
第 4 回	(2)			2	
第 5 回	3	2			
第 6 回	8(1)	8			1
計	19	15	1	2	1

※ 備考 : () 內의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繼續 으로因한 廢棄
2	2	檀紀 4281 年度歲入歲出總豫算案	1949. 3.31	○					
2	2	檀紀 4281 年度第 1 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	○					
2	2	檀紀 4281 年度第 2 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	○					
2	2	檀紀 4282 年歲入歲出假豫算案	〃	○					
2	2	檀紀 4282 年度歲入歲出總豫算案	1949. 4.30	○					
5	5	檀紀 4282 年度第 1 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1949.11.30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 或因社 廢棄
5	5	檀紀 4282 年度厚生福票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949.12. 1	○					
5	6	檀紀 4282 年度第 2 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950. 3.23	○					
6	6	檀紀 4282 年度第 3 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1950. 3.30	○					
6	6	檀紀 4282 年度厚生福票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豫算案	1950. 3.31	○					
6	6	檀紀 4283 年度歲入歲出假豫算案	1950. 3.31	○					
6	6	檀紀 4283 年度歲入歲出總豫算案	1950. 4.22	○					
6	6	檀紀 4283 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					
6	6	檀紀 4283 年度韓國經濟復興援助資金을資源으로하는追加豫算案	"	○					
6	6	檀紀 4283 年度糧穀管理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					
2	2	檀紀 4282 年度歲入歲出追加假豫算案	1949. 3.31			○			
3	4	檀紀 4282 年度第 1 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1949. 7.30				○		
3	4	檀紀 4282 年度第 2 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				○		
6	6	檀紀 4282 年度國立劇場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950. 3.30						○

(2) 法律案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 인한 廢棄
第 1 回	24	20				1	2
第 2 回	79(1)	16		6		4	3
第 3 回	26(51)	3					5
第 4 回	22(69)	17		6		2	
第 5 回	35(66)	35		3			1
第 6 回	48(62)	58	1	16	1	2	32
計	234	149	1	31	1	9	43

※ 備考：() 內的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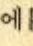
(가) 議員發議法律案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 인한 廢棄
第 1 回	16	13					2
第 2 回	21(1)	5		4		4	1
第 3 回	6(8)	3					1
第 4 回	13(10)	5		6		2	
第 5 回	12(10)	7					1
第 6 回	21(14)	10 △ 1	1	13			11
計	89	43 △ 1	1	23		6	16

※ 備考：1. () 內的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된 件數임.
2. △ 1 은 1 個法案을 兩法案으로 分割通過함 (可決數에 포함됨)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行 廢 棄
1	1	國會法案	起 草 委 員 長	1948. 6.10	○					
1	1	大韓民國憲法案	"	1948. 7.12	○					
1	1	政府組織法案	"	1948. 7.16	○					
1	1	反民族行爲處罰法案	"	1948. 9.7	○					
1	1	年號에 關한 法律案	法 制 司 法 委 員 長	1948. 9.12	○					
1	1	國會法中改正案	"	1948. 9.14	○					
1	1	한글 전용 법안	權 泰 羲	1948. 10.1	○					
1	1	國家保安法案	法 制 司 法 委 員 長	1948. 11.19	○					
1	1	反民族行爲特別調查機關 組織法案	金 尙 德	1948. 11.25	○					
1	1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 屬機關組織法案	"	"	○					
1	1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 法律案	"	"	○					
1	1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 律案	徐 禹 錫	1948. 12.8	○					
1	1	穀物檢查規則中改正法律 案	洪 煥 鍾	1948. 12.10	○					
2	2	地方自治法案	法 制 司 法 內 務 治 安 委 員 長	1949. 3.9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原因
2	2	國會議員報酬法案「 <small>德</small> 國國會議員報酬에 關한法律案	洪性夏 柳俊相	1949. 3.11	○					
2	2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文教社會 委員會長	"	○					
2	2	漁業에 關한臨時措置法案	產業 委員會長	1949. 4.14	○					
2	2	農地改革法案	"	1949. 4.27	○					
2	3	歸屬財產臨時措置法案	趙炳漢	1949. 5.24	○					
3	3	所得稅及事業稅決定에 關한臨時措置에 關한法律案	洪性夏	1949. 5.30	○					
3	3	地方自治法案	法制司法 內務治安 委員會長	1949. 6.17	○					
2	4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	曹泳珪	1949. 7.6	○					
4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 委員會長	1949. 7.9	○					
4	4	兵役法案	池青天	1949. 7.15	○					
4	4	地方稅에 關한臨時措置法案	洪性夏	1949. 7.26	○					
4	4	漁業에 關한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產業 委員會長	1949. 7.30	○					
5	5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	李仁	1949. 9.22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案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因廢案
5	5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組織法及反民族行爲特別調查機關組織法廢止에 관한法律案	李 仁	1949. 9.22	○					
5	5	國有財產處分에 관한臨時措置法案	產業委員長	1949. 9.23	○					
4	5	戒嚴法案	池 青天	1949. 10.27	○					
5	5	漁業에 관한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產業委員長	1949. 10.29	○					
5	5	食糧臨時緊急措置法中改正法律案	朴 湘 永	1949. 10.31 11.5	○					
5	5	大韓民國教育法案「  教育法案」	文教社會委員長	1949. 11.26	○					
6	6	奇附統制法中改正法律案	李 榮 俊	1950. 1.24	○					
4	6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李 源 弘	1950. 2.2	○					
6	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李 相 敦	1950. 2.10	○					
6	6	教育法中改正法律案	朴 湘 永	1950. 2.13	○					
6	6	軍政法令廢止에 관한法律案「  軍政法令廢止에 관한法律案」 「軍政法令中改正法律案」	李 源 弘	1950. 2.15	○					
5	6	計理士法案	李 鎮 洙	1950. 2.22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是因廢棄
6	6	法院災難에 基因한 刑事事件臨時措置法案	李源弘	1950. 2.23	○					
5	6	災害復興組合法案	金汝桺	1950. 3.22	○					
6	6	國立劇場設置法案	閔庚植	1950. 4.21	○					
6	6	漁業에 關한 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產業委員長	1950. 4.22	○					
6	6	大韓民國憲法改正案	徐相日	1950. 3.14		○				
2	2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吳基烈	1949. 1.17			○			
2	2	糧穀買上에 關한 特別法案	李勳求	1949. 2.23			○			
2	2	農地改革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金秉會	1949. 3.12			○			
2	2	特別地區國軍將校及警察官吏特別勤勞謝慰金給與法案	徐延禧	1949. 3.30			○			
2	4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	鄭島榮	1949. 7.4			○			
2	4	反民族行爲特別調查機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曹泳珪	〃			○			
2	4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組織法中改正法律案	〃	〃			○			
3	4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	李聖學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否 決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3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徐禹錫	1949. 7.4		○			
3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	金秉會	"		○			
4	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李仁	1949. 3.25		○			
4	6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黃虎鉉	1949. 12.21		○			
4	6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李仁	"		○			
4	6	關稅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姜善明	1950. 1.14		○			
6	6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李在鶴	1950. 1.31		○			
6	6	教育法中改正法律案	金壽善	1950. 2.13		○			
6	6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李聖學	1950. 2.21		○			
6	6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徐禹錫	1950. 3.23		○			
5	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金雄鎮	1950. 3.25		○			
5	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池大亨	"		○			
5	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金載學	"		○			
6	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李仁	"		○			
6	6	建設廳法案	法制司法 委員長	"		○			
2	2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徐禹錫	1949. 2.2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2	2	國會議員選舉法中 改正法律案	金翼基	1949. 2.2					○	
2	2	農業協同社法案	李勳求	1949. 3.19					○	
2	2	鐵道運賃臨時措置法案	曹國鉉	1949. 4.16					○	
2	4	穀物檢查法案	洪煥種	1949. 7.20					○	
4	4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朴瓚鉉	1949. 7.29					○	
1	1	地方自治組織法案	內務治安 委員長							○
1	1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權泰羲							○
1	2	土地改革法案	李勳求							○
2	3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 法律案	徐禹錫							○
2	5	歸屬財產調查法案	李在鶴							○
3	6	新聞紙法廢止에 關한法律 案	元長吉							○
4	6	軍機保護法案	池青天							○
4	6	許可·認可·免許·承認 等行政事務敏速處理에 關 한法律案	朴海楨							○
5	6	大韓蠶絲公社法案	李鎮洙							○
6	6	國策審議會設置法案	李仁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此 廢 棄
6	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朴海楨							○
6	6	新聞及定期刊行物法案	李源弘							○
6	6	漁業法案	產業 委員 長							○
6	6	選舉權行使의 特別制限에 關한法律案	柳聖甲							○
6	6	大韓航空法案	李裕善							○
6	6	行政訴訟法案	李仁							○

(나) 政府提出法律案

會 期 別	提 出 數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此 廢 棄
第 1 回	8	7				1	
第 2 回	58	11(1)		2			2
第 3 回	20(43)						4
第 4 回	9(59)	12					
第 5 回	23(56)	28		3			
第 6 回	27(48)	48		3	1	2	-21
計	145	106(1)		8	1	3	27


備考：1. 提出數欄()內的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된 件數임.
 2. 可決欄()內的 숫자는 政府提出 農地改革法案이 産業委員會案으로 通過되었으나 可決數 11에 包含시킴.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1	1	赦免法案	1948. 8.20	○					
1	1	糧穀買入法案	1948. 9.30	○					
1	1	地方行政組織法案「 ^㉔ 地方行政 에 관한臨時措置法案」	1948. 11.4	○					
1	1	國軍組織法案	1948. 11.15	○					
1	1	審計院法案	1948. 11.22	○					
1	1	臨時郵便團束法案	1948. 11.23	○					
1	1	國籍法案	1948. 12.3	○					
2	2	人口調查法案	1949. 1.19	○					
2	2	稅關官署設置法案	1949. 1.24	○					
2	2	地方專賣官署設置法案	1949. 1.27	○					
2	2	地方交通官署設置法案	1949. 1.31	○					
2	2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	1949. 4.15	○					
2	2	內務部地方土木官署設置法案	1949. 4.18	○					
2	2	通常郵便物の種類및料금에 관한法 律案	1949. 4.25	○					
2	2	大韓赤十字社組織法案	1949. 4.26	○					
2	2	郵便年金의年額에 관한法律案	1949. 4.27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2	2	農地改革法案	1949. 4.27	○					
2	2	國民生命保險年額에 關한 法律案	"	○					
2	4	畜牛屠殺制限法案	1949. 7.11	○					
2	4	所得稅法案	1949. 7.12	○					
2	4	地方稅務官署設置法案	1949. 7.19	○					
2	4	臨時租稅措置法案	1949 7.20	○					
4	4	國會議員補闕選舉臨時措置法案	"	○					
4	4	國家公務員法案	1949. 7.26	○					
2	4	厚生福票發行法案	1949. 7.29	○					
2	4	厚生福票金特別會計法案	"	○					
2	4	農產物檢查法案	"	○					
3	4	地方遞信官署設置法案	"	○					
2	4	營業稅法案	1949. 7.30	○					
4	4	法院組織法案	"	○					
3	5	大韓海運公社法案	1949. 9.20	○					
3	5	國慶日에 關한 法律案	1949. 9.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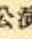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因 廢
2	5	遊興飲食稅法案	1949. 9.22	○					
3	5	大韓造船公社法案	1949. 9.23	○					
2	5	入場稅法案	1949. 9.27	○					
2	5	酒稅法案	1949. 9.29	○					
2	5	法人稅法案	1949. 9.30	○					
2	5	朝鮮利益配當稅令朝鮮法人資本 稅令及朝鮮特別行爲稅令廢止에 關한法律案	"	○					
2	5	辯護士法案	1949. 10.11	○					
4	5	外國人入國及出國登錄에關한法 律案	"	○					
4	5	寄附統制法案	1949. 10.28	○					
2	5	商標法案	1949. 11.4	○					
5	5	在外國民登錄法案	1947. 11.7	○					
3	5	關稅法案	1949. 11.11	○					
2	5	歸屬財產處理法案	1949. 11.22	○					
2	5	外資廳設置法案「臨時外資管 理廳設置法案」	1949. 12.2	○					
5	5	外資購買廳臨時設置法案「外資 購買處臨時設置法案」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5	5	憲兵及國軍情報機關의 搜查限界에 關한 法律案	1949. 12.2	○					
5	5	反民族行爲裁判部機關臨時組織法 案	"	○					
5	5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	○					
2	5	清涼飲料稅法案	1949. 12.3	○					
3	5	國稅徵收法案	"	○					
3	5	地方稅法案	"	○					
4	5	檢察廳法案	"	○					
5	5	國債法案	"	○					
5	5	國債金特別會計法案	"	○					
5	5	國防事業國債法案 「 ^㉔ 歲入補填國債法案」	"	○					
5	5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949. 12.28	○					
2	6	放送事業特別會計法案	1950. 1.12	○					
2	6	專賣事業特別會計法案	"	○					
3	6	外資特別會計法案	"	○					
3	6	臨時管財總局管理財產特別會計法 案「 ^㉔ 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法 案」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案	撤 回	保 留	會 期 不 因 廢 案
5	6	糧穀管理法案	1950. 1.23	○					
2	6	馬券稅法案	1950. 1.24	○					
3	6	營林官署設置法案	"	○					
2	6	贈與稅法案	1950. 1.25	○					
2	6	交通事業特別會計法案	"	○					
2	6	歸屬農地管理特別會計法案	"	○					
2	6	郵便年金特別會計法案	"	○					
2	6	國民生命保險特別會計法案「  國民生命保險斗郵便年金特別會計法案」	"	○					
3	6	通信事業特別會計法案	"	○					
3	6	防禦海面法案	1950 1.26	○					
3	6	海軍基地法案	"	○					
4	6	船舶管理法案	1950. 1.27	○					
5	6	水產物檢查法案	"	○					
2	6	彈劾裁判法案	1950. 1.30	○					
2	6	憲法委員會法案	"	○					
6	6	郵便貯金運用法案	1950. 2.3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2	6	行刑法案	1950. 2.7	○					
2	6	通行稅法案	1950. 2.8	○					
2	6	印紙稅法案	1950. 2.9	○					
2	6	免許稅法案	"	○					
2	6	電氣外之稅法案	"	○					
2	6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案	1950. 2.22	○					
6	6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	○					
5	6	地方交通官署設置法中改正法律案	1950. 2.23	○					
2	6	相續稅法案	1950. 2.24	○					
2	6	物品稅法案	1950. 3.18	○					
3	6	國有財產法案	"	○					
6	6	國會議員選舉法案	"	○					
2	6	舊王宮財產處分法案	1950. 3.20	○					
2	6	簡易訴請節次에 依한 歸屬解除決 정의 確認에 關한 法律案	1950. 3.22	○					
5	6	地方放送局設置法案	1950. 3.24	○					
6	6	軍事援護法案	1950. 3.2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案
5	6	國內財產逃避防止法案	1950. 4.7	○					
6	6	酒稅法中改正法律案	1950. 4.12	○					
6	6	通常郵便物種類別料金에 關한法律 中改正法律案	1950. 4.14	○					
6	6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	"	○					
6	6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	○					
6	6	織物稅法案	1950. 4.17	○					
6	6	大韓石炭公社法案	1950. 4.18	○					
4	6	國立劇場特別會計法案	1950. 4.21	○					
6	6	韓國銀行法案	"	○					
6	6	銀行法案	"	○					
6	6	糧穀管理特別會計法案	"	○					
5	6	國庫金端數計算法案	1950. 4.22	○					
2	2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	1949. 2.24			○			
2	2	反民族行爲特別檢察部調查機關組 織法案	"			○			
2	5	教育基本法案	1949. 10.24			○			
2	5	學校教育法案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3	5	社會教育法案	1949. 10.24			○			
6	6	教育法中改正法律案	1950. 2.13			○			
6	6	國會議員特別選舉에 關한法律案	1950. 3.18			○			
5	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1950. 3.25			○			
5	6	大韓石炭公社法案	1950. 3.29				○		
1	1	國家公務員法案	1948. 12.9					○	
2	6	少年法案	1950. 2.15					○	
3	6	公演法案「  藝術保護法案」	1950. 4.7					○	
2	2	國家公務員法案							○
2	2	地方行政에 關한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
2	3	檢察廳法案							○
2	3	法院組織法案							○
3	3	國家公務員法案							○
3	3	地方行政에 關한臨時措置法案							○
3	6	戶籍登記 및 公證에 關한法律案							○
3	6	協同組合法案							○
4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 年	決 月	可 日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繼 呈 廢	期 續 因 不 은 한
5	6	肥料管理法案									○
5	6	中央都賣市場法案									○
5	6	徵發法案									○
5	6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
5	6	大韓「시멘트」株式會社法案									○
5	6	戶籍法案									○
6	6	醫師及齒科醫師法案									○
6	6	保健所法案									○
6	6	行政執行法案									○
6	6	銃砲火藥類團束法案									○
6	6	家畜市場法案									○
6	6	國寶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案									○
6	6	勞動爭議調整法案									○
6	6	軍機保護法案									○
6	6	藥事法案									○
6	6	外資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廢 棄
6	6	臨時外資管理廳設置法中改正法律案							○
6	6	國債補助券法案							○

※ 備考 : 法律案의 總은 題目이 修正된 案件임.

(3) 法律案 再議의 件

會 期 別	拒 否 數	法律確定	法律確定 으로看做	修正通過	廢 棄
第 1 回	2	1		1	
第 2 回	3			1	1
第 3 回	3(1)	2	1		1
第 4 回					
第 5 回	2	1		1	
第 6 回	4	1		3	
計	14	5	1	6	2

※ 備考 : () 內의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拒否 會期	處理 會期	件名	再議決 年月日	法律 確定	法律確 定으로 看做	修正 通過	廢棄	會期不繼 續으로 因한廢棄
1	1	地方行政에關한臨時措置法案	1948 11.4	○				
2	3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	1949 6.15	○				
3	3	歸屬財產臨時措置法案	1949 6.15	○				
5	5	法院組織法案	1949 9.19	○				
6	6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1950 4.8	○				
3	3	農地改革法案消滅通告의件	1949 6.14		○			
1	1	糧穀買入法案	1948 10.6			○		
2	2	地方自治法案	1949 4.14			○		
5	5	歸屬財產處理法案	1949 12.3			○		
6	6	軍政法令廢止에關한法律案	1950 4.8			○		
6	6	軍政法令中改正法律案	〃			○		
6	6	國會議員選舉法案	1950 4.10			○		
2	2	穀物檢查規則改正法律案	1948 12.20				○	
3	3	地方自治法案廢棄通告의件	1949 5.30				○	

(4) 同意(承認)案

區分		第1回	第2回	第3回	第4回	第5回	第6回	計
法 令	提出數	2				1	(1)	3
	同意	2					1	3
條約協定	提出數	2	1	1(1)	(1)	(1)	2	6
	同意	2		1		1	2	6
豫算支出	提出數						2	2
	同意						2	2
保證融資	提出數	1	5	1(2)	(2)	5(1)	3	15
	同意	1	3	1	1	5	3	14
其他負擔	不同意					1		1
	提出數		1					1
其 他	不同意		1					1
	提出數	5	7	2(3)	(3)	6(2)	(7) 1	27
計	同意	5	3	2	1	6	8	25
	不同意		1			1		2

※ 備考: ()內的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同 意	不 同 意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	1	一般赦免令同意案	1948. 9.15	○					
1	1	大韓民國政府及美國政府間의 財 政及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同意案	1948. 9.18	○					
1	1	禮紀 4281 年產米穀資金政府保 證貸付同意案	1948. 11.17	○					
1	1	美合衆國及大韓民國間의 援助協 定同意案	1948. 12.13	○					
1	1	國會事務處職制同意案	〃	○					
2	2	美合衆國에 半島「호텔」을 贈與 함에 對한 同意案	1949. 1.22	○					
2	2	禮紀 4281 年度棉花買上資金政 府保證 貸付同意案	1949. 1.29	○					
2	2	禮紀 4282 年度藥工品買上資金政 府保證貸付同意案	1949. 3.26	○					
2	3	世界保健機構加入에 關한 同意案	1949. 5.25	○					
2	3	禮紀 4282 年度農林部所管蠶絲類 生產 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1949. 5.30	○					
3	4	麗水災害復舊事業資金政府保證 融資同意案	1949. 7.9	○					
3	5	大韓民國政府及北美合衆國間의 電力에 關한 協定批准同意案	1949. 11.9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同 意	不 同 意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5	5	禮紀 4282 年度農地開發對策費充當長期債追加政府保證貸付同意案	1949. 12.1	○					
5	5	禮紀 4282 年度農地開發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	○					
5	5	禮紀 4282 年度棉花買上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	○					
5	5	禮紀 4282 年度產米穀買上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1949. 12.3	○					
5	5	禮紀 4282 年度輸出用海苔收集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	○					
5	6	國會旅費規程同意案	1949. 12.23	○					
6	6	禮紀 4282 年度第 2 回追加更正豫算中一部使用承認의件	1950. 2.17	○					
6	6	韓美軍事援助雙務協定同意案	1950. 3.30	○					
6	6	禮紀 4282 年度第 1 回追加豫算中緊急支出에 關한歲入財源變更承認의件	"	○					
6	6	禮紀 4283 年度桑苗蠶種生產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1950. 4.22	○					
6	6	禮紀 4282 年度農地開發資金追加政府保證貸付同意案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議決 年月日	同 意	不 同 意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6	6	韓美財政及財産에 關한 最終協定同 意案	1959. 4.22	○					
6	6	商工部直轄三成鑛業會社長項製鍊 所에 對한 政府保證融資同意案	"	○					
2	2	議員(曹奉岩)拘束同意要請의件	1949. 2.21		○				
2	5	檀紀 4283 年度木材買收資金政府 保證貸付同意案	1949. 12.1		○				

(5) 建議案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 因한 廢棄
第 1 回	17	12		1	1	2	
第 2 回	11(1)	6		5			
第 3 回	1(1)	1					1
第 4 回	2			1			
第 5 回	11	6		3			2
第 6 回	10	8					2
計	52	34		10	1	2	5

※ 備考：()內的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因 廢 棄
1	1	政府組織에 關한 建議案	申性均	1948. 8.2	○					
1	1	政府內親日派肅清에 關한 建議案	金仁湜	1948 8.19	○					
1	1	在日同胞財產搬入緊急措 置에 關한 建議案	姜己文	1948. 10.12	○					
1	1	高級料亭及興行營業臨時 停止에 關한 建議案	金相敦	1948. 10.29	○					
1	1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建議案	時局收拾 對策委員 會	1948. 11.12	○					
1	1	初等教育施設擴充에 關한 建議案	韓錫範	1948. 11.27	○					
1	1	乾海苔對日輸出促進에 關 한 建議案	朴允源	1948. 11.29	○					
1	1	石油精製及統制에 關한 建 議案	金壽善	1948. 12.4	○					
1	1	外國船舶에 對한 不正行爲 防止에 關한 建議案	張洪琰	1948. 12.10	○					
1	1	無住宅同胞에 對 敵產建物 再分配에 關한 建議案	趙鍾勝	"	○					
1	1	糧穀買入用以及包裝品代 別途支拂에 關한 建議案	黃斗淵	"	○					
1	1	洛東江上流南江切江工事 促進에 關한 建議案	黃潤鎬	"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2	2	人事刷新(內務長官辭職)勸告에 關한 建議案	李 錫 柱	1948. 12.22	○				
2	2	國立서울大學校工科大學擴充에 關한 建議案	李 晶 來	1949. 2.18	○				
2	2	糧穀買上에 關한 建議案	產業委員 會	1949. 2.25	○				
2	2	鐵道賃金引上에 關한 建議案	洪 性 夏	1949. 3.9	○				
2	2	鐵道運賃에 關한 建議案	交通遞信 財政經濟 委員長	1949. 4.16	○				
2	2	教育施設에 對한 E.C.A. 援助請願에 關한 建議案	權 泰 義	1949. 4.30	○				
2	3	各種雜種金의 徵收廢止에 關한 建議案	李 勳 求	1949. 5.31	○				
4	4	建設事業推進에 關한 建議案	李 周 衡	1949. 7.19	○				
5	5	서울市內「택시」整備에 關한 建議案	吳 錫 柱	1949. 10.1	○				
5	5	建設部設置에 關한 建議案	金 雄 鎮	1949. 10.8	○				
5	5	乾海苔融通資金政府保證貸付에 關한 建議案	吳 錫 柱	"	○				
5	5	對韓經濟援助에 對한 外交促進에 關한 建議案	趙 漢 栢	1949. 10.25	○				
5	5	陶磁器密輸入에 關한 建議案	趙 憲 泳	1949. 11.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5	5	罹災民求護對策에 關한 建 議案	徐 禹 錫	1949. 11.2	○					
6	6	糧穀買上에 關한 建 議案	趙 漢 栢	1950. 1.18	○					
6	6	法務部長官·檢察總長罷 免에 關한 建 議案	曹 國 鉉	1950. 1.21	○					
6	6	政府保有米放出에 關한 緊 急 建 議案	郭 尙 勳	1950. 1.23	○					
6	6	肥料價格 및 食糧配給에 關 한 建 議案	權 炳 魯	1950. 2.14	○					
6	6	糧穀搗精에 關한 建 議案	金 用 在	1950. 2.15	○					
6	6	國政監查結果對策에 關한 建 議案	洪 煥 種	1950. 3.6	○					
6	6	教育行政에 關한 建 議案	權 泰 義	1950. 3.24	○					
6	6	疎開地處理에 關한 建 議案	李 仁	1950. 4.4	○					
1	1	秋穀收集廢止에 關한 建 議 案	金 禹 植	1948. 9.7			○			
2	2	對馬島返還要求에 關한 建 議 案	李 文 源	1949. 2.19			○			
2	2	國民服制定實施에 關한 建 議 案	趙 鍾 勝	1949. 3.3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	2	時局混亂에 鑑하여 行政大綱 宣布에 關한 建議案	趙 鍾 勝	1949. 3.11			○			
2	2	洛東江架橋工事に 關한 建 議案	朴 海 克	1949. 4.1			○			
2	2	外來留宿者申告制撤回 에 關한 建議案	元 長 吉	1949. 4.10			○			
4	4	移秧用勞務總動員에 關 한 建議案	朴 愚 京	1949. 7.28			○			
5	5	藥工品買上資金融資에 關한 建議案	崔 雲 教	1949. 10.31			○			
5	5	海美水利組合設置에 關 한 建議案	李 鍾 講	1949. 10. 8			○			
5	5	干拓事業實施에 關한 建 議案	李 聖 學	1949. 10.29			○			
1	1	國歌外國旗制定에 關한 建議案	鄭 均 植	1948. 9. 9				○		
1	1	最高國防會議設置에 關 한 建議案	延 秉 昊	1948. 9. 7					○	
1	1	外國輸入物資激增에 對 한 對策에 關한 建議案	姜 己 文	1948. 10. 1					○	
3	3	時局收拾에 對한 建議案	趙 鍾 勝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5	5	警察官增員計劃樹立에 關한建議案	朴瓚鉉							○
5	5	金融政策에關한建議案	姜善明							○
6	6	金融政策에關한建議案	姜善明							○
6	6	糧穀增産에關한建議案	黃斗淵							○

(6) 決議案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因한 廢棄
第1回	35	25		2	1	1	6
第2回	10	5	1	2			2
第3回	11	7	2	2			
第4回	5	3	1				
第5回	17(1)	14				1	2
第6回	15(1)	13	2				1
計	93	67	6	6	1	2	11

※ 備考 : () 內的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된 件數임.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1	1	國會臨時準則에 關한 決議案	國會準備 委員會	1948. 6. 1	○					
1	1	國際聯合朝鮮委員團에 國會 成立을 通告하는 決議案	交涉委員	1948. 6.11	○					
1	1	「北韓同胞에게 告함」 決議案	〃	1948. 6.12	○					
1	1	美國大統領 「트르만」氏 에게 보내는 感謝 決議案	李承晚	1948. 6.16	○					
1	1	特別法起草委員會設置 에 關한 決議案	金雄鎭	1948. 8. 5	○					
1	1	地方行政組織法等法律 案에 關한 決議案	李鎭洙	1948. 8.20	○					
1	1	美駐屯軍司令官 「하지」中 將에 對한 感謝 決議案	起草委員	1948. 8.26	○					
1	1	市內各處에 撤布된 不穩 文書의 出處 調查와 處斷 要請에 關한 決議案	尹在旭	〃	○					
1	1	國會會期에 關한 決議案	陳憲植	1948. 8.31	○					
1	1	愛國志士徐載弼博士를 大韓民國國民으로서 勸 請하는 決議案	權泰郁	1948. 9. 2	○					
1	1	大韓民國代表 유엔 派遣 에 對한 贊同 支持에 關한 決議案	趙憲洙	1948. 9. 8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	1	年號에 관한決議案	李周衡	1948. 9. 8	○					
1	1	유엔總會에 보내는大韓 民國政府承認要請에關 한決議案	朱基鎔	1948. 9.24	○					
1	1	懲戒資格委員會改編에 關한決議案	李源弘	1948. 10.28	○					
1	1	叛亂事件收拾에苦闘하는 國軍과警察에激勵文發送과 慰問金送達에關한決議案	徐禹錫	1948. 10.29	○					
1	1	時局收拾對策委員會組 織에關한決議案	陳憲植	1948. 10.30	○					
1	1	議事進行에關한決議案	趙憲泳	1948. 11. 1	○					
1	1	時局收拾對策에關한決 議案	時局收拾 對策委員長	1948. 11.12	○					
1	1	유엔總會에 보내는決議案	尹炳求	1948. 11.17	○					
1	1	美軍駐屯에關한決議案	崔允東	1948. 11.20	○					
1	1	國會厚生委員會設置에 關한決議案	裊重赫	1948. 11.26	○					
1	1	유엔總會에 보내는大韓 民國承認要請에關한決 議案	崔雲教	1948. 12. 1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	1	叛亂地區宣撫工作委員 派遣의件	郭尙勳	1948. 12. 3	○					
1	1	유엔總會及韓國代表에 게 보내는感謝決議案	國 會	1948. 12. 9	○					
1	1	유엔總會及韓國代表에 게 보내는感謝決議案	李聖學	1948. 12.13	○					
2	2	軍警에 對한感謝決議案	鄭光好	1948. 12.22	○					
2	2	大韓觀察府에 關한決議案	金相敦	1949. 1.21	○					
2	2	亞細亞會議에 보내는「렛 세지」	裴重赫	1949. 1.25	○					
2	2	유엔韓國委員團에 보내 는「렛세지」	李文源	1949. 1.28	○					
2	2	會期延期에 關한決議案	金秉會	1949. 3.18	○					
3	3	肥料配給機構에 關한決 議案	朴允源	1949. 5.25	○					
3	3	寄附金徵收防止에 關한 決議案	內務治安 委員長	1949. 5.31	○					
3	3	薺津地帶治安確保에 關 한決議案	吳澤寬	"	○					
3	3	全閣僚引責退陣에 關한 決議案	盧鎰煥	1949. 6. 2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日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3	3	反民族行爲處罰法執行 機關에 對한 警察의 行動 에 關한 決議案	李載滢	1949. 6. 6	○					
3	3	10 勇士에 對한 感謝文 및 慰問金奉呈에 關한 決議案	李鎮洙	"	○					
3	3	「맥아더」線擴張反對 에 關한 決議案	黃炳珪	1949. 6.14	○					
4	4	議事에 關한 決議案	池大亨	1949. 7. 2	○					
4	4	유엔總會에 보내는 「멕 세이지」	池大亨	1949. 7.13	○					
4	4	美國大統領·蔣介石總統 및 比國大統領에게 보내는 「멕세이지」에 關한 決議案	任永信	1949. 7.14	○					
4	5	美國國會에 對韓經濟援 助案通過要請에 關한 決 議案	崔允東	1949. 10. 8	○					
5	5	旱害對策에 關한 決議案	李鎮洙	1949. 9.26	○					
5	5	飛行機獻納에 關한 決議案	陳憲植	1949. 10. 1	○					
5	5	金明東議員釋放要求에 關한 決議案	鄭潛	"	○					
5	5	騷亂地區의 民衆部落疎 開對策에 關한 決議案	趙憲泳	1949. 10. 8	○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 繼續因 廢棄
5	5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朴 贊 鉉	1949. 10.10	○					
5	5	美國大統領及上下院議長에게感謝文發送에 관한決議案	朴 湘 永	1949. 10.14	○					
5	5	五議員釋放要求에 관한決議案	鄭 潛	1949. 10.24	○					
5	5	懲戒資格委員會委員定數에 관한決議案	徐 禹 錫	1949. 10.29	○					
5	5	海軍部獨立에 관한決議案	池 大 亨	1949. 11. 2	○					
5	5	漢字使用에 관한決議案	任 永 信	1949. 11. 5	○					
5	5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李 聖 學	1949. 11. 9	○					
5	5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閔 庚 植	1949. 11.30	○					
5	5	國政監査에 관한計劃의件	徐 相 日	1949. 12. 2	○					
5	6	政府委員承諾取消에 관한決議案	產 業 委員長	1949. 12.22	○					
6	6	對韓經濟援助案通過要請「멧세이지」發送의件	李 勳 求	1950. 1.21	○					
6	6	美國에 國會議員派遣에 관한決議案	李 鍾 麟	1950. 1.26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6	6	對韓經濟援助案通過에 對한感謝「멧세이지」 發送的件	李鍾麟	1950. 2.10	○					
6	6	姜己文議員釋放要求에 關한決議案	金雄鎮	1950. 3. 8	○					
6	6	會期延期에關한決議案	李源弘	1950. 3.17	○					
6	6	公務員處遇改善對策에 關한決議案	公務員處 遇改善對 策委員長	1950. 3.22	○					
6	6	行政各部間의外廓團體 및厚生機關整備統合에 關한決議案	〃	〃	○					
6	6	對韓經濟援助案通過에 對한感謝「멧세이지」 發送的件	李鍾麟	1950. 4. 4	○					
6	6	訪美議員團歡待에關한 「멧세이지」發送的件	李鍾麟	1950. 4.17	○					
6	6	「마라톤」優勝에對한 感謝祝電發送的件	權泰義	1950. 4.20	○					
6	6	國務總理署理任命通知 返還에關한件	金壽善	1950. 4.21	○					
6	6	會期延期에關한決議案	鄭 濬	1950. 4.22	○					
2	2	南北平和統一에關한決 議案	金秉會	1949. 2. 7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3	3	國會議員釋放要求에 關한決議案	金用鉉	1949. 5.24		○				
3	3	會期延期에 關한決議案	金壽善	1949. 6.18		○				
4	4	會期延期에 關한決議案	李晶來	1949. 7.30		○				
6	6	地方治安實態調查及巡迴 補導講演에 關한決議案	李浩錫	1949. 12.22		○				
6	6	五月選舉推進에 關한決議案	趙憲泳	1950. 3.31		○				
1	1	南北統一對策特別委員 會設置에 關한決議案	成樂緒	1948. 8.13			○			
1	1	憲法第 63 條解釋에 關한決議案	權泰郁	1948. 9.15			○			
2	2	國會議員日本派遣에 關한決議案	金仁浞	1949. 3.16			○			
2	2	會期延期에 關한決議案	申性均	1949. 3.18			○			
3	3	反民族行爲處罰法執行 機關公務員資格審査에 關한決議案	徐禹錫	1949. 5.28			○			
3	3	言論政策에 關한決議案	盧鎰煥	1949. 6.6			○			
1	1	大統領特使友邦各國訪 問支持에 關한決議案	金秉會	1948. 9.8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因 廢 棄
1	1	外軍撤退要請에 관한決議案	朴鍾南	1948. 10.13					○	
5	5	豫算案審査에 관한決議案	洪煥種	1949. 11.14					○	
1		高級料亭等廢止法制定에 관한件	鄭 濬							○
1		貪官汚吏謀利輩處罰法制定의件	金明東							○
1		獨立運動者褒賞法制定의件	鄭 濬							○
1		革命愛國志士及遺家族接護優遇法決定에 관한委員會設置의件	趙重顯							○
1		議員懲戒에 관한決議案	鄭光好							○
1		敵產管理法制定에 관한件	金明東							○
2		常任委員會缺席委員懲戒에 관한決議案	徐相日							○
2		教育者에 對한感謝決議案	李鎮洙							○
5		糧穀政策樹立에 관한決議案	洪煥種							○
5		市內疎開地處理에 관한決議案	李 仁							○
6		政府保有米販賣價格에 관한決議案	徐成達							○

(7) 重要動議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廢棄	會期不繼續 因廢棄
第 1 回	26	22	1	1	2			
第 2 回	11	9					1	
第 3 回	4(1)	3					2	
第 4 回	3	3						
第 5 回	6	6						
第 6 回	13	13						
計	63	56	1	1	2		3	

※ 備考 : () 內의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發議者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廢棄	會期不繼續 因廢棄
1	1	鬱陵島漁船被襲事件對策의件	金長烈	1948. 6. 15	○						
1	1	「올림픽」大會派遣選手團에게 보내는 激勵文發送 및 歡送에 關한件	金用在	1948. 6. 16	○						
1	1	憲法草案을各議員이熟讀研究하기 위하여 6 月 26 日까지 休會의件	金長烈	1948. 6. 23	○						
1	1	故李僑先生 追悼에 關한件	李鎭洙	1948. 7. 14	○						
1	1	大統領과 副統領 選舉日 決定에 關한件	金度演	1948. 7. 17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否 決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因 廢 棄
1	1	大統領과 副統領選舉節 次에 關한 件	池 青 天	1948. 7. 17	○				
1	1	7月 21 日부터 26 日까지 休會의 件	鄭 濬	1948. 7. 20	○				
1	1	國務總理任命承認要請 書提出에 關한 件	尹 在 旭	1948. 7. 30	○				
1	1	故李東寧先生金九先生 大夫人遺骨還國에 對한 弔慰의 件	金 東 準	1948. 8. 17	○				
1	1	美駐屯司令官「하-지」 中將歸國餞送에 關한 節 次決定의 件	議 長	1948. 8. 25	○				
1	1	行政權移讓에 對한 經過 報告要請의 件	鄭 濬	1948. 8. 26	○				
1	1	國會內「빠라」撤布事件 背後關係調查要請의 件	李 錫 柱	1948. 9. 1	○				
1	1	유엔 總會代表派遣에 關한 大統領의 書翰廻送의 件	趙 憲 泳	1948. 9. 4	○				
1	1	內板驛交通事故로 因한 美軍人死傷者에 對한 弔 慰의 件	趙 漢 栢	1948. 9. 16	○				
1	1	故李東寧·車利錫兩先 烈葬禮式에 國會代表參 席의 件	申 性 均	1948. 9. 22	○				
1	1	韓美協定에 關한 國會決 議反對聲明을 發表한 議 員懲戒委員會廻付의 件	郭 尙 勳	1948. 9. 27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1	1	李文源議員懲戒委員會 再廻付의件	尹在旭	1948. 9.30	○				
1	1	反民族行爲處罰法第9 條에 依한 特別調查委員 會構成의件	金仁湜	1948. 9.29	○				
1	1	故曹成煥先生葬禮式에 國會代表參席의件	金沃周	1948. 10.12	○				
1	1	10月15日부터 20日間 休會의件	表鉉台	1948. 10.14	○				
1	1	全南反亂事件의眞相報 告要請의件	鄭 溶	1948. 10.27	○				
1	1	時局收拾對策을合議하 기 爲하여 國務委員出席 要請의件	陳憲植	1948. 11.5	○				
2	2	12月23日부터 翌年1月 10日까지 休會의件	金明東	1948. 12.21	○				
2	2	反民族行爲特別裁判官과 檢察官辭職書受理에 關한 件	趙禹錫	1949. 1.15	○				
2	2	白川警察署被襲事件調查 의件	金庚培	1949. 2.3	○				
2	2	監察委員會報告에 關한 特別調查委員會構成의件 (農林部長官非行)	權泰羲	1949. 2.4	○				
2	2	反民族行爲處罰法實施와 改正에 關한 大統領談話 取消에 關한 動議	鄭 溶	1949. 2.17	○				
2	2	故朴贊翊先生弔慰의件	金尙德	1949. 2.24	○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 議 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2	2	監察委員會報告에 關한 特別調查委員會構成의 件 (商工部長官非行)	朴允源	1949. 4.16	○					
2	2	反民族行爲特別檢察官辭 職願却下の 件	朴海楨	1949. 4.25	○					
2	2	對日交易調定同意與否의 法的解釋에 關한 動議	洪性夏	1949. 4.27	○					
3	3	開城事件負傷兵慰問團派 遣에 關한 件	趙鍾勝	1949. 5.27	○					
3	3	國會及反民族行爲特別調 查委員會襲擊示威事件對 策에 關한 動議	鄭 溶	1949. 6. 3	○					
2	3	國會議員毆打事件에 關한 調查의 件	鄭 溶	1949. 6. 1	○					
4	4	故白凡金九先生弔慰에 關 한 件	吳錫柱	1949. 7. 4	○					
4	4	유엔 委員團의 決議에 關한 調查의 件	陳憲植	1949. 7.12	○					
4	4	李儁烈士追悼式에 代表議 員派遣의 件	議 長	1949. 7.17	○					
5	5	時局打開策講究에 關한 件	李晶來	1949. 9.22	○					
5	5	麗順事件勃發一週年合同 慰靈祭慰問文送付의 件	黃斗淵	1949. 10.14	○					
5	5	在日同胞學校閉鎖에 關한 緊急動議	權泰羲	1949. 10.24	○					
5	5	서울 師範大學副教授張亨 斗變死事件調查의 件	申鉉謨	1949. 10.26	○					

不 會 期 因 廢 棄	會 期 不 繼 續	保 留	撤 回	廢 棄	否 決	可 決	議 決 年 月 日	發 議 者	名 稱	件 名
	5						1949.11.7	郭尙勳	送品慰問	軍警에 대한 慰問品送品의件
	5						1949.11.26	金雄鎮	調查	辯護士俞東滯變死事件調查의件
	6						1949.12.21	朴順碩	休會	12月23日부터 20日間休會의件
	6						1949.12.21	李鎮洙	請要	유엔總會經過報告要請의件
	6						1950.1.16	郭尙勳	動議	懲戒資格委員補選에 관한 動議
	6						1950.2.1	吳宅烈	派遣	慶北盈德事件調查班派遣에 관한 件
	6						"	金益魯	派遣	叛亂地區調查班派遣의件 (慶北迎日·永川)
	6						1950.2.2	議長	發送	「大韓民國紀念日」設定에 대한 感謝文發送의件
	6						1950.2.15	金鳳祚	調查	慶北青松事件調查의件
	6						1950.2.23	金相敦	動議	三·一節慶祝行事에 관한 動議
	6						1950.3.22	李在鶴	動議	公務員處遇改善에 관한 緊急動議
	6						1950.4.8	鄭光好	動議	國務總理早速任命에 관한 動議
	6						1950.4.12	金相敦	調查	大韓政治工作隊事件調查의件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否決	廢 棄	撤 回	保 留	會 期 不 續 因 廢 棄	不 續 因 廢 棄
6 ES.9.8	6	信託銀行不正貸付事件調查의件	張炳晚	1950. 9.16	○				1	1
6	6	4月25일부터 8月10일까지 休會의件	柳聖甲	1950. 4.22	○					
1	1	郭尙勳議員懲戒에 關한 件	趙玉鉉	1948. 12.10		○				
1	1	憲法の 議決은 在籍議員 3分之2 以上の 贊成으로 決定할 것의 緊急動議	李文源	1948. 7.3		○				
1	1	三南地方風水害真相調查團派遣의件	李周衡	1948. 9.23			○			
1	1	國家保安法案廢棄에 關한 動議	金沃周	1948. 11.16			○			
2	2	朴峻議員懲戒에 關한 動議	鄭 裕						○	
3	3	金俊淵議員除名에 關한 動議	李鎮洙						○	
3	3	首都警察行動調查에 關한 件	鄭 裕						○	
ES.9.8		○ 開日 5) 議院會 官 議 區 (議 院)	ES.9.8	議決 區 官 氏					1	1

(8) 議員懲戒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備 考
1	1	議員(李文源) 懲戒에關한件	郭尙勳	48.9.27	○ (公開會 議場에서 謝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9.23 「韓美協定에 관한國會決議反對聲明을發表한議員懲戒委員會廻付의件」可決 ◦ 48.9.27 懲戒委員會審查報告 ◦ 同日會議에서公開謝過토록 하였으나 不應
1	1	議員(李文源) 懲戒에關한件	尹在旭	48.9.30	○ (7日間 本會議場 에서發言 停止)			◦ 48.9.27 「李文源議員懲戒委員會再廻付의件」可決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會期不繼 續○로因 한廢棄	備 考
								◦ 48.9.30 懲戒委員會 再審査報告
1	1	議員(郭尙勳)懲戒에 關한件	趙玉鉉	48.12.10		○		◦ 48.11.19 「議員(郭尙 勳)懲戒에關 한件」이國會 法에 의거懲 戒資格委員 會에廻付됨. ◦ 48.12.10 懲戒資格委 員會 審査 報告
2		朴峻議員懲戒에關한件	鄭 潯				○	◦ 49.3.22 「議員(朴峻) 懲戒에 關한 件」이國會法 에 의거懲戒資 格委員會에廻 付됨. ◦ 49.4.1 懲戒資格委員 會에서審査한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發議者	議決 年月日	可 決	否 決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備 考
								事項이아니 라는理由로 (國會法第96 條第32項)本 會議에還附함
3		金俊淵議員除名에關한 動議	李鎮洙				○	○ 49.5.28 「議員(金俊 淵)除名에 關한緊急動 議案」에대하 여「議員除名 에關한動議는 懲戒資格委員 會에隨付하여 審査報告키로 修正可決되어 懲戒資格委員 會에隨付됨.

※ 備考 : (8)議員懲戒는 (7)重要動議中에서 懲戒動議만 별도로 拔萃
揭載하였음.

나. 國政監査와 事件調查報告

會期別	第 1 回	第 2 回	第 3 回	第 4 回	第 5 回	第 6 回	計
件 數	2	4	3	1	4	5	19

提出 會期	報告 處理 會 期	件 名	報告 또는 處理 年月日	件數
1	1	首都廳拷問致死事件調查報告의件	1948. 8. 3	1
1	1	檀民黨事件調查報告의件	1948.12.11	1
2	2	反民族行爲處罰法第 5 條該當者調查報告의件	1949. 1.22	1
2	2	叛亂地區宣慰班報告와 對策講究의件	1949. 1.27	1
2	2	白川警察署被襲事件 및 38 線地區調查報告의件	1949. 2. 8	1
2	2	監察委員會의 通告(農林部長官의 非行)調查報告의件	1949. 2.16	1
2	3	監察委員會의 報告(商工部長官의 非行)에 關한件	1949. 6. 3	1
3	3	靈津地區 38 線事件真相報告의件	1949. 6.13	1
3	3	國會議員毆打事件調查報告의件	1949. 6.18	1
4	4	유엔 委員團의 決議에 關한調查報告의件	1949. 7. 3	1
5	5	平海號沈沒事件調查報告의件	1949.10.13	1
5	5	辯護士俞東潛變死事件調查報告의件	1949.11.26	1
5	5	서울師範大學副教授張亨斗變死事件調查報告의件	1949.11.12	1

提出 會期	報告 또는 處理 會期	件 名	報告 또는 處理 年月日	件數
5	5	江華郡喬洞面被殺事件調查報告의件	1949.11.30	1
6	6	慶北盈德事件調查報告의件	1950. 2. 1	1
6	6	慶北迎日·永川事件調查報告의件	1950. 2.15	1
6	6	慶北青松·英陽事件調查報告의件	"	1
6	6	大韓政治工作隊調查報告의件	1950. 4.18	1
6	6	信託銀行不正貸付事件調查報告의件	"	1

다. 選舉와 任命承認

(1) 選舉

會 期	第 1 回	第 2 回	第 3 回	第 4 回	第 5 回	第 6 回	計
件 數	44	4	14	18		20	100

會期別	件 名	選舉年月日	選舉件數
1	議長·副議長選舉 (議長:李承晚) (副議長:申翼熙) " :金東元)	1948. 5.31	3
1	選舉審查委員選舉	1948. 6.14	2
1	大統領·副統領選舉 (大統領:李承晚) (副統領:李始榮)	1948. 7.20	2
1	議長·副議長補闕選舉 (議長:申翼熙) (副議長:金若水)	1948. 8. 4	2
1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選舉	1948.10.11 1948.10.12	8 2
1	反民族行爲特別裁判官斗特別檢察官選舉	1948.11.30 1948.12. 7	10 13
1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部長斗檢察官長選舉	1948.12. 4	2
2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特別裁判官斗特別檢察官補闕選舉	1949. 2.12	4
3	反民族行爲特別裁判官補闕選舉	1949. 6. 3	2
3	大韓赤十字社組織委員指名에 關한件	1949. 6.13	12
4	副議長補闕選舉 (副議長:尹致暎)	1949. 7. 4	1
4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補闕選舉	1949. 7. 7	10
4	反民族行爲特別裁判官斗檢察官補闕選舉	1949. 7. 8	5

會期別	件名	選舉年月日	選舉件數
4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補闕選舉	1949. 7.14	1
4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部長裁判官補闕選舉	1949. 8. 2	1
6	憲法委員會委員及豫備委員選舉	1950. 3. 7	10
6	彈劾裁判所審判官及豫備審判官選舉	"	10

(2) 任命承認

會期	承認件數	不承認件數	計	備考
第 1 回	3	1	4	
第 2 回	12	3	15	
第 4 回	1		1	
第 6 回		1	1	
計	16	5	21	

會期別	件名	承認年月日	承認	不承認
1	國會事務總長(全奎弘)任命承認の件	1948. 6.17	1	
1	國務總理(李允榮)任命承認の件	1948. 7.27		1
1	國務總理(李範奭)任命承認の件	1948. 8. 2	1	
1	大法院長(金炳魯)任命承認の件	1948. 8. 5	1	
2	反民族行爲調查委員會道調查部責任者承認の件	1949. 1.12	11	3
2	國會事務總長(李哲源)任命承認の件	"	1	
4	國會事務總長(李淙銑)任命承認の件	1949. 7.12	1	
6	國務總理(李允榮)任命承認の件	1950. 4. 6		1

라. 請願提出 및 處理

區分 會期別	提出數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第 1 回	19	9	3	1		4	1
第 2 回	95(1)	7	1			66	
第 3 回	14(22)					3	
第 4 回	17(33)	5				13	
第 5 回	27(32)	1			5	7	
第 6 回	54(46)	7	1	4	3	13	72
計	226	29	5	5	8	106	73

※ 備考 : () 內의 숫자는 前會期로부터 繼續審査하게 된 件數임.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1	1	雅樂部國營에 關한 請願	1					
1	1	對日 強制勞務者 未濟貨金 債務履行 要求에 關한 請願	1					
1	1	對日 靑壯年 死亡 賠償金 要求에 關한 請願	1					
1	1	樺太·千島 在留 同胞 還國 運動에 關한 請願	1					
1	1	成人 教育 強化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付議하기로 決定한것			本會議에付議치않기로 決定한것		會期不繼續으로因한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移送	廢棄	
1	1	世和財團斗藥學大學復舊에 관한請願	1					
1	1	限地醫師制度廢棄에 관한請願	1					
1	1	土地改良事業에 관한請願	1					
1	1	水利組合事業繼續及水害復舊에 관한請願	1					
1	2	全羅南道高興郡行政區域과警察署管轄區域一致에 관한請願	1					
2	2	保健部獨立에 관한請願	1					
2	2	忠清南道禮山郡無限橋工事に 관한請願	1					
2	2	國民大學에 관한請願	1					
2	2	서울藥學大學의國立移管에 관한請願	1					
2	2	淑明學園財團再建에 관한請願	1					
2	2	殉國烈士故南慈賢女史表彰에 관한請願	1					
2	4	晉三鐵道工事繼續促進에 관한請願	1					
3	4	光晉線鐵道復舊및그의金地까지延長線敷設促進에 관한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4	4	北三化學工事工場補修 및 增築에 關한 請願	1					
4	4	忠州線延長에 關한 請願	1					
4	4	慶北線復舊施設工事に 關한 請願	1					
3	5	歸屬農地返還에 關한 請願	1					
6	6	水險里까지 電車線敷設에 關한 請願	1					
6	6	彌阿里共同墓地移轉에 關한 請願	1					
6	6	光州·全州高等法院同檢察廳設置에 關한 請願	2					
6	6	農地改良事業資金融資에 關한 請願	1					
6	6	竹嶺鐵道事故遺家族慰籍에 關한 請願	1					
6	6	工科大學校舍移轉에 關한 請願	1					
1	1	外國醫師免許證所持有者에 對國內醫師免許證交換에 關한 請願		1				
1	1	戰罹災民救護事業에 關한 請願		1				
1	1	山林行政機構組織에 關한 請願		1				
2	2	甕津地方國軍駐屯에 關한 請願		1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付議하 기로 決定한것			本會議에付 議치않기로 決定한것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採擇	廢棄	未 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6	6	李儁烈士靈骨奉還安葬에 關한請願		1				
1	1	反共敎國總蹶起國民大會 의眞相調査에 關한請願			1			
6	6	國會議員釋放에 關한請願			1			
6	6	忠州水力發電施設促進에 關한請願			1			
6	6	錦江水力發電에 關한請願			1			
6	6	忠州發電工事計劃中止에 關한請願			1			
3	5	朝鮮「베아링」工場支配人 柳炳善의非行에 關한件				1		
4	5	江陵郡風水災農地及堤防 復舊에 關한請願				1		
4	5	高陽郡松浦中面灌溉路擴 張에 關한請願				1		
5	5	海美水利組合設置에 關한 請願				1		
5	5	殉職公務員弔慰에 關한 請願				1		
4	6	看護事業에 從事하는專門 技術者待遇問題에 關한 請願				1		
6	6	江華·金浦間鐵橋架設에 關한請願				1		
6	6	戰災民假建築物撤去에 關 한請願				1		

提出 會期	處理 會期	件 名	本會議에付議하 기로 決定한것			本會議에付 議치않기로 決定한것		會期不繼 續。로因 한廢棄
			採擇	廢棄	未 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1	1	糧穀供出廢止에 關한請願					1	
1	1	穀物徵收制創設即時施行 에 關한請願					1	
1	1	錦江水電用地處理에 關한 請願					1	
1	1	糧穀買入과食糧營團等團 體廢合에 關한請願					1	
2	2	京畿女子中學校校舍使用 에 關한請願					1	
2	2	憲法改正에 關한請願					1	
2	2	忠清北道知事尹河英事件 에 關한請願					1	
2	2	對日賠償要求에 關한請願					1	
2	2	土地改革에 關한請願					5	
2	2	時局收拾對策에 關한請願					1	
2	2	官紀肅正에 關한請願					1	
2	2	大韓青年團及警察官吏不 法行爲是正에 關한請願					1	
2	2	外資管理院所管荷役に 關 한請願					1	
2	2	建設의 날決定에 關한請願					1	
2	2	達川江及漢江橋架橋에 關 한請願					1	
2	2	農產物檢査所廢止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付議하기로 決定한것			本會議에付議치않기로 決定한것		會期不繼續으로因한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移送	廢棄	
2	2	肥料政策에關한請願					1	
2	2	禮唐水利組合에關한請願					1	
2	2	外國肥料輸入計劃에關한請願					1	
2	2	鄉校財產에關한請願					43	
2	2	驪山祠에關한請願					1	
2	2	靑里祠財產에關한請願					1	
2	2	戶籍令改正에關한請願					1	
2	2	河東郡內治安에關한請願					1	
2	3	長項港에關한請願					1	
3	3	外肥取扱代行機關에關한請願					1	
3	3	辯護士試驗延期에關한請願					1	
2	4	歸屬林野濫伐防止에關한請願					1	
2	4	元光州鄉校所有地還付使用에關한請願					1	
2	4	光州鄉校失地恢復에關한請願					1	
2	4	住宅營團家賃引上反對에關한請願					1	
3	4	錦江漁業에關한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付議하기로 決定한것			本會議에付議치않기로 決定한것		會期不繼續으로因한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移送	廢棄	
3	4	學徒護國團에 關한請願					1	
2	4	國民會全國幹部大會에서 行한大統領談話의件					1	
3	4	大邱時報에 關한請願					1	
4	4	鷺梁津國民學校校舍問題에 關한請願					1	
4	4	飲食店業者에 關한請願					1	
4	4	旅館業者에 對한遊興飲食稅撤廢에 關한請願					1	
4	4	厚生福票發行法修正에 關한請願					1	
4	4	서울市中央貫通개천渡川工事實行에 關한請願					1	
2	5	歸屬財產處理法案修正에 關한請願					2	
3	5	官典文書를是正하는請願					1	
4	5	農地改革法中改正에 關한請願					1	
4	5	慶北國防協會費徵收에 關한請願					1	
5	5	歸屬財產運營處理法案採擇에 關한請願					1	
5	5	德成學園校舍에 關한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2	6	大韓勞總에 關한 請願					1	
5	6	潛水器業에 關한 請願					1	
5	6	漁業法制定에 關한 請願					1	
5	6	漁業法案改正에 關한 請願					1	
5	6	晋州培英國民學校校舍明渡에 關한 請願					1	
5	6	佛教中央總務院事件에 關한 請願					1	
5	6	和光國民學校事件에 關한 請願					1	
5	6	木浦港과 三鶴島 船車連絡及 港灣修築에 關한 請願					1	
6	6	潛水器業者定限數에 關한 請願					1	
6	6	歸屬財產處理에 關한 請願					2	
6	6	春川市場 및 春城郡食糧對策에 關한 請願					1	
6	6	法院組織法·檢察廳法改定에 關한 請願					1	
1	1	自動車輸入生産其他對策에 關한 請願						1
2	6	成人教育令制定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2	6	漁業法에 關한 請願						1
2	6	國家經濟政策基本方針及失業者對策에 關한 請願						1
2	6	協同組合設立에 關한 請願						2
2	6	鑛山開發臨時措置法制定에 關한 請願						1
2	6	自動車輸入生産其他對策에 關한 請願						1
2	6	簡易法院判事資格의 地方法院判事任命資格賦與에 關한 請願						1
2	6	官營企業下部從事員의 一般勞働者待遇에 關한 請願						1
2	6	海員의 非公務員取扱에 關한 請願						1
2	6	大韓國民共濟會設置에 關한 請願						1
2	6	絹絲工場設置費融資에 關한 請願						1
3	6	協同組合法制定에 關한 請願						2
3	6	教育者待遇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 續으로 因 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3	6	釜山府를 特別市로 昇格하 는 法律制定 實施에 關한 請願						1
3	6	陸軍中尉 金東鉉 事件 糾明 에 關한 請願						1
4	6	夜間大學制 實施에 關한 請願						1
4	6	敎職員 待遇 改善에 關한 請願						1
4	6	劇場 入場稅 廢止에 關한 請願						1
4	6	官三面 農地에 關한 請願						1
5	6	中央都賣市場法 制定에 關 한 請願						2
5	6	中央都賣市場法 廢止에 關 한 請願						1
5	6	中小炭鑛業者에 關한 請願						1
5	6	檀紀 4283 年度 藥工品 買上 資金融資에 關한 請願						1
5	6	朝鮮鑄造株式會社 管理人 의 不正管理 行爲 處斷에 關 한 請願						1
5	6	農地改良事業에 對한 起債 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付議치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因한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移送	廢棄	
5	6	忠州發電工事計劃中止에 關한請願						1
5	6	部落疎開에 關한請願						1
5	6	晉州女子蠶絲學校經營費 國庫補助에 關한請願						1
5	6	教育者優待에 關한請願						1
5	6	齒科醫師名稱改正에 關한請願						1
5	6	崔天釋放에 關한請願						1
5	6	武器貸付에 關한請願						1
5	6	豫備軍完全武裝에 關한請願						1
5	6	原州郡內水利工事に 關한請願						1
6	6	舊食糧公社資本運營에 關한請願						1
6	6	서울高等家政學校校舍拂 下에 關한請願						1
6	6	漢方醫及漢醫學育成에 關한請願						1
6	6	寄附統制法修正에 關한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 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 未 決定한 것		會期不繼續으로 廢棄한 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6	6	生고우配給方法是正에 關한 請願						1
6	6	東洋製糸紡織會社管理人 朴奉守非行에 關한 請願						1
6	6	癩病患者收容所設置에 關한 請願						1
6	6	新聞및 定期刊行物法案撤回에 關한 請願						1
6	6	潛水漁業水產組合設置에 關한 請願						1
6	6	忠南中小炭鑛國營에 關한 請願						1
6	6	全南罹災民救護費國庫補助에 關한 請願						1
6	6	富平糧穀配給에 關한 請願						1
6	6	遠洋漁業에 關한 請願						1
6	6	馬山漁市場市營에 關한 請願						1
6	6	濟州道水產에 關한 請願						1
6	6	草島漁港施設補助에 關한 請願						1
6	6	高嶺土鑛盜掘停止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 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 付議치 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 續으로 因 한 廢棄
			採擇	廢棄	未 上程	參考로 移送	廢棄	
6	6	小作權奪還에 關한 請願						1
6	6	敵産白雲莊明渡에 關한 請願						1
6	6	蒲草栽培利用獎勵에 關한 請願						1
6	6	電氣事業國營에 關한 請願						1
6	6	李우家所有財産保護에 關한 請願						1
6	6	水産廳設置에 關한 請願						1
6	6	德成學園校舍所有權確立에 關한 請願						1
6	6	全州地方專賣局長水支局移轉에 關한 請願						1
6	6	國産綿獎勵에 關한 請願						1
6	6	元朝鮮勤勞者援護會清算에 關한 請願						1
6	6	干潟地埋築工事に 關한 請願						1
6	6	寒泉水利工事促進에 關한 請願						1

提出會期	處理會期	件名	本會議에付議하기로 決定한 것			本會議에付議치않기로 決定한 것		會期不繼 續으로因 한廢棄
			採擇	廢棄	未上程	參考로移送	廢棄	
6	6	全南道谷川護岸工事に關한請願						1
6	6	區長咸乘相非行에關한請願						1
6	6	水産廳設置에關한請願						1
6	6	普光洞戰災民部落施設에關한請願						1
6	6	全北癩病患者收容所移轉에關한請願						1
6	6	三角地·乙支路六街間電車線敷設에關한請願						1

5. 演 說

◎ 演說一覽

區分 \ 件名	大統領施政方針演說	外資演說
回數	1	7
演說者數	1	7

가. 大統領施政方針演說

會期別	大 統 領	演說年月日
第 1 回	李 承 晚	1948. 9. 30

나. 外資演說

會期別	職 位	姓 名	演說年月日
第 1 回	南韓駐屯美軍司令官	존 . 알 . 하 - 지 (John R. Hodge)	1948. 5.31
第 1 回	國際聯合臨時韓國委員團議長	미켈 . 바에 (M. A. P. Valle)	1948. 6.30
第 2 回	國際聯合韓國委員團濠洲代表	아-더 . 비 . 제미슨 (Arthur B. Jamieson)	1949. 2.23
第 5 回	美合衆國上院議員	윌리엄 . 에후 . 노 - 랜드 (William F. Knowland)	1949. 11.17
第 5 回	美合衆國下院議員團團長	윌리엄 . 에후 . 노 - 렐 (William F. Norrell)	1949. 11.21
第 5 回	美合衆國上院議員	에런 . 제이 . 에런더 (Allen J. Ellender)	1949. 12. 3
第 6 回	美合衆國大統領特使	필립 . 씨 . 제설 (Phillip C. Jessup)	1950. 1.12

6. 質問과 答辯

가. 緊急質問과 答辯

會 期	第 1 回	第 2 回	第 3 回	第 4 回	第 5 回	第 6 回	計
質問件數	13	16	4	2	8	17	60
答辯件數	11	16	4	2	8	16	57

提出會期	件 名	發議者	要旨說明 年 月 日	答 辯 年 月 日	答 辯 者
1	行政權移讓經過에 關한 緊急 質問	趙漢栢	1948. 9. 3		
1	大統領特使에 關한 新聞報道 의件 緊急質問	趙漢栢	1948. 9. 6	1948. 9. 6	國務總理 內務部長官 外務部長官
1	國會內的「씨라」撤布事件 真相에 關한 緊急質問	李錫柱	1948. 9. 9		
1	內板驛鐵道事故에 關한 緊急 質問	劉鎮洪	1948. 9.22	1948. 9.22	交通部長官
1	反民族行爲 嫌疑者警察首腦 部登用에 關한 緊急質問	朴湘永	1948. 9.23	1948. 9.23	內務部長官
1	反共救國總蹶起國民大會眞 相에 關한 緊急質問	盧鎰煥	"	1948. 9.24 9.27	內務部長官 內務部次官
1	黃斗淵議員身邊에 關한 緊急 質問	金秉會	1948. 11. 1	1948. 11. 2 11.15	內務·法務 部長官 公報處長 國防部次官
1	國會議員의 言論과 身邊保障 에 關한 緊急質問	張洪瑛	1948. 11.13	1948. 11.15	內務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 議 者	要旨說明 年 月 日	答 辯 年 月 日	答 辯 者
1	國會冒瀆記事에關한緊急質問	尹炳求	1948. 11.17	1948. 11.29	公報處長
1	乾海苔對日輸出과物資斡旋 에關한緊急質問	金仁湜	1948. 11.29	"	外務・財務・ 商工部長官
1	韓國問題가國際的으로複雜 微妙한感은느낌으로今後對 策에關한緊急質問	崔雲教	1948. 12. 1	1948. 12. 3	外務部長官
1	叛亂地區宣撫工作에關한緊 急質問	吉國鉉	1948. 12. 6	1948. 12. 8	國防部長官 國防部次官
1	人權保障에關한緊急質問	金俊淵	1948. 12.11	1948. 12.13	內務部長官
2	國會議員家宅檢索에關한緊 急質問	李錫柱	1948. 12.21	1948. 12.22	內務・法務 部長官
2	國會議員補闕選舉에關한緊 急質問	徐禹錫	1949. 1.17	1949. 1.18	國會選舉 委員長
2	青年團員拉致事件에關한緊 急質問	金永東	1949. 1.19	1949. 1.20	參謀總長 代理
2	大韓觀察府에關한緊急質問	裴重赫	1949. 1.20	1949. 1.21	國務總理 內務・法務 部長官
2	盧德述隱匿事件에關한緊急 質問	金沃周	1949. 1.27	1949. 2. 1	內務部次官
2	監察委員會通告(農林部長 官非行)에關한緊急質問	金沃周	1949. 2. 2	1949. 2. 2 2. 3	監察委員長 農林部長官
2	白川警察署被襲事件에關한 緊急質問	金庚培	1949. 2. 3	1949. 2. 4	國防部次官
2	木浦選舉區補闕選舉에關한 緊急質問	朴允源	1949. 2.10	1949. 2.11	國會選舉 委員長

提出會期	件名	發議者	要旨說明 年月日	答辯 年月日	答辯者
2	反民族行爲處罰法實施에關한緊急質問	姜旭中	1949. 2.15	1949. 2.15	國務總理 商工部長官 總務處長 公報處長
2	유에韓國委員團情報官談話에關한緊急質問	尹致暎	1949. 2.28	1949. 3.2	外務部長官
2	國會議員乘車券에關한緊急質問	朴允源	1949. 3.2	1949. 3.3	交通部長官
2	春作肥料問題에關한緊急質問	趙漢栢	1949. 3.14	1949. 3.15	農林·交通 部長官
2	叛亂事態收拾에關한緊急質問	朴海克	1949. 3.15	"	內務部次官
2	外交政策에關한緊急質問	尹致暎	"	1949 3.18	外務部長官
2	大韓監察府橫領事件木浦補選詐欺開票事件및忠南事件에關한緊急質問	柳聖甲	1949. 4.2	1949 4.2	法務部長官
2	交通遮斷과軍警非行에關한緊急質問	李源弘	1949. 4.20	1949. 4.21	內務·國防 部長官
3	國軍司令官이國會議員에對한談話에關한緊急質問	金奉斗	1949. 4.21	"	國防部長官
3	肥料配給에關한緊急質問	李勳求	1949. 5.24	1949. 5.25	國務總理 農林部長官
3	言論彈壓에關한緊急質問	金英基	1949. 6.2	1949. 6.4	公報處次長
3	反民族行爲處罰機關에對한警察의行動에關한緊急質問	姜旭中	1949. 6.6	1949. 6.6	國務總理 內務部次官 檢察總長
4	夏穀買上에關한緊急質問	黃斗淵	1949. 7.19	1949. 7.19	農林部次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要旨說明 年 月 日	答 辯 年 月 日	答 辯 者
4	確定된法律未公布에 關한緊急質問	李周衡	1949. 7.19	1949. 7.20 7.21	國務總理
5	地方實情報告와 質問	李晶來	1949. 9.28	1949. 9.28	國務總理 國防部長官 內務部長官
5	木浦刑務所脫獄事件 및 高東大門民保團長變死事件에 關한緊急質問	曹國鉉	1949. 10.4	1949. 10.4 10.5	內務・國防 法務部長官
5	竹嶺隧道事件 및 平海號沈沒事件에 關한緊急質問	李鎭洙	1949. 10.14	1949. 10.14	交通・內務・ 國防・財務 部長官
5	大統領의 書翰內容에 關한緊急質問	徐禹錫	1949. 10.27	1949. 10.28	大統領
5	陶磁器密輸入에 關한緊急質問	趙憲泳	1949. 10.31	1949. 11.1	商工・財務 部長官
5	米穀政策에 關한緊急質問	徐禹錫	1949. 11.1	"	農林部長官
5	旱害救濟對策에 關한緊急質問	李載濬	1949. 11.2	1949. 11.2	農林・財務 社會部長官 企劃處長
5	國都新聞에 報道된陶磁器事件에 關한緊急質問	趙漢栢	1949. 11.19	1949. 11.19	公報處長 商工部次官 檢察廳長
6	米穀政策과 糧穀買上에 關한緊急質問	金相敦	1950. 1.13	1950. 1.13 1.14	農林部長官
6	在日同胞日人取扱에 關한緊急質問	李晶來	1950. 1.24	1950. 1.24	外務部次官
6	寄附統制法運用에 關한緊急質問	李榮俊	"	"	內務・文教 部次官
6	國政監査拒否에 關한緊急質問	徐禹錫	1950. 1.21	1950. 1.21	法務部次官 檢察總長

提出會期	件名	發議者	要旨說明 年 月 日	答 辦 年 月 日	答 辯 者
6	農會費徵收及補償物資配給에 關한 緊急 質問	權炳魯	1950. 2.11	1950. 2.11	農林部次官
6	保導聯盟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緊急 質問	閔庚植	"	"	內務·法務 部次官
6	改憲反對國民大會의 議場內「叱라」撒布에 關한 緊急 質問	郭尙勳	1950. 2.18	1950. 2.18	內務部長官
6	國政監査結果에 關한 緊急 質問	議 長	1950. 3. 2	1950. 3. 2 3. 4	各部處長官
6	改憲反對의 公報處長談話에 關한 緊急 質問	郭尙勳	"	1950. 3. 2	公報處長
6	改憲反對運動指示에 關한 緊急 質問	"	1950. 3. 3	1950. 3. 4	內務部長官
6	選舉日과 選舉運動에 關한 緊急 質問	徐馬錫	1950. 3.15	1950. 3.15	"
6	肥料價格引上에 關한 緊急 質問	鄭 濬	1950. 3.28	1950. 3.28	農林·財務 部長官
6	工科大學校舍明渡에 關한 緊急 質問	權泰羲	1950. 4. 8	1950. 4.11	文教部次官
6	米價對策에 關한 緊急 質問	金相敦	1950. 4.11	1950. 4.13	農林·財務 部長官
6	大韓工作隊事件에 關한 緊急 質問	"	1950. 4.20	1950. 4.20	內務·國防 法務部長官 檢察次長 治安局長署理
6	信託銀行의 不正貸付에 關한 緊急 質問	張炳晚	1950. 4.13		
6	國會議員選舉法公布에 關한 緊急 質問	李 仁	1950. 4.19	1950. 4.19	法制處長 內務部次官

나. 質問과 答辯

會 期		第 1 回	第 2 回	第 3 回	第 4 回	第 5 回	第 6 回	計
質 問 件 數			8	1		5	7	21
答 辯 件 數	書 面		2	1		5	7	15
	口 頭		5					5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 出 年月日	答 辯		
				年月日	書 面	口 頭
2	募兵과軍紀에 關한 質問	李載滢	1949. 1.17	1949. 1.25		國防部次官
2	協同組合法案에 關한 質問	崔雲教	1949. 1.29	1949. 2.18		農林部長官
2	糧穀買上에 關聯된 事項에 關한 質問	朴湘永	1949. 2. 2	"		農林·財務部長官
2	大韓觀察府에 關한 質問	金雄鎭	1949. 3. 2	1949. 3. 5		內務·法務部長官·企劃處長
2	反民族行爲處罰法第 5 條實施에 關한 質問	朴瓚鉉	1949. 3. 8			
2	援助物資에 關한 質問	鄭 濬	1949. 3.12	1949. 3.24	企劃處長	
2	衣料需給狀況에 關한 質問	崔雲教	1949. 4.25	1949. 4.25	國務總理	
2	對日貿易協定에 關한 質問	李在鶴	"	1949. 4.27		商工·財務·外務部長官

提出 會期	件 名	發議者	提 出		答 辦	
			年月日	年月日	書 面	口 頭
3	一般公務員法에 關한 質 問	鄭 濬	1949. 5.30	1949. 7.19	國務總理	
5	「맥아더」線에 對한 施 策 韓日 通商 및 叛亂 地 對 策에 關한 質問	姜己文	1949. 7.14	1949. 9.17	''	
5	揮發油 消費에 關한 質問	權泰義	1949. 10.10	1949. 11.30	''	
5	文教政策에 關한 質問	鄭 濬	''	1949. 10.25	''	
5	鹽政에 關한 質問	洪吉善	1949. 11. 2	1949. 12.30	''	
5	中央農業技術院 成歡畜 產支院의 乳牛 移殖에 關한 質問	李相敦	1949. 11.25	1950. 1. 6	''	
6	旱害地 罹災 農家 食糧 特 配에 關한 質問	''	1950. 1.26	1950. 2.25	''	
6	水產團體의 役·職員任 免에 關한 質問	陳憲植	1950. 1.27	1950. 2. 7	''	
6	肥料價格 引上 肥料券 및 山林 稜等에 關한 質問	申光均	1950. 2. 3	1950. 3.15	''	
6	産業 5 個年計劃에 關한 質問	姜善明	1950. 2. 4	1950. 2.23	''	
6	農地改革에 關한 質問	崔雲教	1950. 2. 7	1950. 2.15	''	
6	地方自治法 實施에 關한 質問	''	''	1950. 2.16	''	
6	旱害對策에 關한 質問	金用在	1950. 2.21	1950. 3. 9	''	

7. 國會運營

制憲國會中 本會議의 運營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 1 回國會(臨時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5. 31 (月)	第 1 次	1. 國會選舉委員長人事의件 2. 臨時議長推薦의件 3. 國會臨時準則決議의件 4. 議長·副議長選舉 5. 議長·副議長就任人事	開院式
1948. 6. 1 (火)	第 2 次	1. 公函接受 및 유엔 其他 重要機關에 發送할 「옛 세 - 지」 起草委員選定의件 2. 國會臨時準則決議의件 3. 議事進行에 關한件 4. 憲法 및 政府組織法·國會法·國會規則起草委員選出의件 5. 議事進行에 關한件 6. 憲法 및 政府組織法·國會法·國會規則起草委員選出의件 (繼續)	

年.月.日	次 數	案 件	備 考
		7. 憲法및政府組織法·國會法· 國會規則起草委員選出에關한 銓衡委員報告	
1948. 6. 2 (木)	第3次	1. 報告事項 2. 交際委員및連絡委員·通信委 員選出의件 3. 電力對策樹立의件 4. 交際委員및連絡委員·通信委 員選出의件(繼續) 5. 議事進行에關한件 6. 憲法等起草委員選出에關한銓 衡委員中間報告 7. 書翰作成委員의報告 8. 夏穀收集中止에關한件 9. 國會豫算報告의件 10. 夏穀收集中止에關한件 11. 憲法等起草委員選任報告의件	
1948. 6. 3 (木)	第4次	1. 銓衡委員報告에關한件 2. 休會에關한件	
1948. 6. 8 (火)	第5次	1. 書翰發送에關한報告 2. 國會議員宿所問題에對한報告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國會法及國會規則起草委員會報告의件	
1948. 6. 9 (水)	第 6 次	1. 國會議員身分에對한記事處理의件 2. 國會法案(第一讀會)	
1948. 6. 10 (木)	第 7 次	1. 交涉委員의報告 2. 國會法案(第一讀會) 3. 憲法制定時까지의法律公布의件	
1948. 6. 11 (金)	第 8 次	1. 國際聯合朝鮮委員團및北韓同胞에게보내는「옛세 - 지」發送의件 2. UN朝鮮臨時委員團과韓國交涉委員에關한件 3. 濟州道騷擾事件善處를爲한特別委員團設置에關한件 4. 常任委員及特別委員選舉에關한件	
1948. 6. 12 (土)	第 9 次	1. 北韓同胞에게보내는「옛세 - 지」에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常任委員選出에關한件	
1948. 6.14 (月)	第 10 次	1. 銓衡委員의常任委員選定에關한報告 2. 選舉審査委員選定에關한件	
1948. 6.15 (火)	第 11 次	1. 銓衡委員의常任委員選定에關한報告 2. 鬱陵島漁船被襲의件 3. 農民에게對한意思表示에關한件	
1948. 6.16 (水)	第 12 次	1. 連絡委員의報告 2. 憲法等參考資料油印配付에關한件 3. 「오림픽」大會派遣選手團에보내는激勵文發送및歡送에關한件 4. 銓衡委員의常任委員選定에關한報告 5. 美國大統領「트루만」氏에게感謝電文發送의件	
1948. 6.17 (木)	第 13 次	1. 事務總長任命承認에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事務總長就任人事 3. 常任委員選定에關한報告 4. 發言取消에關한件	
1948. 6.18 (金)	第 14 次	1. 國會議員의通行에對한乘車券 에關한件 2. 「오림픽」選手團歡送및激勵 文通過 3. 全院委員長選出및常任委員會 組織에關한件 4. 憲法起草委員會의中間報告	
1948. 6.19 (土)	第 15 次	1. 常任分科委員會組織에關한動 議	
1948. 6.21 (月)	第 16 次	1. 憲法起草委員會의報告	
1948. 6.23 (水)	第 17 次	1. 憲法起草委員會의報告및憲法 案(第一讀會)	
1948. 6.26 (土)	第 18 次	1. 全北地方水害調査및慰問에 關한件 2. 憲法案(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6. 28 (月)	第 19 次	1. 報告事項 2. 憲法案(第一讀會)	
1948. 6. 29 (火)	第 20 次	1. 憲法案(第一讀會)	
1948. 6. 30 (水)	第 21 次	1. 憲法案(第一讀會) 2. 美國務省「마-샬」氏가 蘇聯「모로도푸」外相에 게보내는建議書에關한報告 3. 「유.엔」委員團國會尋 訪人事	
1948. 7. 1 (木)	第 22 次	1. 新聞記事에關한報告 2. 議事進行에關한件 3. 憲法案(第二讀會)	
1948. 7. 2 (金)	第 23 次	1. 報告事項 2. 憲法案(第二讀會)	
1948. 7. 3 (土)	第 24 次	1. 議員發言取消에關한件 2. 議事進行에關한件 3. 憲法案(第二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7. 5 (月)	第 25 次	1. 報告事項 2. 憲法案(第二讀會)	
1948. 7. 6 (火)	第 26 次	1. 報告事項 2. 憲法案(第二讀會)	
1948. 7. 7 (水)	第 27 次	1. 報告事項 2. 憲法案(第二讀會) 3. 憲法案(第三讀會)	
1948. 7. 12 (月)	第 28 次	1. 憲法案(第三讀會) 2. 政府組織法上程에關한件	
1948. 7. 14 (水)	第 29 次	1. 報告事項 2. 政府組織法案(第一讀會)	
1948. 7. 15 (木)	第 30 次	1. 政府組織法案(第二讀會)	
1948. 7. 16 (金)	第 31 次	1. 大韓民國憲法公布式節次에 關한報告 2. 政府組織法案(第二,三讀 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7. 17 (土)	第 32 次	1. 大統領・副統領選舉日決定 및節次에關한決議案 2. 休會에關한件	大韓民國 憲法公布 式
1948. 7. 20 (火)	第 33 次	1. 大統領・副統領選舉 2. 休會에關한件	
1948. 7. 24 (土)	第 34 次		大統領 就任式
1948. 7. 27 (火)	第 35 次	1. 議事日程에關한件 2. 國務總理任命承認의件 3. 國會議員身分保障에關한件 4. 休會에關한件	
1948. 7. 30 (金)	第 36 次	1. 大統領聲明談話發表에關한件 2. 議員懲戒勸議에關한件 3. 國務總理任命認准의件	
1948. 8. 2 (月)	第 37 次	1. 國務總理任命承認의件 2. 規則에關한件 3. 組閣人選에關한建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8. 3 (火)	第 38 次	1. 報告事項 2. 議長選舉에關한件 3. 國務總理就任人事및施政方針 4. 特別委員會設置에關한決議案	
1948. 8. 4 (水)	第 39 次	1. 議長選舉 2. 副議長選舉	
1948. 8. 5 (木)	第 40 次	1. 反民處罰法起草委員會設置 에關한件 2. 大法院長任命承認에關한件 3. 國務委員新任人事에關한件 4. 年號決定에關한件	
1948. 8. 16 (月)	第 41 次	1. 報告事項 2. 在日居留民團代表人事 3. 議事日程變更動議 4. 大法院長就任人事 5. 赦免法案(第一讀會)	
1948. 8. 17 (火)	第 42 次	1. 遺骨還國에對한吊慰의件 2. 年號問題에關한件 3. 反民族行爲處罰法案	
1948. 8. 18 (水)	第 43 次	1. 國旗敬禮를否認冒瀆하는廣 告에對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反民族行爲處罰法案	
1948. 8.19 (木)	第 44 次	1. 議事日程變更에關한件 2. 政府內親日派肅清에關한件	
1948. 8.20 (金)	第 45 次	1. 赦免法案(第一·二讀會) 2. 地方行政組織法等法律案에關한決議案 3.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一讀會)	
1948. 8.21 (土)	第 46 次	1. 報告事項 2.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一讀會)	
1948. 8.23 (月)	第 47 次	1. 特別運營委員會設置에關한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8.25 (水)	第 48 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案豫備修正案審查에關한報告 2. 「하-지」將軍離韓에關한件 3.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8.26 (木)	第 49 次	1. 報告事項 2. 不穩文書散布에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政權移讓에關한件 4.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5. 「하-지」中將에對한感謝狀授與 6.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8.27 (金)	第 50 次	1. 議事進行에關한件 2. 報告事項에關한件 3. 議場內秩序攪亂및「베라」事件에關한件 4.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8.28 (土)	第 51 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8.30 (月)	第 52 次	1. 議事進行에關한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8.31 (火)	第 53 次	1. 會議時間延長의件 2. 國會會期에關한決議案	

年月日	次數	案 件	備 考
		3.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9. 1 (水)	第54次	1. 國會議事堂不穩叫라撤布事件搜查狀況에關한件 2. 「오림픽」派遣代表團人事報告 3. 國會特別委員의辭免書및報告 4.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9. 2 (木)	第55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2. 愛國志士徐載弼博士의韓國居住勸告에關한件(緊急動議)	
1948. 9. 3 (金)	第56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2. 行政權移讓에關한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3.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9. 4 (土)	第57次	1. 報告事項 2. 유엔總會에政府代表派遣에關한件 3. 行政權移讓에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4. 유엔總會에政府代表派遣에關한件 5.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9. 6 (月)	第 58 次	1. 外交使節派遣에關한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3. 外交使節派遣에關한件 4.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讀會)	
1948. 9. 7 (火)	第 59 次	1. 年號問題에關한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案(第二·三讀會)	
1948. 9. 8 (水)	第 60 次	1. 유·엔總會代表團의離國人事 2. 유·엔總會代表任命및大統領特使에關한件 3. 年號問題에關한件	
1948. 9. 9 (木)	第 61 次	1. 國會內베라撒布被疑者送廳에關한件 2. 年號에關한法律案起草의件 3. 國歌와國旗制定에關한建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9. 10 (金)	第 62 次	1. 選舉審查委員辭任의件 2. 選舉審查委員補選의件 3. 國會法改正案(第一讀會)	
1948. 9. 11 (土)	第 63 次	1. 年號에關한法律案 2. 國會法改正案(第二讀會) 3. 下午會議와休會에關한件	
1948. 9. 13 (月)	第 64 次	1. 國會法改正案(第二讀會) 2. 大韓民國政府及美國政府間의 財政及財産에對한最初의協定 案批准에關한同意의件 3. 本會議時間에關한件	
1948. 9. 14 (火)	第 65 次	1. 國會法改正案(第二讀會)	
1948. 9. 15 (水)	第 66 次	1. 一般赦免에關한同意의件	
1948. 9. 16 (木)	第 67 次	1. 國會內싸라撤布被疑者送廳에 關한件및列車衝突事件에關한 報告 2. 全院委員會開議의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9.17 (金)	第 68 次	1. 大韓民國政府및美國政府間의 財政及財産에關한最初協定同 意에關한全院委員長報告	
1948. 9.18 (土)	第 69 次	1. 大韓民國政府및美國政府間의 財政及財産에關한最初協定 同 意의件	
1948. 9.20 (月)	第 70 次	1. 糧穀買入法案 (第一讀會)	
1948. 9.21 (火)	第 71 次	1. 內板驛列車事故調查報告 2. 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3. 議事進行에關한件 4. 糧穀買入法案 (第一讀會) 5. 會議時間變更에關한件 6. 糧穀買入法案 (第一讀會)	
1948. 9.22 (水)	第 72 次	1. 糧穀買入法案 (第一讀會) 2. 內板列車事故에關한報告 3. 李東寧·車利錫兩烈士社會葬 에國會代表參席의件 4. 糧穀買入法案 (第一讀會)	
1948. 9.23 (木)	第 73 次	1. 大體討論時間制限에關한件 2. 選舉審査中間報告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三南地方水害調査團構成에 關한件 4. 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件 5. 大體討論時間制限에關한件 6. 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件 7. 韓美協定에關한國會決議反 對聲明發表議員懲戒廻附의 件	
1948. 9. 24 (金)	第 74 次	1. 유엔總會運營委員會에對하 여感謝文發送에關한決議案 2. 糧穀買入法案(第一讀會) 3. 國務委員및政府委員出席要 請의件 4. 農事改良院長의世界米穀會 議經過報告 5. 糧穀買入法案修正案提出 方法및修正案整理에關한件 6. 反共國民大會에關한政府委 員報告의件 7. 糧穀買入法案修正案提出方 法및修正案整理에關한件 8. 國防部將校人事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9. 27 (月)	第 75 次	1. 國會事務總長유인總會法律顧問派遣에對한報告및臨時事務總長代理任命의件 2. 事務總長代理人事 3. 議員懲戒에關한件 4. 反共國民大會에關한對政府質疑 5. 糧穀買入法案(第二讀會)	
1948. 9. 28 (火)	第 76 次	1. 臨時事務總長問題에關한件 2. 救國青年總聯盟의請願廻付審査의件 3. 臨時事務總長問題에關한件 4. 糧穀買入法案(第二讀會)	
1948. 9. 29 (水)	第 77 次	1. 糧穀買入法案(第二讀會) 2. 反民族行爲處罰法第九條에依한特別委員會構成의件 3. 會議時間變更및休會에關한件	
1948. 9. 30 (木)	第 78 次	1. 糧穀買入法案(第三讀會) 2. 大統領施政方針演說 3. 糧穀買入法案(第三讀會) 4. 議員懲戒事犯嫌疑에關한再審査報告의件 5. 施政方針演說에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5. 國務委員出席要請에關한件 7. 한글전용법안(제1독회)	
1948.10.1 (金)	第79次	1. 한글전용법안(제1독회) 2.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選 定에關한件 3. 外國輸入物資激增對策에關한 建議案	
1948.10.2 (土)	第80次	1. 地方行政組織法案(第一讀 會)	
1948.10.4 (月)	第81次	1. 地方行政組織法案(第一讀 會) 2. 各部長官의施政方針演說	
1948.10.5 (火)	第82次	1. 各部長官의施政方針演說	
1948.10.6 (水)	第83次	1. 各部長官의施政方針演說 2. 糧穀買入法案再議의件	
1948.10.7 (木)	第84次	1. 法律案再議에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地方行政組織法案(第一讀會)	
1948.10.11 (月)	第 85 次	1.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承認의件	
1948.10.12 (火)	第 86 次	1.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承認의件 2. 故曹成煥先生葬儀式參席의件 3.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承認및特別裁判官斗特別檢察官選舉의件 4. 在日同胞財產搬入緊急措置에關한建議案 5. 地方行政法案(第二讀會) 6. 國務委員就任人事	
1948.10.13 (木)	第 87 次	1. 外軍撤退要請에關한緊急動議案 2. 地方行政法案(第二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10.14 (木)	第 88 次	1. 故曹成煥先生葬儀式參席報告 2. 地方行政組織法案(第二讀會) 3.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4. 休會에 關한決議案	
1948.10.27 (水)	第 89 次	1. 地方行政組織法案字句修正에 關한報告 2. 유엔總會韓國首席代表로부터 의書信報告 3. 叛亂事件에 關한件 4. 會議時間變更의件 5. 叛亂事件에 關한件 6. 大統領施政方針에 對한質疑節次에 關한件 7. 內亂行爲特別處罰法起草의件	
1948.10.28 (木)	第 90 次	1. 國旗冒濫에 關한報告 및 國旗에 對한儀禮方式制定의件報告 2. 叛亂地區議員身分에 關한報告 3. 懲戒資格委員會改編에 關한決議案 4. 叛亂事件에 關한報告	
1948.10.29 (金)	第 91 次	1. 叛亂事件收拾對策에 關한件	
1948.10.30 (土)	第 92 次	1. 叛亂事件에 關한件 및 時局對策委員會構成에 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 再議案	
1948.11. 1 (月)	第 93 次	1. 議員完快人事의件 2. 議事進行에 關한 決議案 3. 叛亂事件에 關한 報告 4. 國務委員 및 公報處長 出席要請의件	
1948.11. 2 (火)	第 94 次	1. 議員當選人事 2. 叛亂地區 現地 調查報告 3. 黃斗淵 議員 身邊에 關한 質問	
1948.11. 4 (木)	第 95 次	1. 議員出席에 關한 件 2.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 再議案	
1948.11. 5 (金)	第 96 次	1.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決議案 2. 金泉地區 地方實情報告 3.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決議案 4. 議事日程變更에 關한 件 5.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決議案	
1948.11. 6 (土)	第 97 次	1. 麗水叛亂事件에 關한 報告 2.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決議案	
1948.11. 8 (月)	第 98 次	1. 大邱叛亂事件 및 麗水叛亂事件에 關한 報告 2.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決議案	
1948.11. 9	第 99 次	1. 時局收拾對策에 關한 決議案 移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火)		送의件 2. 國家保安法案(第一讀會)	
1948.11.10 (水)	第 100 次	1. 法制司法委員會開議時間에 關한件 2. 國軍組織法案 (第一讀會)	
1948.11.11 (木)	第 101 次	1. 時局收拾對策 및 大統領談話에 關한件 2. 國軍組織法案 (第一讀會)	
1948.11.12 (金)	第 102 次	1. 時局收拾對策에 關한決議案 2. 國軍組織法案 (第二讀會)	
1948.11.13 (土)	第 103 次	1. 國軍組織法案審議에 關한件 2. 國會議員의 言論과 身邊保障에 關한件 3. 國軍組織法案 (第二讀會)	
1948.11.15 (月)	第 104 次	1. 國軍組織法案 (第二讀會) 2. 國會議員의 言論과 身邊保障에 關한件 3. 國軍組織法案 (第二讀會) 4. 事務總長歸國人事	
1948.11.16 (火)	第 105 次	1. 國家保安法案廢棄에 關한動議案	
1948.11.17 (水)	第 106 次	1. 유엔 總會에 보내는決議案 2. 檀紀四二八一年度米穀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11.18 (木)	第 107 次	1. 國軍組織法案字句修正에 관한 報告 2. 五臺山地區實情報告 3. 大統領特別放送에 관한件 4. 國家保安法案(第一讀會)	
1948.11.19 (金)	第 108 次	1. 國家保安法案(第二讀會)	
1948.11.20 (土)	第 109 次	1. 國家保安法案字句修正에 관한 報告 2. 公務員法案審議에 관한件 3. 美軍駐屯에 관한決議案	
1948.11.22 (月)	第 110 次	1. 議事日程變更에 관한件 2. 審計院法案(第一讀會)	
1948.11.23 (火)	第 111 次	1. 審計院法案字句修正에 관한報 告 2. 五臺山の戰況및春川事件 報告 3. 美軍駐屯決議에 對한反對聲明 에 관한件 4. 臨時郵便團束法案(第一讀會)	
1948.11.24 (水)	第 112 次	1. 本會議및常任委員會會議進行 에 관한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改正에 관한 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反民族行爲特別調查機關組織法案(第一讀會)	
1948.11.25 (木)	第 113 次	1. 反民族行爲特別調查機關組織法案(第二讀會) 2.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組織法案(第一讀會) 3. 反民族行爲處罰法改正案(第一讀會)	
1948.11.26 (金)	第 114 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改正案(第一讀會) 2. 國會厚生委員會設置에 관한決議案	
1948.11.27 (土)	第 115 次	1. 公報處長出席要請에 關한件 2. 初等教育施設擴充에 關한建議案 3. 雅樂部國營에 關한請願 4. 對日強制勞動者未濟金債務履行要求에 關한請願 5. 對日青壯年死亡賠償金要求에 關한請願 6. 樺太·千島在留同胞還國運動에 關한請願 7. 乾海苔對日輸出促進에 關한建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11.29 (月)	第 116 次	1. 國會冒瀆記事에 關한 質問 2. 乾海苔對日輸出에 關한 建議案	
1948.11.30 (火)	第 117 次	1. 特別裁判官特別檢察官選舉에 關한件	
1948.12. 1 (水)	第 118 次	1. 韓國問題에 關한 緊急動議案 2. 國籍法案 (第一讀會)	
1948.12. 2 (木)	第 119 次	1. 三八線警備警察官에 對한 感謝 決議案 2. 國籍法案 (第二讀會)	
1948.12. 3 (金)	第 120 次	1. 叛亂地區宜撫工作委員派遣의件 2. 國籍法案 (第二讀會) 3. 유엔總會韓國問題에 關한 政府 側報告聽取의件	
1948.12. 4 (土)	第 121 次	1. 유엔總會韓國問題에 關한 政府 側報告 및 유엔總會에 보내는 韓國問題에 關한 決議案 2. 國籍法案字句修正에 關한 報告 3. 特別裁判部長과 特別檢察部長選舉 4. 유엔總會에 보내는 韓國問題에 關한 決議案 5. 石油精製及統制에 關한 建議案	
1948.12. 6	第 122 次	1. 成人教育強化에 關한 請願 및 世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月)		和財團斗藥學大學復舊에 關한 請願 및 限地醫師制度廢止에 關 한請願 2. 法案早速審議要請의件 3. 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4. 유엔總會韓國問題上程에 關한 報告 5. 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6. 公務員法案 (第一讀會)	
1948.12. 7 (火)	第 123 次	1. 地方自治組織法案起草에 對한 中間報告 2. 特別裁判官과特別檢察官選舉	
1948.12. 8 (水)	第 124 次	1. 議員住宅問題에 關한報告 2. 國會議員選舉法案改正法律案 3. 公務員法案 (第一讀會) 4. 叛亂事件에 關한報告 및 質問 5. 叛亂地區宜撫班派遣에 關한件	
1948.12. 9 (木)	第 125 次	1. 유엔總會韓國問題決議報告 2. 유엔總會感謝메세지發送에 關한件 3. 公務員法案 (第一讀會) 4. 유엔總會와유엔韓國代表에 發 送할感謝메세지通過의件 5. 叛亂地區宜撫工作委員派遣의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12.10 (金)	第 126 次	1. 議員懲戒에 관한件 2. 閉會式日字에 관한件 3. 穀物檢査規則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4. 유엔總會韓國問題決議에對한 報告 5. 穀物檢査規則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6. 外國船舶에對한不正行爲防止 에關한建議案 7. 無住宅同胞에게敵産建物再分 配에關한建議案 8. 糧穀買入用以及包裝品代別途 支拂에關한建議案 9. 洛東江上流南江切江工事促進 에關한建議案 10. 外國醫師免許證所持者에게國 內醫師免許證交換請願 11. 戰罹災民救護事業에關한請願 12. 土地改良事業에關한請願	
1948.12.11 (土)	第 127 次	1. 韓美援助協定同意案 2. 人權保障에關한對策講求의件	
1948.12.13 (月)	第 128 次	1. 人權保障에關한質問 2. 韓美援助協定同意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유엔總會及유엔韓國代表에게 感謝文發送의件 4. 國會事務處職制同意案 5. 水利組合事業繼續及水害復舊 陳情에 關한請願및 山林行政機 構組織에 關한請願	
1948.12.18 (土)			閉會式

第2回國會(定期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8. 12. 20 (月)			開會式
1948. 12. 21 (火)	第 1 次	1. 議席配定の件 2. 叛亂地區宣撫班報告	
1948. 12. 22 (水)	第 2 次	1.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道 調査部責任者承認の件 2. 檀紀四二八一年度棉花資金政 府保證貸付同意案 3. 全南叛亂事件에 關한對政府建 議案 및 決議案 4.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5. 國會議員家庭檢索에 關한質問	
1949. 1. 11 (火)	第 3 次	1. 大統領書翰處理の件 2. 宣撫班報告	
1949. 1. 12 (水)	第 4 次	1. 國務委員出席要請の件 2. 事務總長任命承認の件 3.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道 調査部責任者承認の件	
1949. 1. 15 (土)	第 5 次	1. 事務總長就任人事 2. 「유-엔」韓委에 보내는 「멧 세-지」通過의件 3. 反民族行爲特別檢察官辭免處 理에 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4. 國務總理出席要請의件 5.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1949. 1.17 (月)	第 6 次	1. 國務委員(內務部長官)就任 人事 2. 中央選舉委員長出席要請의件 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第一 讀會) 4. 人口調查法案(第一讀會)	
1949. 1.18 (火)	第 7 次	1. 水原事件報告 2. 大統領特使歸國報告 3. 選舉委員會委員長(盧鎮高) 의質疑應答	
1949. 1.19 (水)	第 8 次	1. 叛亂地區實情報告 2. 水原事件中間報告 3. 檀紀四二八一年度棉花買上資 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4. 當選人事(任永信議員) 5. 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6. 人口調查法案(第一讀會)	
1949. 1.20 (木)	第 9 次	1. 青年團員拉致에 關한質問 2.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長의 報告	
1949. 1.21	第 10 次	1. 議事進行에 關한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金)		2. 大韓觀察府에 關한 質問	
1949. 1.22 (土)	第 11 次	1. 「유-엔」總會에서의 韓國承認票數 確定의 件 2. 金浦軍警衝突事件에 關한 報告 3. 反民族特別調查委員會事務所 要請의 件 4. 議事日程變更에 關한 件 5. 亞細亞會議에 「밋세-지」發 送에 關한 緊急動議案 6. 美國에 半島 「호텔」 贈與에 關 한 動議案	
1949. 1.24 (月)	第 12 次	1. 稅關官署設置法案 (第一讀會) 2. 議事日程變更에 關한 件 3. 反民族行爲處罰法第十七條의 解釋動議案	
1949. 1.25 (火)	第 13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提出에 關한 件 2. 亞細亞會議에 보내는 「밋세- 지」採擇 3. 叛亂地區宜撫班報告와 對策講 究의 件	
1949. 1.26 (水)	第 14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 件 2. 叛亂地區宜撫班報告와 對策講 究의 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1. 27 (木)	第 15 次	1. 叛亂地區宣撫班報告와對策講 究의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第十七條解 釋의件 3. 地方專賣官署設置法案(第一 讀會) 4. 國務委員(內務長官)出席要 請에關한件 5. 休會에關한件	
1949. 1. 28 (金)	第 16 次	1. 禮紀四二八一年度棉花買上資 金政府保證貸付에關한同意案	
1949. 1. 29 (土)	第 17 次	1. 國旗制定委員候補者推薦에關 한件 2. 禮紀四二八一年度棉花買上資 金政府保證貸付에關한同意案	
1949. 1. 31 (月)	第 18 次	1. 政府委員(金孝錫)就任人事 2. 「유-엔」總會副使(張基永 議員)報告 3. 地方交通官署設置法案(第一 讀會)	
1949. 2. 1 (火)	第 19 次	1. 反民族行爲被疑者隱匿에關한 質問 2. 議事日程變更에關한件 3. 豫算案의明細書와原豫算說明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書에關한質問 4.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1949. 2. 2 (水)	第 20 次	1. 叛亂地區全南靈光의 實情報告 2. 國務委員非行에關한件 3. 國會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4. 地方自治法案(第一讀會) 5. 監察委員長의國務委員非行에 關한報告 6. 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1949. 2. 3 (木)	第 21 次	1. 反民法에對한大統領談話의件 2. 內務·國防兩長官出席要請에 關한緊急動議案 3. 監察委員會의通告에關한件	
1949. 2. 4 (金)	第 22 次	1. 監察委員會의通告에關한件 2. 白川警察署被襲事件에對한國 防長官의報告	
1949. 2. 5 (土)	第 23 次	1. 時局收拾對策에關한建議案	
1949. 2. 7 (月)	第 24 次	1. 南北平和統一에關한決議案	
1949. 2. 8 (火)	第 25 次	1. 三八線및白川警察署被襲事件 에關한調査委員의報告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地方自治法案(第一讀會)	
1949. 2. 9 (水)	第 26 次	1. 地方自治法案(第一讀會)	
1949. 2. 10 (木)	第 27 次	1. 補闕選舉實情에 關한 報告 2. 議事 進行에 關한 件 3. 地方自治法案(第一讀會)	
1949. 2. 11 (金)	第 28 次	1. 國會選舉委員長報告 2. 地方自治法案(第一讀會) 3. 叛亂地區視察報告	
1949. 2. 12 (土)	第 29 次	1.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 特別 裁判官斗特別檢察官補闕選舉 2. 反民族行爲道調查部責任者選 舉承認의 件 3. 反民族行爲特別調查委員會報 告	
1949. 2. 14 (月)	第 30 次	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 件 2. 農地改革法案上程의 件 3. 國家公務員法案(第一讀會)	
1949. 2. 15 (火)	第 31 次	1. 農地改革法案上程與否에 關한 動議案 2. 反民族行爲處罰法實施에 關한 質問	
1949. 2. 16 (水)	第 32 次	1. 監察委員會의 通告에 關한 調查 委員會의 報告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2. 17 (木)	第 33 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實施의改正 에關한大統領談話의件	
1949. 2. 18 (金)	第 34 次	1. 國立서울大學校工科大學擴充 에關한建議案 2. 糧穀買上에關聯된事項에關한 質問 3. 協同組合推進에關한質問	
1949. 2. 19 (土)	第 35 次	1. 保健部獨立에關한請願案 2. 全南高興郡行政區域과警察管 轄區域一致에關한請願 3. 忠南禮山郡無限橋架橋工事に 關한請願 4. 甕津地方國軍駐屯에關한件 5.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1949. 2. 21 (月)	第 36 次	1. 議事進行에關한件 2. 議員拘束同意要請의件	
1949. 2. 22 (火)	第 37 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 案上程의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 案(第一讀會)	
1949. 2. 23 (水)	第 38 次	1. 外務部長官(林炳稷)人事 2. 유·예韓國委員團歡迎의件 3.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 案(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2. 24 (木)	第 39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案 (第一讀會)	
1949. 2. 25 (金)	第 40 次	1. 小白山叛亂事件에 關한報告 2.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3. 糧穀買上에 關한建議案	
1949. 2. 26 (土)	第 41 次	1.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1949. 2. 28 (月)	第 42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1949. 3. 2 (水)	第 43 次	1. 유·엔 韓委代辯人「샤-바- 쓰」氏談話에 對한 外務部長官 答辯 2. 國務委員出席要請의件 3.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1949. 3. 3 (木)	第 44 次	1. 議事進行에 關한件 2. 鐵道無賃乘車券에 對한 交通部 長官의 報告 및 質問 3.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1949. 3. 4 (金)	第 45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1949. 3. 5 (土)	第 46 次	1. 大韓觀察府에 關한件	
1949. 3. 7 (月)	第 47 次	1. 地方自治法案(第二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3. 8 (火)	第 48 次	1. 地方自治法案 (第二讀會)	
1949. 3. 9 (水)	第 49 次	1. 農林部長官人事 2. 鐵道賃金引上에 關한件 3. 地方自治法案 (第二讀會)	
1949. 3. 10 (木)	第 50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3.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1949. 3. 11 (金)	第 51 次	1. 議員資格審査에 關한件 2. 尹致暎議員報告 3.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4. 國會議員報酬에 關한法律案 (第一讀會)	
1949. 3. 12 (土)	第 52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1949. 3. 14 (月)	第 53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件 3. 農地改革法 (第一讀會)	
1949. 3. 15 (火)	第 54 次	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件 2. 麥作肥料에 關한質問과 叛亂事 態에 關한質問	
1949. 3. 16 (水)	第 55 次	1. 地方自治法字句整理에 關한件 2. 議事日程에 對한質疑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農地改革法案(第一讀會)	
1949. 3. 17 (木)	第 56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政府豫算案全院會議審查省略緊急動議案 2. 國會內에 反民法第五條該當者有無에 對한 議長의 答辯 3. 國會議員報酬法第八條에 關한 討議	
1949. 3. 18 (金)	第 57 次	1. 會期延期에 關한 建議案 2. 外務部長官의 答辯(駐中大使解任의 件) 3. 農地改革法案(第一讀會)	
1949. 3. 19 (土)	第 58 次	1. 朴 峻議員의 緊急動議案(特別副委員長의 事件)	
1949. 3. 21 (月)	第 59 次	1. 內務部長官의 濟州島視察報告 2. 鐵道運賃臨時措置法案(第一讀會)	
1949. 3. 22 (火)	第 60 次	1. 鐵道運賃臨時措置法案(第二讀會)	
1949. 3. 23 (水)	第 61 次	1. 秘密會議速記錄의 公表에 關한 件 2.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豫算案	
1949. 3. 24	第 62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木)		豫算案	
1949. 3. 25 (金)	第 63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1949. 3. 26 (土)	第 64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藥工品買上 資金政付保證貸付同意案	
1949. 3. 28 (月)	第 65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1949. 3. 29 (火)	第 66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1949. 3. 30 (水)	第 67 次	1.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2. 議員發言取消에 關한件 3.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1949. 3. 31 (木)	第 68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提出에 關한大統領演說 2.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3. 檀紀四二八一年度歲入歲出追 加豫算案 4. 檀紀四二八二年度歲入歲出假 豫算案	
1949. 4. 1 (金)	第 69 次	1. 農地改革法案 (第二讀會) 2. 地方自治法案再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4. 2 (土)	第 70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歲入歲出總 預算案에 關한施政方針演說 2.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1949. 4. 4. (月)	第 71 次	1. 會議時間에 關한件 2. 議員當選人事に 關한件 3. 國務委員非行에 關한通告 4. 地方自治法案再議案	
1949. 4. 6 (水)	第 72 次	1.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撤回의 件 2.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3. 地方自治法案再議案	
1949. 4. 7 (木)	第 73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農地改革法案 (第二讀會)	
1949. 4. 12 (火)	第 74 次	1. 報告事項 2. 議事進行에 關한件	
1949. 4. 14 (木)	第 75 次	1. 漁業에 關한臨時措置法案 (第一讀會) 2. 地方自治法再議案	
1949. 4. 15 (金)	第 76 次	1.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撤回의 件 2.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	
1949. 4. 16 (土)	第 77 次	1. 監察委員會報告에 關한特別調 査委員會構成에 關한緊急動議 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鐵道運貨臨時法 (第二讀會) 3. 國民大學에 對한 請願 4. 藥學大學에 對한 請願 5. 淑明學園財團再建陳情에 關한 決議 6. 殉國烈士故南慈賢女史表彰에 關한 請願回付의 件	
1949. 4. 18 (月)	第 78 次	1. 內務部地方土木官署設置法案 2.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1949. 4. 19 (火)	第 79 次	1.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1949. 4. 20 (水)	第 80 次	1. 國務委員出席要請에 關한 件 2.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1949. 4. 21 (木)	第 81 次	1.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2. 交通遮斷問題討議	
1949. 4. 22 (金)	第 82 次	1.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1949. 4. 23 (土)	第 83 次	1. 反民族行爲特別檢察官辭職願提出의 件	
1949. 4. 25 (月)	第 84 次	1. 三八線視察報告의 件 2. 通常郵便物의 種類 및 料金에 關한 法律案 3. 農地改革法案 (第二讀會)	
1949. 4. 26	第 85 次	1. 大韓赤十字社組織法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火)		2. 農地改革法案(第二讀會)	
1949. 4. 27 (水)	第 86 次	1. 議事日程變更에 關한件 2. 對日交易測定에 關한質問 3. 郵便年金의 年額에 關한法律案 (第一讀會) 4. 農地改革法案(第二讀會)	
1949. 4. 28 (木)	第 87 次	1. 蠶絲類生産資金融資同意案 2. 檀紀四二八二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1949. 4. 30 (土)	第 88 次	1. 會期延長에 對한決議案 2. 檀紀四二八二年度歲入歲出總 豫算案	
1949. 5. 2 (月)			閉會式

第3回國會(臨時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5. 21 (土)			開會式
1949. 5. 23 (月)	第1次	1. 議席配定 2. 臨時會議召集에 關한 質問 3. 國會議員釋放要求에 關한 件	
1949. 5. 24 (火)	第2次	1. 十勇士에 對한 感謝決議案 2. 國會議員釋放要求에 關한 決議案 3. 歸屬財產臨時措置法案	
1949. 5. 25 (水)	第3次	1. 國務總理의 追加豫算에 對한 演說 2. 肥料配給에 關한 緊急質問 3. 世界保健機構加入에 關한 同意의 件	
1949. 5. 26 (木)	第4次	1. 特委特別裁判官辭職의 件 2. 地方自治法案廢棄通告에 關한 件	
1949. 5. 27 (金)	第5次	1. 三八線軍警及青年團員負傷者 慰問의 件 2. 任商工部長官事件中間報告 3. 地方自治法案廢棄通告에 關한 件	
1949. 5. 28	第6次	1. 議員除名에 關한 緊急動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土)		2. 檀紀四二八二年度農林部所管蠶糸類生產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1949. 5. 30 (月)	第 7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農林部所管蠶糸類生產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2. 所得稅및事業稅決定에 對한臨時措置에 關한法律案 3. 地方自治法廢棄通告에 關한件	
1949. 5. 31 (火)	第 8 次	1. 吳澤寬議員의 動議案 (甕津郡一帶의 人民軍과 衝突事件) 2. 寄附金徵收防止에 關한決議案	
1949. 6. 1 (水)	第 9 次	1. 塔洞公園事件報告 2. 柳聖甲議員의 暴行當한事件	
1949. 6. 2 (木)	第 10 次	1. 言論彈壓에 關한眞相質問決議 2. 寄附金徵收防止에 關한決議案	
1949. 6. 3 (金)	第 11 次	1.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裁判官補闕選舉 2. 任商工部長官事件에 關한處理 3. 反民特委에 對한示威事件	
1949. 6. 4 (土)	第 12 次	1. 言論彈壓에 關한緊急質問	
1949. 6. 6 (月)	第 13 次	1. 肉彈十勇士에 對한感謝決議案 2. 農地改革法案消滅通告에 關한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件 3. 特警隊解散事件報告	
1949. 6. 7 (火)	第 14 次	1. 休會動議案	
1949. 6. 13 (月)	第 15 次	1. 赤十字社組織委員指名要請의 件 2. 大統領의時局對策에 關한演說 3. 反民特委委員長金尙德議員의 報告	
1949. 6. 14 (火)	第 16 次	1. 緊急動議案 (맥 아더 線에 關한 件) 2. 農地改革法案消滅通告에 關한 件	
1949. 6. 15 (水)	第 17 次	1. 農地改革法案消滅通告에 關한 件 2.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再議의 件 3. 歸屬財產臨時措置法案再議의 件	
1949. 6. 16 (木)	第 18 次	1. 地方自治法案 (第一讀會)	
1949. 6. 17 (金)	第 19 次	1. 地方自治法案 (第二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6.18 (土)	第 20 次	1.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1949. 6.20 (月)			閉會式

第4回國會(臨時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7. 1 (金)			開會式
1949. 7. 2 (土)	第 1 次	1. 議席配定 2. 金若水副議長辭任에 關한件 3. 議事에 關한決議案(池大亨議員動議案) 4.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49. 7. 4 (月)	第 2 次	1. 副議長選舉의件	
1949. 7. 6 (水)	第 3 次	1. 反民族特別調查委員及檢察官辭任處理의件 2. 反民族行爲處罰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49. 7. 7 (木)	第 4 次	1. 反民族行爲處罰法特別委員會委員總辭職의件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49. 7. 8 (金)	第 5 次	1. 反民族行爲特別裁判官及檢察官次官補闕選舉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49. 7. 9 (土)	第 6 次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第二讀會) 2. 麗水災害復舊事業資金政府保證融資同意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畜牛屠殺制限法案(第一讀會)	
1949. 7. 11 (月)	第 7 次	1. 反民特別調查委員辭任의件 2. 畜牛屠殺制限法案(第一讀會) 3. 所得稅法案(第一讀會)	
1949. 7. 12 (火)	第 8 次	1. 反民特委調查委員辭任의件 2. 國會事務總長李滄統任命承認의件 3. 「유·엔」委員團第三十號公報로發表된決議文에關한件 4. 所得稅法案(第一讀會繼續)	
1949. 7. 13 (水)	第 9 次	1. 韓國經濟援助案通過要請에關한件 2. 「유·엔」委員團決議에關한件 3. 兵役法案(第一讀會)	
1949. 7. 14 (木)	第 10 次	1. 美國國會上下議院議長, 트르맨大統領 및 蔣介石總統에게 보내는 「렛세-지」 의件 2. 兵役法案(第一讀會)	
1949. 7. 15 (金)	第 11 次	1. 兵役法案(第二讀會) 2. 國家公務員法案(第一讀會)	
1949. 7. 16 (土)	第 12 次	1. 憲法公布一週年紀念式日字延期에關한件 2. 國家公務員法案(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7. 19 (火)	第 13 次	1. 緊急動議案 (夏穀收集에 關한 質問) 2. 建設推進에 關한 建議案 3. 地方稅務官署設置法案 (第一讀會)	
1949. 7. 20 (水)	第 14 次	1. 國會議員補闕選舉臨時措置法案 (第一讀會) 2. 臨時租稅措置法案 (第一讀會) 3. 國家公務員法案 (第一讀會)	
1949. 7. 21 (木)	第 15 次	1. 國家公務員法案 (第二讀會) 2. 確定된 法律未公布에 關한 緊急 質問	
1949. 7. 22 (金)	第 16 次	1. 確定된 法律未公布에 關한 緊急 質問 2. 國家公務員法案 (第二讀會)	
1949. 7. 23 (土)	第 17 次	1. 國家公務員法案 (第二讀會)	
1949. 7. 25 (月)	第 18 次	1. 國家公務員法案 (第二讀會)	
1949. 7. 26 (火)	第 19 次	1. 國家公務員法案 (第二讀會) 2. 地方稅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第一讀會)	
1949. 7. 27 (水)	第 20 次	1. 農產物檢査法案 (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7. 28 (木)	第 21 次	1. 緊急動議案(移秧用勞務總動員件) 2. 農產物檢查法案(第二讀會)	
1949. 7. 29 (金)	第 22 次	1. 地方遞信官署設置法案(第一讀會) 2. 厚生福票發行法案(第一讀會) 3. 福票特別會計法案(第一讀會) 4. 營業稅法案(第一讀會)	
1949. 7. 30 (土)	第 23 次	1. 會期延長件 2. 檀紀四二八二年度追加豫算案撤回에 關한 報告 3. 營業稅法案(第一讀會) 4. 法院組織法案(第一讀會) 5. 特委特別裁判官選舉件 6. 請願五件	
1949. 8. 1 (月)			閉會式

第5回國會(臨時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 9.12 (月)			開會式
1949. 9.19 (月)	第1次	1. 法院組織法再議案	
1949. 9.20 (火)	第2次	1. 大韓海運公社法案(第一讀會)	
1949. 9.21 (水)	第3次	1. 國慶日에關한法律案 2. 遊興飲食稅法案(第一讀會)	
1949. 9.22 (木)	第4次	1. 大統領및 國務總理各部處長官 國會出席에關한緊急動議案 2. 遊興飲食稅法案(第一讀會繼 續) 3. 反民特委에對한緊急動議案	
1949. 9.23 (金)	第5次	1. 國有財産處分에關한臨時措置 法案 2. 大韓造船公社法案(第一讀會)	
1949. 9.24 (土)	第6次	1. 入場稅法案(第一讀會)	
1949. 9.26 (月)	第7次	1. 旱害對策에關한緊急動議案 2. 入場稅法案(第二讀會)	
1949. 9.27 (火)	第8次	1. 入場稅法案(第二讀會繼續)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유 . 언」總會에 「뎃세지」發送 에關한件 3. 酒稅法案(第一讀會)	
1949. 9. 28 (水)	第 9 次	1. 酒稅法案(第一讀會繼續)	
1949. 9. 29 (木)	第 10 次	1. 酒稅法案(第二讀會) 2. 法人稅法案(第一讀會)	
1949. 9. 30 (金)	第 11 次	1. 飛行機獻納에對한緊急動議案 2. 法人稅法案(第一讀會繼續)	
1949. 10. 1 (土)	第 12 次	1. 議員釋放에關한緊急動議案 2. 서울市内「택시」整備에關한 緊急動議案	
1949. 10. 4 (火)	第 13 次	1. 國務委員國會出席에關한緊急 動議案 2. 國務委員에對한質問의件	
1949. 10. 5 (水)	第 14 次	1. 國務委員에對한質問의件 (繼續)	
1949. 10. 7 (金)	第 15 次	1. 國務委員에對한質問의件 (繼續)	
1949. 10. 8 (土)	第 16 次	1. 美國大統領及美國國會의對韓 武器援助案及臨時經濟援助案 通過에對한感謝文起草의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匪亂地區의 疎開對策에 關한件 3. 建設部設置에 關한件 4. 罹災民救護對策에 關한件	
1949.10.10 (月)	第 17 次	1. 追加豫算에 對한演說 2. 會期延長에 關한決議案 3. 外國人入國出國및 登錄法案 (第一讀會)	
1949.10.11 (火)	第 18 次	1. 歸屬財産處理法案期限附上程 의件 2. 外國人入國出國및 登錄法案 (第二讀會) 3. 辯護士法案(第一讀會)	
1949.10.12 (水)	第 19 次	1. 國軍組織法에 對한質問 2. 戒嚴法案(第一讀會)	
1949.10.13 (木)	第 20 次	1. 休會에 關한緊急動議案 2. 平海號沈沒事件調查報告의件 3. 寄附統制法案(第一讀會)	
1949.10.14 (金)	第 21 次	1. 竹嶺隧道事件, 平海號沈沒事 件報告및 質問 2. 麗順判亂一週年慰靈祭에 보낸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吊慰文作成의件 3. 寄附統制法案(第一讀會繼續)	
1949.10.24 (月)	第 22 次	1. 世界國際保健機構加入經過報告 2. 議員釋放要求에關한建議案	
1949.10.25 (火)	第 23 次	1. 南韓動亂事件으로因한罹災民救護對策에關한件 2. 歸屬財產處理法案上程期日延長의件 3. 對韓經濟援助에對한外交促進에關한建議案 4. 戒嚴法案(第二讀會)	
1949.10.26 (水)	第 24 次	1. 張亨斗變死事件真相報告의件 2. 戒嚴法案(第二讀會繼續)	
1949.10.27 (木)	第 25 次	1. 大統領書翰에關한件 2. 戒嚴法案(第二讀會繼續) 3. 寄附統制法案(第二讀會繼續)	
1949.10.28 (金)	第 26 次	1. 寄附統制法案(第二讀會繼續) 2. 大韓民國教育法案(第一讀會繼續) 3. 大統領書翰에關한件	
1949.10.29 (土)	第 27 次	1. 懲戒資格委員會委員減員에關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p>한件</p> <p>2. 疎開對策委員會報告</p> <p>3. 在日同胞學校閉鎖에關한件</p> <p>4. 海苔, 乾海苔融通資金政府保證貸付에關한件</p> <p>5. 漁業에關한臨時措置法案</p>	
1949.10.31 (月)	第 28 次	<p>1. 食糧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p> <p>2. 檀紀四二八二年度藥工品買上資金融資의件</p> <p>3. 陶磁器密輸入品處理에關한質疑及對策의件</p> <p>4. 檀紀四二八二年度秋穀買上方針施政演說</p> <p>5. 大韓民國教育法案(第一讀會)</p>	
1949.11. 1 (火)	第 29 次	<p>1. 南韓各地의罹災民應急救護費所要豫算額調查報告書에關한件</p> <p>2. 陶磁器密輸入에關한質問및對策</p> <p>3. 保稅倉庫內의在庫品調査의件</p> <p>4. 米穀政策에關한施政演說및</p>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質問	
1949.11. 2 (水)	第 30 次	1. 議事時間變更의件 2. 糧穀對策樹立의件 3. 旱害救濟對策에關한說明및質問 4. 海軍部獨立에關한決議案	
1949.11. 3 (木)	第 31 次	1. 大韓民國教育法案(第一讀會)	
1949.11. 4 (金)	第 32 次	1. 大韓民國教育法案(第一讀會) 2. 商標法案(第一讀會) 3. 歸屬財產處理法案(第一讀會)	
1949.11. 5 (土)	第 33 次	1.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2. 漢字使用에關한建議案 3. 食糧臨時緊急措置法中改正法律案 4. 歸屬財產處理法案(第一讀會繼續)	
1949.11. 7 (月)	第 34 次	1. 在外國民登錄法案(第二讀會) 2. 歸屬財產處理法案(第一讀會)	
1949.11. 8 (火)	第 35 次	1.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11. 9 (水)	第 36 次	1. 會期延長에關한決議案 2. 電力에關한協定推進同意案 3.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	
1949.11.10 (木)	第 37 次	1. 三八地區及太白山·智異山等 戰鬪地區將兵에對한慰問의件 2. 國會議員及職員旅費規定에關 한同意案 3. 關稅法案上程에對한緊急動議 案 4. 大韓民國教育法案(第一讀會繼 續)	
1949.11.11 (金)	第 38 次	1. 關稅法案(第一讀會) 2.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繼 續)	
1949.11.12 (土)	第 39 次	1. 서울師範大學副教授張亨斗 拷問致死事件調查報告의件 2. 晉州市叛徒侵入事件報告의件 3.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繼 續)	
1949.11.14 (月)	第 40 次	1.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 續)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11.15 (火)	第 41 次	1. 釜山保稅倉庫入庫中인陶磁器 事件에關한件 2.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 續)	
1949.11.16 (水)	第 42 次	1.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 續)	
1949.11.17 (木)	第 43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追加豫算案 上程의件 2.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 續) 3. 美國國會上院議員「노랜드」 氏夫婦에對한歡迎의人事	
1949.11.18 (金)	第 44 次	1.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 續)	
1949.11.19 (土)	第 45 次	1. 金融政策에關한緊急建議案 2. 陶磁器事件에關한報告의件	
1949.11.21 (月)	第 46 次	1. 今會期內緊急提案取扱保留의 件 2.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 續) 3. 美國下院議員歡迎人事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11.22 (火)	第 47 次	1. 政府委員承認取消決議案 2. 歸屬財產處理法案(第二讀會繼續)	
1949.11.23 (水)	第 48 次	1. 會議時間變更事件 2.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繼續)	
1949.11.24 (木)	第 49 次	1.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繼續)	
1949.11.25 (金)	第 50 次	1.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繼續)	
1949.11.26 (土)	第 51 次	1. 辯護士俞東瀆變死事件調查報告事件 2. 大韓民國教育法案(第二讀會繼續) 3.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49.11.28 (月)	第 52 次	1. 各常任委員會의豫備審査의財政經濟委員會의綜合審査의權限에關한緊急決議案 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繼續)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11.29 (火)	第 53 次	1. 各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查와 財政經濟委員會의 綜合審查의 權限에 關한 緊急決議案 2. 檀紀四二八二年度 歲入歲出 追加豫算案	
1949.11.30 (水)	第 54 次	1. 江華에 일어난 被殺事件 真相報告의 件 2. 檀紀四二八二年度 歲入歲出 追加豫算案	
1949.12.1 (木)	第 55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 社會部所管 厚生福票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2. 檀紀四二八二年度 棉花買上資金 政府保證 融資同意案 3. 檀紀四二八二年度 農地開發資金 政府保證 貸付同意案 4. 檀紀四二八二年度 農地開發對策費 充當 長期債 追加 政府保證 貸付同意案 5. 外資購買廳 臨時設置法案(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12. 2 (金)	第 56 次	1. 國政監査에關한計劃案 2. 外資購買廳臨時設置法案 3. 外資廳設置法案 4. 反民族行爲裁判機關臨時組織法案 5. 憲兵및國軍情報機關의 限界에關한法律案 6.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1949.12. 3 (土)	第 57 次	1. 權紀四二八二年度輸出用海苔收集資金政府保證融資案 2. 國債法案 3. 國債金特別會計法案 4. 國防事業國債法案 5. 舊王宮財產處分法案 6. 美國上院議員下院議員및州議員에對한歡迎의人事 7. 檢察廳法案 8. 歸屬財產處理法再議案 9. 地方稅法案 10. 國稅徵收法案 11. 清涼飲料稅法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2. 禮紀四二八二年度米糧穀資金 政府保證融資에 關한件	
1949.12. 4 (日)			閉會式

第6回國會(定期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49.12.20 (火)			開會式
1949.12.21 (水)	第 1 次	1. 大韓赤十字社第一次會員募集 에國會議員加入의件 2. 全院委員長選舉의件 3. 休會에關한件	
1949.12.22 (木)	第 2 次	1. 「유.엔」總會經過報告 2. 國會旅費規程同意의件 3. 權紀四二八三年度豫算案國會 提出에關한政府側說明 4. 地方治安實態調查及巡廻補導 講演에關한件 5. 東海岸漁船遭難事件에關한眞 相報告	
1950. 1.12 (木)	第 3 次	1. 專賣事業特別會計法案 2. 放送事業特別會計法案 3. 美國大統領特使「제설」夫婦 歡迎人事 4. 外資特別會計法案 5. 臨時管財總局管理特別會計法 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6. 糧穀政策에 관한緊急動議案. 7. 寄附統制法에 관한緊急動議案	
1950. 1.13 (金)	第 4 次	1. 米價對策에 관한緊急質問	
1950. 1.14 (土)	第 5 次	1. 米價對策에 관한緊急質問	
1950. 1.16 (月)	第 6 次	1. 懲戒資格委員長選定에 관한件 2. 第二回追加更正豫算에 관한演說 3. 米價對策에 관한件	
1950. 1.17 (火)	第 7 次	1. 糧穀買上을爲하여良民統殺事件에 관한調査團派遣에 관한件 2. 糧穀管理法案(第一讀會)	
1950. 1.18 (水)	第 8 次	1. 糧穀政策에 관한緊急動議案 2. 糧穀管理法案(第一讀會繼續)	
1950. 1.19 (木)	第 9 次	1. 國會法律案上程에 관한件 2. 公務員處遇改善에 관한緊急動議案 3. 糧穀管理法案(第二讀會)	
1950. 1.20 (金)	第 10 次	1. 外務, 財務部長官國會出席에 관한緊急動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考
		2. 國會開議時間에關한緊急動議案 3. 糧穀管理法案(第二讀會繼續) 4. 國務委員에對한質問	
1950. 1.21 (土)	第 11 次	1. 法務部長官, 檢察總長國會出席에關한緊急動議案 2. 美國上下議院, 大統領및國務長官에「렛세지」發送에關한件 3. 糧穀管理法案(第二讀會繼續) 4. 國務委員에對한質問의件	
1950. 1.23 (月)	第 12 次	1. 美國下院에보내는「렛세지」作成의件 2. 米價調節에對한政府保有米分配에關한緊急動議案 3. 糧穀管理法案(第二讀會繼續)	
1950. 1.24 (火)	第 13 次	1. 在日同胞日人取扱에關한緊急質問 2. 寄附統制法運用에關한緊急質問 3. 農林官署設置法案(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4. 馬券稅法案(第一讀會)	
1950. 1.25 (水)	第 14 次	1. 政府保有米의 販賣價格에 關한 決議案 2. 美國에 보내는 國會議員 派遣에 關한 決議案 3. 通信事業特別會計法案 4. 國民生命保險特別會計法案 5. 歸屬農地管理特別會計法案 6. 交通事業特別會計法案	
1950. 1.26 (木)	第 15 次	1. 彈劾裁判法案(第一讀會) 2. 憲法委員會法案(第一讀會) 3. 海軍基地法案 4. 防禦海面法案	
1950. 1.27 (金)	第 16 次	1. 農林部長官李宗鉉新任人事 2. 船舶管理法案 3. 水產物檢查法案	
1960. 1.28 (土)	第 17 次	1.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會) 2. 遣美議員壯行會開催의件	
1950. 1.30 (月)	第 18 次	1. 憲法委員會法案(第二讀會) 2. 彈劾裁判法案(第二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50. 1. 31 (火)	第 19 次	1.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第二讀會繼續)	
1950. 2. 1 (水)	第 20 次	1. 慶北盈德事件調查班派遣의件 2. 軍政法令廢止에關한法律案 3. 國立劇場豫算審議保留報告에關한質疑 4. 字句修正에關한報告 5.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第二讀會)	
1950. 2. 2 (木)	第 21 次	1. 農地改革法中改正法律案(第二讀會繼續) 2. 國政監查報告上程에關한件.	
1950. 2. 3 (金)	第 22 次	1. 新任農林部長官의施政方針演說 2. 政府保有米販賣價格에關한決議案 3. 叛亂地區調查班派遣의件 4. 國政監查報告處理의件 5. 郵便貯金運用法案	
1950. 2. 4 (土)	第 23 次	1. 行刑法(第一讀會) 2. 서울地方檢察廳國政監查에關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한報告	
1950. 2. 7 (火)	第 24 次	1. 行刑法 (第一讀會繼續) 2.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3. 少年法案 (第一讀會)	
1950. 2. 8 (水)	第 25 次	1. 少年法案 (第一讀會繼續) 2. 交通稅法案	
1950. 2. 9 (木)	第 26 次	1. 印紙稅法案 2. 免許稅法案 3. 電氣가스稅法案 4. 教育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50. 2. 10 (金)	第 27 次	1. 美國國會에「뫁세 - 지」發送 의件 2. 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第一 讀會) 3. 農林部長官國會出席에關한緊 急動議案 4. 教育法中改正法律案 (第一讀 會繼續)	
1950. 2. 11 (土)	第 28 次	1. 農會費徵收및補償物資配給에 關한緊急質問 2. 內務部長官白性郁就任人事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保導聯盟組織및運營에關한緊急質問 4. 歸屬農地返還에關한請願	
1950. 2.13 (月)	第 29 次	1. 歸屬農地返還에關한請願(繼續) 2. 遣美議員出發延期에關한件 3. 教育法中改正法律案(第二讀會)	
1950. 2.14 (火)	第 30 次	1. 肥料價格및食糧配給에關한建議案 2. 少年法案(第二讀會繼續)	
1950. 2.15 (水)	第 31 次	1. 軍政法令廢止에關한法律案 2. 糧穀搗精에關한建議案 3. 慶北青松事件에關한調査團派遣의件 4. 少年法案(第二讀會繼續) 5.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50. 2.16 (木)	第 32 次	1. 權紀四二八二年度第二回追加更正豫算中一部使用承認要請의件 2. 國會議員選舉法案(第一讀會)	
1950. 2.17 (金)	第 33 次	1. 權紀四二八二年度第二回追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加更正豫算中一部使用承認의件(繼續) 2.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繼續)	
1950. 2.18 (土)	第 34 次	1. 內務部長官國會出席에關한緊急動議案 2. 國會議員選舉法案(第一讀會繼續) 3. 國務委員에對한質疑	
1950. 2.20 (月)	第 35 次	1. 國會議員選舉法案(第一讀會繼續)	
1950. 2.21 (火)	第 36 次	1. 國政監查報告의件 2. 國會議員選舉法案(第一讀會繼續)	
1950. 2.22 (水)	第 37 次	1.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第二讀會) 2. 計理士法案 3. 漁業法案 4.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案	
1950. 2.23 (木)	第 38 次	1. 三.一節에關한件 2. 國有財產法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國內財產逃避防止法案 4. 地方交通官署設置法中改正法律案 5. 法院災難에 起因한民刑事臨時措置法案	
1950. 2.24 (金)	第 39 次	1. 簡易訴請節次에 依한歸屬解除決定의 確認에 關한法律案 2. 相續稅法案 3. 贈與稅法案 4. 物品稅法案	
1950. 2.25 (土)	第 40 次	1. 農林·交通·商工三長官國會出席에 關한緊急動議案 2. 物品稅法案(第一讀會繼續) 3. 國會議員選舉法案(第二讀會)	
1950. 2.28 (火)	第 41 次	1. 國政監查報告質問	
1950. 3. 2 (木)	第 42 次	1. 公報處長國會出席에 關한緊急動議案 2. 國政監查報告와 質問 3. 公報處長談話發表에 關한質問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4. 國政監査報告外質問(繼續)	
1950. 3. 3 (金)	第 43 次	1. 國務會議에서議決한改憲反對 指示에關한質問 2. 國政監査에關한質問	
1950. 3. 4 (土)	第 44 次	1. 國務委員에對한質問 2. 國政監査에關한質問	
1950. 3. 6 (月)	第 45 次	1. 報告事項	
1950. 3. 7 (火)	第 46 次	1. 國會議員辭任에關한件 2. 憲法委員會委員選舉 3. 彈劾裁判所審判官選舉	
1950. 3. 8 (水)	第 47 次	1. 國會議員釋放에關한動議案 2. 國會議員選舉法案(第二讀會)	
1950. 3. 9 (木)	第 48 次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	
1950. 3.10 (金)	第 49 次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	
1950. 3.11 (土)	第 50 次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	
1950. 3.13 (月)	第 51 次	1. 大韓民國憲法改正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50. 3.14 (火)	第 52 次	1. 大韓民國憲法修正案	
1950. 3.15 (水)	第 53 次	1. 法務部次官·內務部次官國會 出席에關한動議案 2. 選舉日과選舉運動에關한緊急 動議案 3. 國會議員選舉法案(第二讀會)	
1950. 3.16 (木)	第 54 次	1. 改憲案否決에關한申議長談話 發表의件 2. 國會議員選舉法(第二讀會繼續)	
1950. 3.17 (金)	第 55 次	1. 會期延長에關한緊急動議案 2. 國會議員選舉法(第二讀會繼續)	
1950. 3.18 (土)	第 56 次	1. 遣美議員歡送의人事 2. 國會議員選舉法案(第二讀會繼 續) 3. 豫算案上程에關한緊急動議案 4. 國有財産法案(第二讀會) 5. 物品稅法案(第二讀會) 6. 贈與稅法案(第二讀會)	
1950. 3.20 (月)	第 57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第二回追加 更正豫算案 2. 舊王宮財産處理法案(第一讀會)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50. 3.21 (火)	第 58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第二回追加 更正豫算案	
1950. 3.22 (水)	第 59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第二回追加 更正豫算案 2. 簡易訴請節次에 依한 歸屬解除 決定에 關한 法律案 (第二讀 會) 3. 災害復興組合法案(第一讀會) 4. 公務員處遇改善對策에 關한 決 議案	
1950. 3.23 (木)	第 60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第三回追加 更正豫算案上程에 關한 緊急動 議案 2.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3. 米穀增産에 關한 建議案	
1950. 3.24 (金)	第 61 次	1. 教育行政에 關한 建議案 2. 韓美協定에 對한 質疑 3. 檀紀四二八二年度第三回追加 更正豫算案 4. 地方放送局設置法案(第一讀會) 5.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第一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讀會) 6. 敦岩洞水險里間電車敷設에關한請願	
1950. 3.25 (土)	第 62 次	1.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繼續)	
1950. 3.27 (月)	第 63 次	1. 缺席議員出席要請과議事進行에關한件 2. 藝術保護法案(第一讀會)	
1950. 3.28 (火)	第 64 次	1. 肥料價格引上에關한真相에對한質疑 2. 軍事援護法案第四項을緊急上程動議案 3. 檀紀四二八二年度第三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1950. 3.29 (水)	第 65 次	1. 檀紀四二八二年度第三回歲入歲出追加豫算案 2. 軍事援護法案(第一讀會)	
1950. 3.30 (木)	第 66 次	1. 檀紀四二八三年度豫算에關한大統領演說 2. 韓美軍事援助雙務協定同意의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3. 檀紀四二八二年度第三回追加 豫算案 4. 藝術保護法案(第一讀會繼續)	
1950. 3. 31 (金)	第 67 次	1. 大統領公翰에關한質疑 2. 檀紀四二八三年度歲入歲出假 豫算案 3. 檀紀四二八二年度厚生福票特 別會計歲入歲出追加豫算案 4. 休會에關한件	
1950. 4. 4 (火)	第 68 次	1. 國務總理李範奭氏의退任辭 2. 美國國會에보내는「뱃세 - 지」 通過의件 3. 議事進行에關한件 4. 疎開地處理에關한件 5. 彌阿里共同墓地移轉에關한請 願 6. 李 僑烈士靈骨奉還安葬에關한 請願 7. 光州·全州高等法院同檢察廳設 置에關한請願 8. 土地改良事業資金融資에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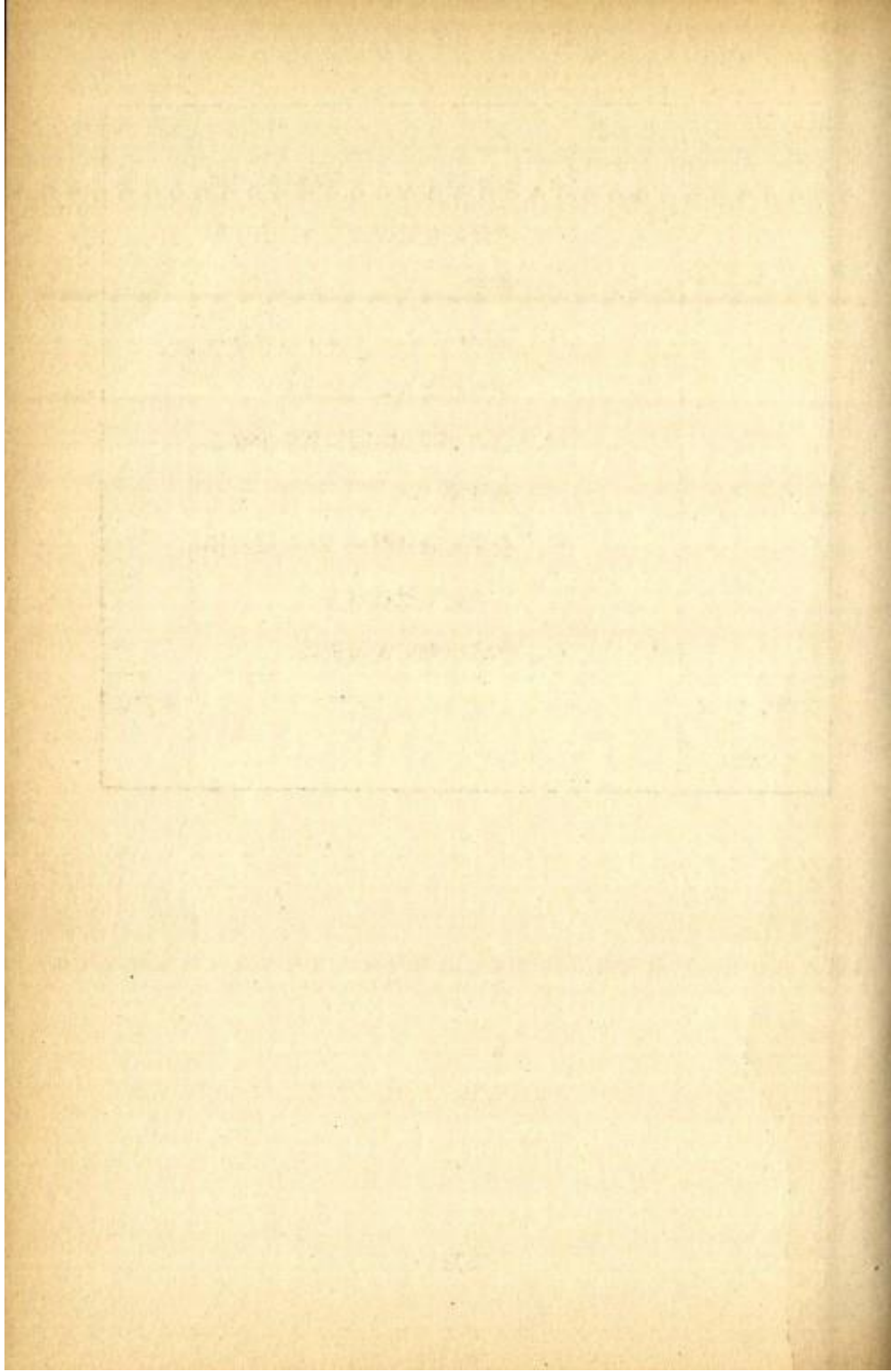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請願 9. 國會議員選舉法案再議의件	
1950. 4. 6 (木)	第 69 次	1. 國務總理認准에關한件 2. 國會議員選舉法案再議의件(繼續)	
1950. 4. 7 (金)	第 70 次	1. 藝術保護法案(第二讀會) 2. 大統領演說의件 3. 國內財産逃避防止法案(第一讀會)	
1950. 4. 8 (土)	第 71 次	1. 國務總理後任問題에關한件 2. 工科大學校舍明渡問題에關한件 3.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再議의件 4. 軍政法令廢止에關한法律案再議의件 5. 國會議員選舉法案再議의件	
1950. 4. 10 (月)	第 72 次	1. 米價對策에關한質問의件 2. 國務總理公函還附의件 3. 國會議員選舉法再議案	
1950. 4. 11 (火)	第 73 次	1. 豫算案審査에關한緊急動議案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米價對策 및 大韓政治工作隊事件에 關한 緊急 質問 3. 工科大學校舍 明渡에 關한 緊急 質問 4. 酒稅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50. 4.12 (水)	第 74 次	1. 酒稅法中改正法律案 2. 大韓政治工作隊事件 調查 對 件	
1950. 4.13 (木)	第 75 次	1. 信託銀行不正貸付에 關한 緊急 動議案 2. 米價對策에 關한 緊急 質問 3.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1950. 4.14 (金)	第 76 次	1. 信託銀行不正貸付에 關한 緊急 質問 2.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第一讀會) 3. 信託銀行不正貸付에 關한 調查 團 構 成 對 件 4. 營業稅法案(第一讀會) 5. 通常郵便料金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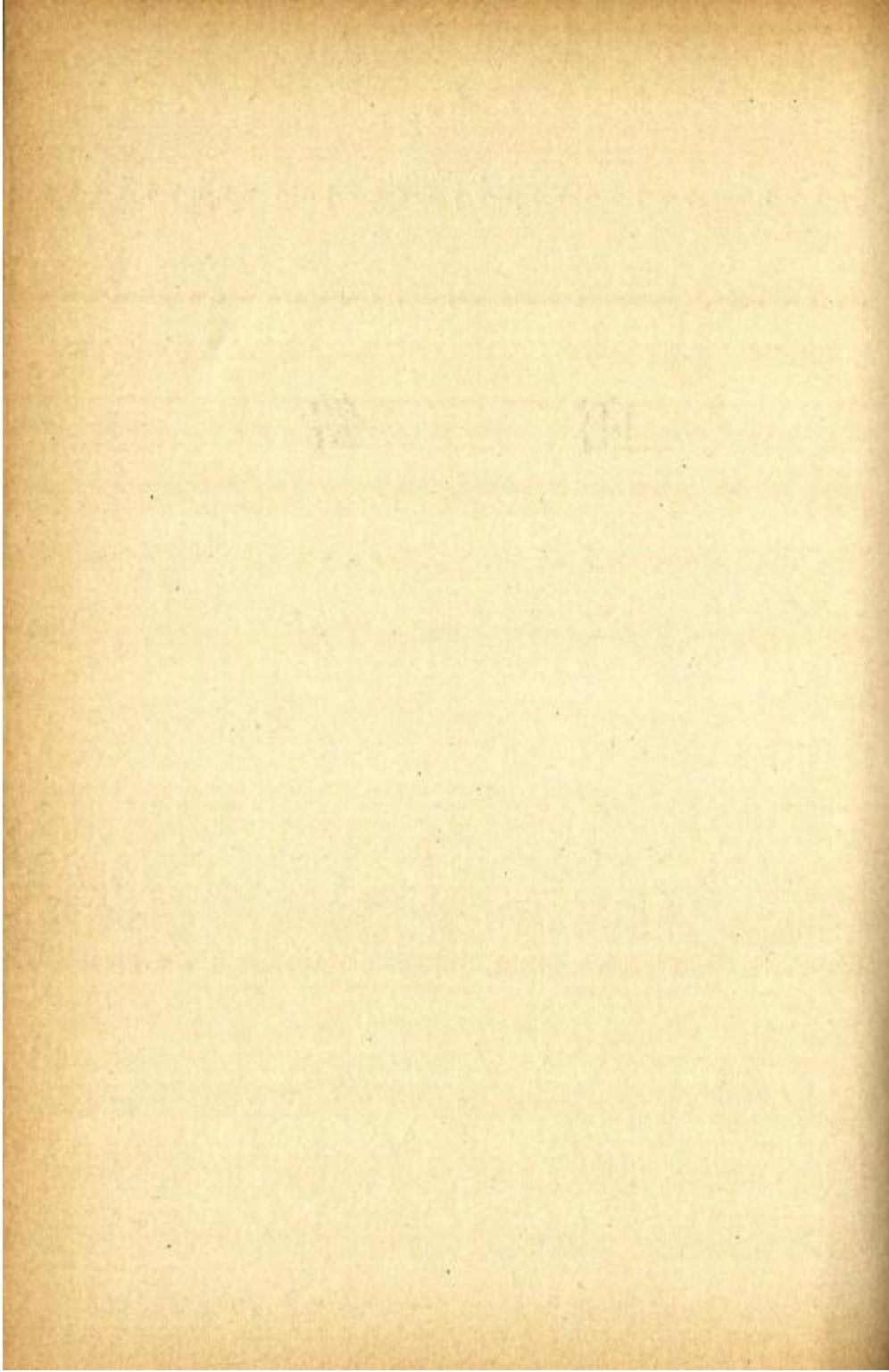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1950. 4.15 (土)	第 77 次	1. 織物稅法案(第一讀會)	
1950. 4.17 (月)	第 78 次	1. 訪美委員團報告의件 2. 織物稅法案(第一讀會繼續)	
1950. 4.18 (火)	第 79 次	1. 大韓政治工作隊事件調查報告의件 2. 信託銀行巨額不正貸付에關한調查報告의件 3. 大韓石炭公社法案(第一讀會) 4. 韓國銀行法案(第一讀會)	
1950. 4.19 (水)	第 80 次	1. 國會議員選舉法公布에關한質問 2. 大韓政治工作隊事件調查報告의件 3. 政府委員出席要請의件	
1953. 4.20 (木)	第 81 次	1. 마라톤選手團에보내는「옛세-지」의件 2. 大韓政治工作隊事件에關한緊急質問	
1950. 4.21 (金)	第 82 次	1. 國務總理署理任命公布通知에關한大統領의公翰返還의件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2. 韓國銀行法案(第一讀會) 3. 銀行法案(第一讀會) 4. 糧穀管理特別會計法案(第一讀會) 5. 國立劇場設置法案(第一讀會) 6. 國立劇場特別會計法案(第一讀會)	
1950. 4. 22 (土)	第83次	1. 會期延長에 關한 緊急動議案 2. 檀紀四二八二年度農地開發資金追加政府保證貸付同意案 3. 商工部直轄三成績業會社長項製鍊所에 對한 政府保證融資同意案 4. 檀紀四二八三年度桑田蠶種生產資金政府保證貸付同意案 5. 國庫金端數計算法案 6. 檀紀四二八三年度歲入歲出豫算案斗檀紀四二八三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7. 檀紀四二八三年度厚生福票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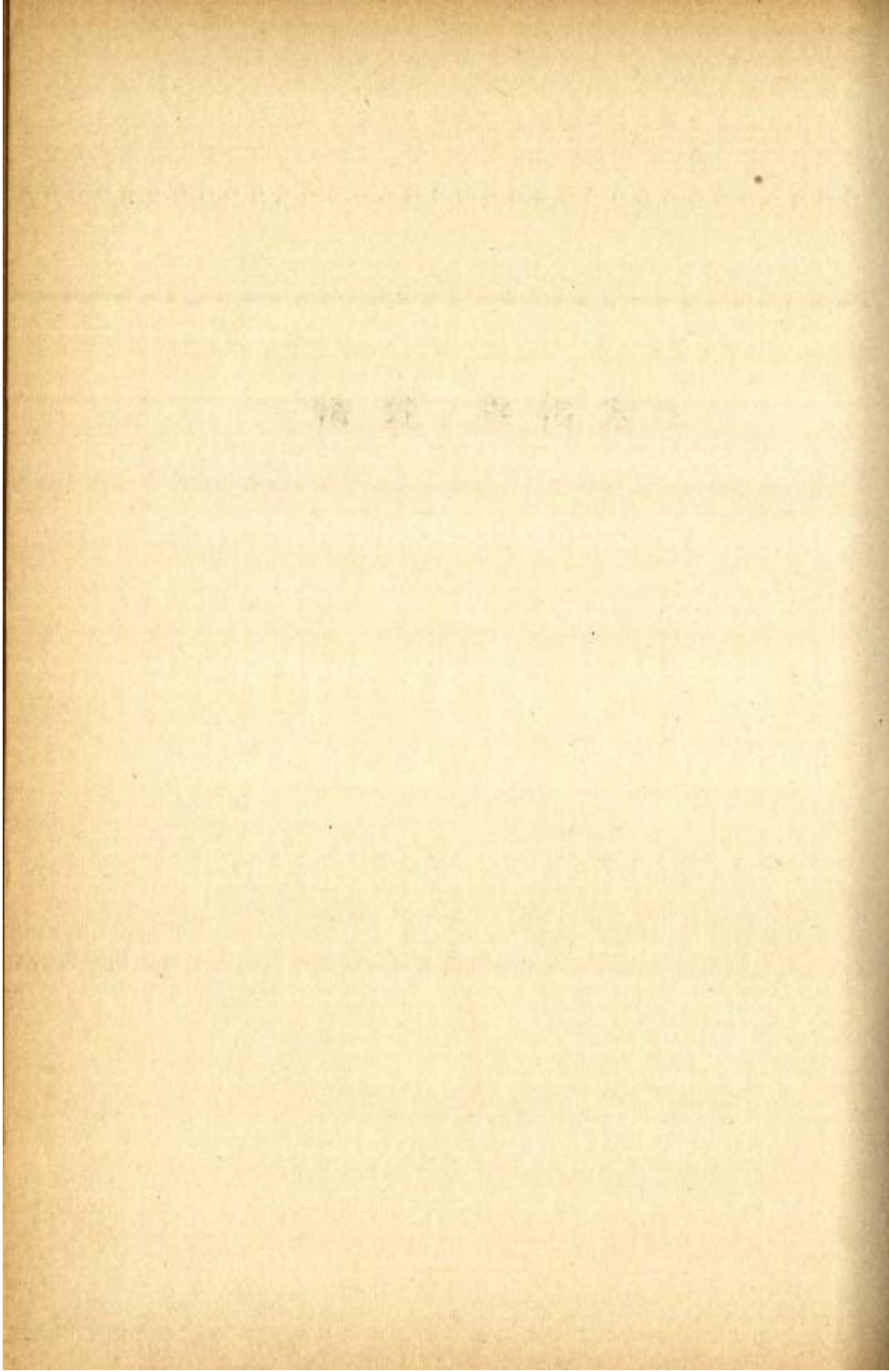
年 月 日	次 數	案 件	備 考
		8. 檀紀四二八三年度韓國經濟復興資金을財源으로하는追加豫算案 9. 檀紀四二八三年度糧穀管理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 漁業에關한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11. 韓美財政及財産에關한最終協定에對한批准의件 12. 休會에關한緊急動議	
1950. 6. 2 (金)			閉會式



附 錄



○ 式 辭 外 致 辭



第 1 回國會 (臨時會)

開會式辭

우리가 오늘 第一次國會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愛國 先烈들의 犧牲的 血戰의 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友邦들 特히美國과의 公義上 원조를 깊이 感謝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民族의 公選에 의하여 神聖한 使命을 띄고 國會議員資格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職務와 權位를 行할 것이니 먼저 憲法을 制定하고 大韓獨立民主政府를 再建設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大會를 代表하여 오늘에 大韓民主國이 다시 誕生된 것과, 따라서 이 國會가 우리나라에 唯一한 民族代表機關임을 世界萬邦에 公佈합니다. 이 民國은 己未年 三月一日에 우리 十三도 代表들이 서울에 모여서 國民大會를 열고 大韓獨立民主國임을 世界에 公佈하고 臨時政府를 建設하여 民主主義의 基礎를 세운 것입니다.

不幸히 世界大勢에 緣由해서 우리 革命이 그 때에 成功이 못되었으나 우리 愛國男女가 海內海外에서 그 政府를 支持하며 많은 生命을 바치고 血戰苦闘하여 이 精神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國會는 卽 國民大會의 繼承이오, 이 國會에서 建設되는 政府는 卽 己未年에 서울에서 樹立된 民國臨政의 繼承이니 이 날이 二十九年만의 民國의 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公佈하며 民國年號는 己未年에서 起算할 것이오, 이 國會는 全民族을 代表한 國會이며 이 國會에서 誕

生되는 民國政府는 完全히 韓國全體를 代表한 中央政府임을 이에 또 한 公佈하는 바입니다.

우리 以北五道 同胞가 우리와 같이 公選으로 代表를 選舉하야 우리와 이 자리에서 圓滿히 合席치 못한 것은 우리가 極히 痛忿히 역이는 바입니다. 그러나 以北에서 넘어온 四百五十萬 罹災同胞가 우리 選舉에 參加하였고, 被選된 代表도 여러힐 뿐 아니라 이 國會에 자리를 相當한 數로 비여 놓아 하로 밧비 自由選舉로 以北代表가 와서 이 자리를 占領하고 우리와 함께 職責과 權利를 分擔하야 完全無缺한 國家를 恢復하도록 準備하리니, 우리는 以北同胞와 合心合力하야 美國과 유엔의 協助로 統一의 早速成功을 齎來하기를 決心할 것이며, 또 다시 盟誓하는 바는 우리 民族은 죽어도 갖치 죽고 살아도 갖치 살 것이오, 우리 疆土는 一尺一寸이라도 남에 讓與하지 간흔 作定입니다. 이 國會의 最大限 目的은 임이 世界에 알려진 바와 같이 民主主義를 土臺로 한 憲法을 制定하고 그 憲法에 따라 政府를 樹立하고 國防軍을 組織하야 安寧秩序와 疆土를 保障하며, 民生困難을 救하기 위하야 確固한 經濟政策을 樹立할 것과, 土地改革을 公平히 實施할 것과, 個人의 平等權을 法律로 制定하야 保護할 것과, 海外에 居留하는 同胞의 生命과 權利를 國際上 交涉으로 保護할 것과, 教育을 向上하며 工業을 發展하며, 平等互惠의 條件으로 海外通商을 열 것과, 言論·出版·集會·宗教等 自由를 保障할 것과, 國際上 交誼를 敦睦하야 世界平和를 增進할 것과, 倣聯과 交際를 여러서 兩國의 重大關係를 是正할 것과, 길이 열리는 대로 日本과 談判을 여러서 政治와 經濟上 모든 問題

를 妥定할 것 等이니 우리 國會議員들의 責任이 重大하고 緊迫합니다. 時日이 緊迫한이만치 우리는 些少한 條理와 無益한 理論으로 時間을 虛費할수 업는 形便이니 重大問題만을 次序로 討議決定하여 實行하기에만 注力할 것입니다. 우리政府가 樹立되는 날은 美軍政은 自然 廢止될 것이니 美軍政當局은 이미 다 撤廢하기를 準備하고 있는 터이며 軍政機關에서 서울과 各道에 重要責任을 가지고 우리를 도아서 視務한 美國親友중에 或은 顧問으로나 或은 技術者로 必要한 人士들은 美國政府와 交涉해서 얼마 동안 協助하기를 要請할 수 있을 것이며, 美駐屯軍은 우리 國防軍이 準備될 때 까지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터이나 이 問題는 유엔에서 決定되는 바를 따라서 美政府에서 行할터임이므로 美國과 유엔과 우리 政府 사이에 相當한 協議로 條件을 定해서 進行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主張하는 바는 駐屯軍의 延長으로 因緣해서 우리 主權使用에는 조금도 侵損되는 일이 업슬 것과 언제든지 우리가 그 駐屯軍의 撤廢를 要求할 때는 即時 撤廢할 것 等이니 別事端이 업슬 것입니다. 美國은 어느 나라를 對해서든지 領土나 政治上 野心이 업는 것은 世界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즉 民主政權을 세워서 世界의 平和를 維持하고 國際上 通商과 友好로 共同利益이 될 것을 主張할 뿐이니 韓國에 對해서도 期待하는 바는 오즉 우리 民衆의 好意뿐일 것이므로 設令 國際情勢에 緣由해서 駐屯軍이 얼마 동안 있을 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願치 안이할 때는 곧 거더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對해서 조금도 念慮할 바가 업는 것입니다.

共黨韓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機會를 줄 것이니 改過
回心해서 全民族이 主張하는 國權回復에 우리와 같이 合心合力하여
民族陳營으로 同舟並濟하는 決心을 充分히 表明하게 되면 우리는 前
過를 이저바리고 다같이 善良한 同胞로 待遇할 것이오 終是悔改치 못
하고 國家를 남의 나라에 附屬식히자는 主意로 殺人, 放火, 破壞等を
恣行할진대 國法으로 嚴히 處斷할 것이니 至今부터는 他國의 干涉
으로 容恕나 釋放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確實히 깨다려서 自己도
살고 남도 살아서 自由福利를 갖치 누리도록 法網에 服從해야 될 것
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치 안코는 될수 업을 것입니다.

一般同胞에게 忠告할 것은 國會가 서고 政府가 생긴 後에는 아모일
도 아니하고 다 各各個人의 願대로 될 것을 바라고 안것스면 決코 될
수업는 情勢입니다. 君主政治時代에는 政府當局들에게 막기고 일업시
지냈지만은 民主政體에는 民衆이 主權者임으로 主權者가 잠자고 잇스
면 나라는 다시 危殆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至今부터 市民된 男女는
다 各各 各職責과 各權利를 充分히 履行하며 使用해서 부즈런히 奮闘
勞力함으로 國權을 常固케하며 人權을 保護해야 萬人共榮을 圖할지니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한 사람도 職責업시 노는 사람이 업서야 할 것이오 國
難을 妨害하고 民生을 困難케 하는者는 法律로 制裁해야 造일(孽)
의 弊를 막어야 될 것이며 모든 腐敗한 挾雜謀利等 弊端은 政府와 民
衆이 一心合力으로 막어서 官民을 勿論하고 이런 弊習에 빠진者는 容
恕업시 懲治해야 清潔 刷新케 하리니 各各 個人으로나 團體로나 合心
努力하기를 付託합니다. 至今은 大韓民國의 安危와 三千萬民衆의 禍福

이 전혀 우리個人的 손에 달렸스니 우리가 잘못하면 손해 우리가 당하고 實望도 우리가 질 것이며 잘만하면 모든 福利가 날로 增進되며 世界親友들이 極力 同情하여 援援하리니 一般國會員들은 나와함께 兢兢業業하는 誠心誠力과 愛國愛族의 純潔한 志操로 己未年 國民大會員들의 決死血闘한 精神을 본바더 最後一人 最後一刻까지 奮闘하여 나갈것을 우리 하나님과 三千萬同胞앞에서 一心盟約합시다.

大韓民國 三十年 五月 三十一 日

大韓民國國民議會議長 李 承 晚

閉會式辭

李副統領! 國內外貴賓 여러분! 國會議員 여러분!

檀紀 4281 年도 바야흐로 歲暮에 臨迫한 오늘 우리 國會가 지난 5 月 31 日 以來 議政上 許多의 迂餘曲折과 光輝 있는 歷史를 남기고 第 128 次會議로써 一旦 閉會를 하게 됨에 즈음하여 甚深한 感懷가 없을 수 없습니다. 回顧하건대 우리 國會議員 全員이 國民의 信任을 받아 議席을 차지한 以來 우리 새 國家의 礎石이 되는 憲法을 制定하고 우리의 大統領을 選舉하였음을 비롯하여 建國의 基本的 모든 法律을 檢討 研究하기 위하여 分科委員會와 特別委員會등을 構成하여 非常한 決心아래 眞摯한 努力을 기울여서 萬全을 기하여 왔으며 反民族行爲處罰法, 一般赦免令은 勿論, 行政權移讓에 관한 韓·美協定の 同意를 주어서 政府로 하여금 圓滑迅速한 處置를 기하게 하였으며 우리 國民生活問題에 莫重한 關係를 가진 糧穀買入法에 대하여는 特히 慎重한 態度로서 이를 審議議決하는 등 議員 全員이 不眠不休의 精力을 다한 것은 國政을 議論하는 國會議員의 義務라 할지로되 그 愛國的 熱意와 良心의 態度에 이르러서는 若干의 自負와 自慰를 禁할 수 없습니다. 這間 南韓 幾個所에 亘한 叛亂不詳事의 騷擾가 突發하여 우리의 精神은 저으기 피로한 바 있었지마는 우리 一同은 冷靜한 判斷과 措置를 講究하고 誠心으로 政府를 鞭撻하여 大事를 極少範圍에 멈추게 하였음도 또한 우리 一同의 믿음직한 態度의 하나로써 自負하는 바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一絲不亂의 精力을 기울이어 地方行政에 관

한 臨時措置法이라든지 國軍組織法을 通過시키었고 最近에 있어 우리 國民 民生에 至大한 影響이 있으며 우리 國家經濟 復興에 莫大한 貢獻이 있을 韓·美協定은 友邦美國의 絶大好意下에 締結됨에 當하여 이에 同意를 可決하는 등 劃期的 大議題를 通過시킨 것 등은 議員全員の 叡智와 情熱에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大抵 어느 나라의 議會史를 詳考해 보더라도 議會 開會以來 120 餘次의 會議를 꾸준히 開會하여 오며 始終如一의 精誠을 기울여 國政을 討論한 記錄은 몇 가지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勿論 우리 國家 有史以來 初有의 大建國에 관한 基本的 議政인지라 마땅히 그렇지도 하지마는 議員 全同志의 愛國의 情熱의 發露가 아니면 이러한 超人的 記錄을 가질 수 없다고 生覺하며 다시금 自矜하는 바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議會開始 以來 7 個朔未滿에 우리 國家가 UN總會의 絶對多數의 可決로써 國際的 承認을 獲得한 것도 이에 관하여 始終一貫으로 主動的 役割을 아끼지 아니한 美國을 爲始한 友邦들에게 깊은 感謝를 表하거나와 意義 깊고 波瀾 많던 우리 國會에 이 歷史的 特別會期가 終了하기 直前に 이 기쁜 消息에 接하게 된 것도 天意人事가 決코 偶然치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使命은 더욱 加重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는 列強諸國에 作伍하여 堂堂한 世界的 大韓民國으로써의 第一步를 내 디디게 됨에 當하여는 國際條約에 관한 幾多의 條約 등 外交的 課題가 있을 것은 勿論이지만 우리는 內省的 眼光을 더욱 銳敏케 하여 실로 名實相符의 國內的 態勢를 整備하여야 할 課題가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一路 이 課題를 完遂하기에 邁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條項을 여기에 列舉하기를 省略하거나와 南北統一問題라든지 行政의 明朗 健實化와 國民思想의 統一整理, 國家經濟의 調整革新 등의 여러 課題가 우리 眼前에 展開되어 오는 것을 切實히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이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議員 諸同志의 熱意와 叡智에 매달리고 싶은 情이 더욱 깊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드릴 것은 議員 諸同志의 몸은 同志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國民의 信任이 실린 몸인 것을 自覺하시고 自重自愛하여 健康에 注意하시기를 빌며 所懷의 一端을 披歷하여 閉會辭에 대신합니다.

檀紀 4281 年 12 月 18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 1 回 國會閉會式)

大韓民國 第一回 國會를 閉會하는 자리에 나는 여러분 國會議員과 議長께서 各各 職責을 다하신것을 特히 致賀합니다. 우리民國이 漸漸 發展될 수록 百九十八中에 參與되신 분들을 歷史에 赫赫한 이름이 代代로 遺傳될것 입니다.

여러분의 合心合力으로 成立된 國會에서 樹立한 政府가 비로서 우리나라 獨立政府로 世界의 認定을 받게된 것이 첫째는 選舉가 世界에 자랑할만치 잘되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이國會와 政府가 完全히 서서 모든일을 次序로 進行하여온 緣故입니다. 그동안에 若干의 異議 意見이 있었으나 그것이 다 彼此에 나라일을 잘되게 하자는 것이 었으며 어떤 惡意惡感으로 한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民主主義 發展의 體驗입니다. UN의 決議와 世界 各國에서 우리를 同情하는 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오직 感謝할뿐 입니다. 五十選舉가 難局中에서 進行되어 어떤 議員들은 衣服도 相當히 못가지고 올라와서 居處와 宿食凡節이 未備한 中에서 많은 苦生을 忍耐하며 大事에 努力해온 것을 조금도 도움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음으로는 平安히 지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多少간 便宜를 도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經濟力이 整頓되기 前에는 完全解決策이 어려울 것이며 이에 對하여는 當局들이 晝夜 努力하는 中임으로 漸次解決될 希望을 가지고 있으니 貨幣問題가 速히 解決되어서 여러분의 困難도 免하고 民生塗炭도 救濟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閉院式을 行한後에는 이 다음에 召集은 國會는 第二回開院이 될 것이니 앞으로 緊急히 討議될 만한 事項을 몇가지 說明하고자 합니다.

一은 南北統一 問題입니다. UN代表團이 三・四週日內로 到着될 것
 입니다. 이 분들이 宣言하고 오는 目的은 南北統一을 하루 바빠 시키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UN과 協議해서 以北에 自由選舉를 進行해서
 百名內外되는 以北議員들을 選出하여 國會의 비어 놓은 자리를 補充하
 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願하는대로 順調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一定한 計劃으로 舊關해나가므로 모
 든 障害가 다 削除되기를 力圖할것 입니다. 一年前에 우리앞길이 泰山
 大河와 같이 막혔던것이 오늘 이것이 다 풀린것을 우리는 거울삼아서
 攄心邁進하면 또 이와같이 앞길이 열린것을 確實히 믿는 바입니다. 同
 時에 政府에서는 以北各道에 知事를 任命할 터이며 三八線 關係로 赴
 任은 遲滯될지라도 一一히 任命하여 闕席이 없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上議院 組織입니다. 憲法이 制定되기 直前에 兩制을 쓰기로
 內定이 되었으나 憲法에는 上院制度를 만들고 單院만으로 大統領 副
 統領을 選舉하면 問題가 될 憂慮가 없지않아서 兩院制는 憲法에서 빼
 고 한것이니 그 意圖는 다 充分히 諒解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
 會에서 作定할것은 上院法과 規例를 定하여 어떻게 組織하며, 어떻게
 選舉할 것인가를 決定하고 進行하는것이 順序에 必要할 것이예요. 이
 에 對하여 여러議員들은 다 充分한 計劃이 있을줄 아는바 입니다. 셋
 째로는 憲法改正 問題입니다. 巷間에 流行하는 말을 들으면 第二回國
 會에서 우리 憲法을 改正하여 總理內閣制로 고쳐 定하기로 몇몇 國會
 議員間에 協議가 되어 贊同者를 求하는 中이라 하는데 巷間風說이 너
 무 많이 流行하므로 이것을 다 取信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或 한두議
 員中에 어떤 意圖가 있을지라도 破議하는것이 智慧로울 줄 압니다.

첫째로는 國會議員中에 國權이 確立되어서 政界의 風波가 적기를

바라는 議員들은 決코 이런 意圖로 政治上 動搖를 贊成치 않을 것이요. 둘째로는 民衆이 이것을 支持안할 것이니 설령 多大數의 表決을 얻드라도 이것이 一時的인 波動만 만들것이요. 結局은 施行은 못될것입니다.

지금 愛國愛族하는 公正한 男女의 願하는 바는 政權이나 地位다툼으로 粉爭 分裂을 시키는 弊端이 없이 全的으로 合心合力해서 서로 받들며 날로 富強 文明의길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國務總理制를 만들수가 있을지라도 이制度를 만들면 政府가 몇일에 한번씩 變動되어서 들고나는 속에 歲月을 虛費하며 難局을 이루어 國濟民生에 急急한 事務를 處理치 못하고 지낸다면 안으로는 우리의 損失이요, 밖으로는 남의 嘲笑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問題에 對하여 再三 生覺하여 行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는 米穀買入에 關한 問題입니다. 우리가 絶憎하던 소위 供出을 廢止한 것은 누구나 다 爽快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을 爽快히하는 우리로는 더욱 몇감질 努力해서 이것을 廢止하고라도 米穀收集 妨害가 없이 되어야 우리가 果然 同胞를 사랑하며 우리의 權利를 尊重히 여기는 本意가 될것입니다. 民族은 죽거나 살거나 自由로 내利益이나 保存하겠다는 사람은 決코 民主國國民의 資格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男女는 이에 特別히 職責을 完遂하여 自己들이 먹고 남은것은 내놓아야 하려니와 米穀을 藏取하고 아니 내놓는 사람이 아니 내 놓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各個人의 職責입니다. 某某處에서 들어온 報告를 듣건대 어떤 富豪들은 極少額을 내놓고 남들을 勸하여 많이 내놓도록하고 自己의 所有는 감추어 두어서 暴利를 圖謀한다 하며 或은 富者들이 쌀을 사서 감추어두는 弊端이 있다하니 이런 不義와 不法的 行爲는 威力으로 禁止하지 아니할 수없

는 것이니 將次는 警官이 이런 집을 ——이 調査해서 米穀을 감추어 犯法하는 者는 엄중히 處罰할 것이요, 穀食은 赤沒할 것입니다. 여러 議員들은 各其 그 選舉 區域에서 모든 同胞들에게 勤勉해서 이런 處罰에 걸리지 않도록 勸告하고 도와서 後悔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努力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靑年團體 統合問題입니다. 靑年團體가 自意로 解散하고 統合을 이루어 大韓靑年團이라는 것을 統一公布하는 中인데 어떤 靑年團體中에서는 아직도 同一한 行動을 取하지 아니하고 觀察하고 있는 模樣이니 얼마前에 國會에서 提議한 案件이 있음으로 이 案件의 意圖를 따라서 統合이 充分히 成立되고 있는 中이니 未久에 모든 靑年團體가 하나로 될것 입니다. 그런後에는 民間에 援助를 請求한다든지 財政을 強要한다든지 하는 弊端이 다 없어지고 그中에 或 不忠不純한 分子들이 있으면 ——이 淸刷해서 어떤 政黨이나 어떤 個人의 附屬物이 되지않고 純全한 愛國運動으로 破壞分子들을 制裁하며 殺人放火로 叛亂을 圖謀하는 地下工作을 撲滅할 것이니 國軍과 警察의 後援이 될것이요, 治安保障의 有力한 機關이 될것 입니다. 이에 對해서 國會에서나 國務會議 決議로 經濟上 援助가 必要하니 여러분이 신중히 生覺하시기를 바라는바 입니다. 말이 長廣해서 未安하나 나의 生覺의 진절한 몇條件을 들어서 여러분의 材料가 될까 한것이니 誠心껏 協調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1 年 12 月 18 日

大統領 李 承 晚

第2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여러분! 오늘은 우리 憲法과 國會法에 의한 第1次定期會期가 開始되는 날입니다. 지나간 半個年 동안에 우리 特別會期中에 本國會에서 直接이나 間接으로 일한 것으로 말하면 저으기 허물이 없었다는 것도 全體 우리 同胞들에게 依賴를 求할 만한 일입니다. 다시 이 定期會期가 始作되는 이 지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가지의 일을 잠간 考察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새로이 建立된 政府를 보다 더 強化하고 우리 民生들을 安定시키는 任務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統一을 完成할 일, 國防을 充實하게 할 일, 産業을 振興시킬 일, 教育을 發展시킬 일 등등의 모든 가지 가지가 우리에게 賦與되어 있는 課題입니다. 그 가운데도 첫째, 受命된 政治理致의 政治라고 할까 깨끗한 政治 또는 地方自治의 實施, 治安을 確保하는 것, 土地를 改革하는 것,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는 것, 우리 國土를 한 時間 빨리 統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重要的 課題 가운데 時刻이 急하고 暫時라도 遲延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任務이고 우리의 또한 使命인 것입니다.

나라의 일은 오직 우리 國民들이 分工合作하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고 새로이 한테 하는 것은 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各自 그 職場을 지키면서 各自 그 責任을 다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所期の 收穫을 얻을 것이며 目的을 達成할 것입니다. 우리 國會에서는 오직 法律을 세우고 모든 가지의 意見을 내고 모든

가지의 建議을 하는, 이 職場에 우리는 責任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누어 맡을 責任을 다 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가지의 重要한 課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데에 도움이 되고 같이 힘쓰는 本意가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會期에 있어서 우리들은 應當 民主主義를 우리 몸소 躬行 實踐하는데에 注意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지로 大韓民國의 國會인만큼 民主主義의 儀表이며 方向인 것입니다. 國民 各自 各自가 民主主義를 實行해야만 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 國會에서 먼저 우리가 民主主義를 實踐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나간 會期 동안에도 우리들이 이 點에 特別히 注意해 왔지만 이번 會期에도 더 特別하게 民主主義를 實行하는 方面에 우리는 注意해야 될 줄 압니다.

나라의 일은 分工合作하라고 말하지만 三權이 分立된 가운데에 行政府·司法府·立法府 세가지 部門은 언제나 和沖共濟하고 相互 援助하는 實相이 한 分 한 秒 동안이라도 缺陷되어서는 안될 줄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는 協同하는 精神을 發揮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새 會期가 開始되는 이때에 우리는 民主主義의 行動을 特別히 자중하고 注意하고 우리의 大韓民國을 泰山盤石 위에 놓아서 萬代의 基礎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거의 우리들은 허물이 없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몸소 나라에 바친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國民의 代表로 있는 同志들은 永久히 다같이 努力할 바 이지만 特別히 오늘 開始하는 이 會期에 더우기 注意하고 더우기 努力해야 지나간 特別會期中에 저으

기 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 同胞들에게 依賴를 보는 것보다 더 낮게,
더 크게, 더 많이 우리 同胞들이 두텁게 바라는데에 저바림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물이 높으면 배도 높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議
員들이 本 會期를 통하여 正確하고 誠實하고 모든 가지에 一切 最上
을 다 함으로써 不肖한 本 議長도 여러분에 追隨하면서 참여하여 큰
허물이 없을 것과 若干의 榮譽의 한 몫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期約하
는 것입니다. 이 때까지의 말로 本 會期の 開始되는 第1日 開會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檀紀4281年 12月 20日

國會議長 申 翼 熙

閉會式辭

오늘 우리 大韓民國 國會의 第1次定期會 閉會式을 舉行함에 際하 猥褻히 議長의任에 있는 나 榮光을 가지렵니다.

우리 國會는 지난 해 12月 20日에 第1回의 定期會議를 開始한 以來로 法定期間 90日과 追後 院議로 延長한 40日을 合하여 130日 동안에 開會次數를 88次를 거듭하는 中 法案으로 地方自治法案, 農地 改革法案 等 緊切重要한 法案 多數와 4281年度와 4282年度의 2個 年度 歲入歲出總豫算案을 通過하였읍니다. 그 案件에 있어서는 적은 것 같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莫大하고 緊切한 것 뿐입니다. 모든 案件을 審議하고 討論하고 通過하느라고 各該 關係 있는 常任委員會와 全院委員會와 本會議에서는 때로 午前 午後에 繼續하는 긴 時間의 會議와 甚至於 徹夜의 會議까지 열고 一切의 勞苦를 不辭하고 協心協力한 우리 議員 同志들은 우리의 國民의 期待가 許與한 代議의 任務를 幾分이라도 다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찌 우리 議員同志들의 業績이라 誇張하겠읍니까 마는, 우리 議員同人 自身으로는 自安自慰를 느끼는 同時에 一般 國民同胞들 앞에 向하여 큰 過誤와 隕越이 없다 고만은 告할 수 있는 바입니다. 草創하는 우리 大韓民國의 일인지라 우리 國會인들 어찌 不足과 缺陷이 없기를 期待할 수 있으리요. 마는 우리 議員들은 오직 우리의 新生 大韓民國의 基盤을 安全 且 確乎히 奠定하기 위하여 政府를 支持·育成·強化하는데 餘力을 넘기지 아니 하는 것 만은 이 愚衷이야말로 天日이 可表일 것입니다. 本意 아닌 無

聊한 批評은 內部에나 外部를 勿論하고서 두어마디 所感을 말하여 式辭에 代身하는 일이 間或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計較치 않고 毅然히 繼續奮闘할 것입니다. 政府方面에 向하여 付託하는 바는 民主政治에 基盤인 地方自治組織法과 全國 民生問題解決方案의 骨幹이 되는 農地改革法을 特別히 全國 民意에 鑑照符合하여 休紙施行이나 猶豫가 없이 實施하기를 冀望하는 바이며 通過한 豫算案에 있어서 每一個 款項目節의 實際收支에 있어서 一分一錢이 모두 다 우리 國民의 血汗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毫末의 過差가 없도록 注意하여 주기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나는 今次 全 會期를 通하여 各種 會議에 오직 國事를 위한 寶貴로운 努力으로 不眠不休하면서 勞苦를 애끼지 아니하신 우리 議員同人 同志 여러분께 向하여 眞摯한 敬意와 甚深한 謝意를 아울러서 表하여 드립니다. 閉會期間임에 있어서 愛國保重하므로 健康과 愈快를 保有하시며 國內各地의 여러분의 各種 工作에 努力하셔서 多大한 收穫을 얻어 次期 會議에 出席하심과 同時에 많이 貢獻하여 주시기를 祝禱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2 年 5 月 2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 2 回 國會閉會式)

議長 議員 여러분 오늘 第一回大韓民國國會을 正式閉會하시는 자리에 機會를 주셔서 暫間와서 마음에 가득한 誠心으로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成功하신 것은 정말 致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選舉하기 前에는 모든 浪說과 憂慮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總選舉가 되면 亂離가 난다고 하고 總選舉가 되면 共産黨이 다 차지한다고 그리고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政府를 세워도 몇달이 못가서 다문어진다는 그러한 소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런말 저런말 많이 있어서 民心이 많이 混亂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五·十選舉가 全國에 일어나서 世上사람 알기에 큰 成功이라는 소리가 일어나게 되었든 것입니다. 外國新聞記者들이 「유·엔」代表團들과 같이 나가서 여기저기 尋訪할때에 어느곳 村落에서 어떤 婦人들이 아래들을 등에 업고서 새벽부터 나와서 選舉하는데에 投票하러가는 것을 보구서 가 물어봤대요 무엇하러 나가느냐고 하니 投票하러 간다고 投票는 왜 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投票해서 우리 政府를 組織해야 獨立을 한다고 그러드래요. 이것이 外國新聞에 퍼졌어요. 시골에 無識한 이러한 女人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보면 全國百姓들은 다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投票한 것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美國도 百七十年동안을 民主主義로 試驗해온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韓人들은 처음으로 行하는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보기에 부끄럽다는 소리까지하는 親舊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美國이 처음으로 總選舉할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큰 盛況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國會가 組織되기 前에 外國

親舊들이 美洲에 있었을적 부터도 우리 이야기한 親舊들이 몇 있어서 「뿌린스톤」大學校에 「닥터·스라이」라는 사람을 請해 가지고서 우리 政府가 서게되고 우리 國會가 서게되면 憲法을 좀 校訂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憲法顧問으로 그냥 請해서 나하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親舊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韓人들이 憲法을 定한것을 다보아 주겠다고 여러가지 생각했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國會에서 憲法委員들을 定해는 後에 憲法委員들이 서로 앉아서 憲法을 만들어낸 것을 남들이 말하기를 韓人들이 當身네들이 만들었는데 잘되었다고 稱讚하게 된것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後에 여러분들 밤낮 努力하신 以後에 多少間 立法府와 行政府사이에 異論도 좀 있고 또 軋轢도 좀 있었다는 所聞이 밖에 나왔지만 그것은 民主陣營에서 當然히 그만치는 있어야 할거고 없으면 오히려 심심했을 것입니다.

그만치 나갔다는 것은 世界사람들이 알기는 立法府는 立法府대로 相當한 立法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行政府는 行政府대로 잘한다고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가는 方式이 民主主義的으로 나간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들을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勿論 立法府와 行政府와 各各 다른 意圖가 있다든지 政黨이나 派黨思想을 가지고서 政府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國政이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破壞하려고 하는 이러한 主義가 있어서 싸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全體가 憂慮할 것이고 남에 口舌를 듣겠지만 얼마만치 갔다가서 法的으로 鑛定해 가지고 잘 해나가는 것을보면 우리가 서로 致賀할만한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읍니다. 시방보면 남의 나라에서는 그동안에 總選舉를 몇번씩을 한다고 합니다.

政府를 몇번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憲法을 가지고 韓國會에서 여전히 꾸준히 해나와서 지금 正式으로 다 맨들어 가지고 지금 처음 一回 國會가 正式으로 完全히 閉會하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 하나님께 感謝해야할 것이요.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議長 副議長以下 여러분에게 切實히 感謝한 마음을 안가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土地改革案을 通過하신것은 全民族이 다 歡迎할 것입니다. 一般에서는 늘 憂慮하기를 土地改革을 한다고 하지만 土地改革이 못되리라는 念慮을 가졌든 사람들이 地方이나 京鄕에 없지 않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밤낮 밤을 새워가면서 애를 쓰고서 通過해 놓니까 많은 사람들이 憂慮를 가지지않게 되었습니다. 共產分子가 全國을 破壞하려고 할때에 第一많은 民衆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農土改革問題입니다. 이것이 萬一 通過못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이 있을 것이고 波動도 多少間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밤을 새워가면서 通過해 주셔서 民間이 安心이 잘 된 것은 여러분께 感謝하는 바입니다.

勿論 土地주는데 對해서 우리가 地主들이 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생각을 가졌든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이라도 해서 地主들에게 過히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는지 모르는데 나보기까지에는 過히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만치 通過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致賀합니다. 또 豫算表를 다 通過하시느라고 여러분 밤을 새우시고 했다고 하시니 지금 議長말씀에도 밤을 새우면서 우리의 모든 愛國心으로 했다는 것은 大端히 致賀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조금 缺點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美國에서

우리에게 援助物資를 주는것을 우리가 자주 接受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해에 들어올 問題에 對해서는 美國 사람들의 技術者들이 와서 全部調査해 가지고서 經濟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것을 알아가지고 報告하려고 美國사람들이 아마 오날 며날는지 來日며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豫算表라고 하는것을 가지고 가서 美國國會에 드러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援助를 암만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提出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要請이 있는고 하니이 援助物資주는 것을 美國 사람들이 援助物資를 주는 것을 우리에게만 주는것이 아닙니다. 歐羅巴의 여러나라 그外 다른 나라에도 모든 나라에게 民主陣營으로서 싸우는 나라들에게는 美國에서 많이 援助해 주는 것입니다. 援助物資는 民間의 經濟物資로 주는 것이있고 또 軍需品으로 주어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한나라로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援助物資를 얻고 있습니다. 國會에서 이런 要請이 있어요.

援助物資를 줄적에는 그 援助物資를 받는 그 나라 國會에서 通過해 주어야 美國國會에서 그것을 그 民族들이 援助를 받기를 願한다는 것을 正式으로 通過한 것으로 안다고 그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要請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援助物資 그것을 速히 通過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問題로 해서 그것이 通過못된 模樣인데 얼마 안되어서 特別 國會를 열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에는 먼저 留意해 두셨다가 이것은 責任질것도 없고 通過 않드라도 物資주는 것을 안받는다고 하는것은 아니니까. 다만 形式으로 通過해 주실것을 바랄것 뿐이니까 그 생각을 하셨다가 이 다음에 速히 通過해 주셔야 그래야 國會에서 決議한적에 그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더 말하러 하지 않고 다

만 그동안 努力하신것을 밤을 새가면서 努力하신것을 致賀하며 大韓民主國 第一回 國會를 맡게되는데에 여러분에게 致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것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聖堂을 짓는데 有名한 聖堂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개와를 저오고 어떤 사람은 흙을 날르고 어떤 사람은 「세멘트」를 날르고 돌을 날르고 하는데 어떤이가 그 勞動者에게 물어 봤어요. 무엇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사람은 말하기를 하루 돈 六圓을 받기 爲해서 일한다. 工錢 六圓 주는것을 이것을 받기 爲해서 일한다. 또 한사람은 일을 하라고 하니가 勞動한다 하고 또 한사람 말은 우리는 聖堂을 짓노라 세사람이 똑같은 일을하는데 意圖는 달라가지고 한사람은 하루 六圓을 받기 爲해서 먹고살기 爲해서 일하고 또 한사람은 일을 시키는 까닭에 어쩔수 없어서 한다고하고 한사람은 聖堂을 짓는데 여기에 貢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밤낮 努力하시는 中에서 우리는 나라를 建設해 가는데에 이 貢獻하는 努力이 계시면 피로운것이 피롭지 않고 困할때에도 困한것을 잊어 버리고 모든일에 나갈것입니다. 第一回에 成功하신 만치 第二回도 많은 成功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勿論 世界에서는 우리를 注意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注意하는고 하니 지금 亞細亞大陸이라고 하는것이 거반 다 共產化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共產化를 안할 作定이라고 하는것은 世上 사람들이 알만한 것입니다. 왜 共產化를 안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共產化하는 것은 남의 拘束國이 되고 남의 奴隸百姓되므로서 우리가 奴隸百姓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예요 남의 拘束國으로 다죽었다가 살아난 나라이므로서 지금은 무슨 意見이든지 다죽어서라도 이것을 免할 作定이라고 하는 決心을 뚜렷이 表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는고 하니 이 世界는 共産黨하고 民主主義 이 두가지가 같이 기쁘게 平和롭게 살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생각들 하시면 이다음 내가 죽은 뒤라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美國의 우리 親友 되는 사람들도 내 말을 고지 안듣는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둘中에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져야만 世界가 平和하고 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것은 民主主義 사람들이 가만히 앉어가지고 남의 拘束國되기를 接收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早晚間에 둘이 一勝一敗를 決定할것 인데 우리로서는 世界가 다 共産黨이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民主陣營의 福利自由를 누리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에 成功 될줄 믿고 우리가 한길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것을 굳게 지켜가지고 서 나가는 中에서 얼마안에 南北統一을 해가지고 世上에 자랑할 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실것을 여러분들에 附託하며 나 이 사람도 그것을 爲해서 끝까지 힘쓸 決心입니다.

檀紀 4282年 5月 2日

大統領 李 承 晚

第3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지난 4月末에 定期國會를 閉會하고 이제 다시 1個月 豫定으로 오늘부터 臨時國會를 열게 되는데 대하여 簡單히 두어 마디로써 式辭를 베풀려합니다. 議員同志들은 應當 休會中 20日 동안에 各 地方에 行하여 現下의 民意가 어디 있는가를 잘 觀察하셨을 터이니 이번 臨時國會에는 直接間接으로 이 民意의 反映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臨時國會에는 國家公務員法, 諸稅法, 法院組織法, 教育基本法, 學校教育法, 歸屬財產處理法 등의 重要한 國家機構의 礎石이 될 法案이 上程되며 또 政府로부터 提出된 特別會計인 外資運營에 관한 案件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우리 豫算의 重要한 大部分을 차지하고 모든 建設事業을 이것으로 充當하느니 만큼 그 運營과 利用에는 特別한 關心을 要할 것입니다. 이 外에 各 分科委員會의 審議를 完了한 것 또는 審議中에 있는 法案 등 數10件이 모두 今會期 國會의 通過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第2回 定期國會에서 通過된 農地改革法, 地方自治法 등에 대하여 政府로부터 前者는 修正을 要求하여 왔고 後者는 施行期日을 口實로 廢棄를 하여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國民大多數의 向上을 期待하는 것이라 하루바삐 施行되기를 期待하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實施되도록 政府의 意圖를 參酌하여 解決하여야겠고, 하나는 우리 國民의

高麗한 自治理想을 구현하는 것 입니다. 政府는 治安의 不安으로써 施行 遷延을 主張하나 이것은 政府의 見解가 바른지 國會의 見解가 바른지 여러 議員은 眞摯한 檢討를 하여 만일 政府의 主張이 根據가 薄弱하다면 우리는 憲法의 明文에 의하여 匡正한 責任이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法案과 案件은 모두 國家建設의 重要한 要素를 이루는 것이니 바라건대 議員 諸同志 여러분의 恒久如一한 奮闘를 비는 바입니다. 끝으로 特히 이번 臨時國會 災患中에 있던 濟州道에서 새로 選出된 議員을 맞게되어 반가운 일입니다. 이로써 天安을 除外한 南韓의 二百 議席이 다 채워졌으며 來 6月10日에서 天安選舉도 完了될 豫定입니다. 이 會期를 通하여 議員 諸同人 同志들의 健康과 努力으로 많은 成果가 얻어지기를 祝福하면서 式辭를 磨勵합니다.

檀紀 4282 年 5 月 21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 3 回 國會開會式)

第二回 臨時國會가 열림에 있어 大統領의 祝辭를 要請하므로 簡單히 몇가지 말하려 합니다. 얼마전 第一回正式國會閉會式에 나로서는 深甚한 感激을 느꼈던 것입니다. 議長 副議長과 國會議員 여러분이 다 나라를 爲해서는 衷心으로 晝夜奮闘해서 그중에 或 脫線되는 의사와 案件을 提出한 분들이 있었을지라도 다 공결로 붙쳐서 國家에 重大한 損害가 없도록 만들고 또 모든 重大한 問題를 正중히 解決해서 草創時期의 土囊을 公고히 만든 것을 자랑하며 치하하기에 쉬지 않는 바입니다. 只今 第三回國會를 열게됨에 對해서는 여러분에게 期待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願하는 것도 平坦한 길이 아닙니다. 泰山같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取해서 앞에 놓인 모든 障礙와 艱難을 이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民族이 다 알고 마음과 힘으로 準備하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남의 힘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바라고 勝利로 이길것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民族이 이성질과 이 기상이 없다면 우리로는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담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民族이 이만큼 決心한 準備가 相當하므로 따라서 천의 人心이 우리의 응원이 될 것입니다. 世界가 두 種類의 思想으로 共產主義와 民主主義의 두陣營이 對立하여 피생아사의 형세로 鬭爭하고 있는 중입니다. 共產主義者들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었든지 저의 나라도 저의 家庭도 저의 生命도 다 바치고 共產化해서 남의 屬國과 노예가 되기를 감수하는 分子들이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家庭과 또 우리 自由를 保障해서 다 같이 잘살자는 目的으로 우리의 목

숨이라도 犧牲해서 民主主義를 세우기로 決心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民主主義를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自由로 살수있고 우리 子孫까지도 自由로 잘살 수 있을 것이지만 共產主義에 정복을 당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몇十年 동안은 이러한 希望조차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世界가 다 赤色化할지라도 우리는 끝끝이 싸워서 죽어도 自由民으로 죽고 살아도 自由民으로 살겠다는 決心뿐인 것을 世界에 한번 表明해야 우리가 죽어도 산百姓일것ियो 살아도 榮光스러운 生命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는 모든 世界가 다 남에게 속아서 共產主義의 壓迫을 甘受할지라도 모든 民主國들이 다 自由와 獨立을 犧牲하고 共產化해서 살려고 아니할 것임을 언제든지 結局은 民主主義가 勝利를 차지하고 말것이니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로서는 조금도 躊躇나 依賴하지말고 共產分子들과는 함께 섞여서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盟誓해야 될것입니다. 이번 濟州道와 麗水 順天에서 우리 民族이 한층 더 깨닫고 官民과 軍警이 습해서 叛亂分子들은 地下工作으로도 발붙일곳 없이 하려는 決心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느니만치 政府內國會안부터 이 決心을 確實히 覺悟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警醒해야 될것입니다.

이번 國會에 上程될 法案이 許多한中 「國家公務員法案」「追加豫算案」「兵役法案」「叛亂地區復舊에 關한 福票發行法案」五月中으로 加入하여야할 「世界保健機構加入에 關한 同意案」「國稅增收法案」과 其他 諸般諸法案 特히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中 改正法律案」「歸屬財產處理法」 再審을 要請한 「農地改革法案」等은 모두가 時急을 要하는 法案이므로 國會議員 여러분이 慎重히 討議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通過하여 주시기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保健部設置에는 豫算問題로 躊躇하였으나 四月以後로 새 豫算의 整備
가 있다하니 그問題는 解決되었으나 長官은 醫師로 내야한다는 이도
있고 醫師가 아닌분이거나야 한다는 이도 있어서 아직 未定입니다.

以上에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險한 길을 걸어가며 泰山과 같은 障
碍를 이기려고 함에는 特히 愛國愛族하는 國會議員 一同은 決死勇進
할 膽量과 盟誓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이것이 오는 우리 全民族의 熱
烈한 氣象입니다. 이번 開城 松嶽山戰鬪에 우리 軍隊가 山을타서 싸워
올라가다가 앞에 共產軍이 로-치카가 길을 막아서 우리 國軍이 가까
이 갈수 없게 만든것을 보고 司令官이 누구든지 自願해서 이것을 破
壞할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하니 그 中에서 열사람이 나서서 爆彈을
안고 들어가다가 한사람은 敵軍의 彈丸에 이마를 맞아 쓰러지고 아홉
사람은 그냥 달려들어 로-치카를 다 爆發시키고 自己몸은 碎骨粉身해
서 敵軍을 擊退시킨 것입니다. 美國 사람들이 이 報告를 듣고 로버트
將軍은 말하기를 韓人들은 世界에 가장 膽大한 사람들이라고 눈물겹게
稱讚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 사람들의 이름은 獎忠壇에 올려 表彰해야
될것이며 따라서 우리 모든 산사람들은 그뒤를 이어서 우리의 몸과목
숨으로 銃과 彈丸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우리 民族의 權利와 榮譽을 保
全하며 發展시키기로 自的을 삼아야 될것입니다.

禮紀 4283年 5月 21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第3回臨時國會는 오늘로써 閉會하게 되었습니다. 5月 21日에 山積한 法律案과 追加豫算의 審議를 위하여 開會한 以來 食糧臨時措置法, 歸屬財産臨時措置法은 國會의 主張대로 通過되었고, 所得稅 및 事業稅決定에 관한 臨時措置法の 通過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現下 우리나라의 民生과 財政經濟에 重要な 法案이므로 힘써 國會의 所信을 貫徹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問題 많던 地方自治法案은 民主主義的 自治의 理想을 具現하려 하였으나 現下의 國情關係로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을 任命制로 하자 는 論이 制勝通過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民主主義的 理想으로 보아 遺憾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危難한 現下 國情關係로 現實論이 多數를 占한 듯 합니다. 우리는 더욱 健實中正한 政治的 文化的 施策으로서 文化의 水準을 올리고 모든 部面에서 民度를 向上시키는 것이 理想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過渡期的 遺憾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會議에서는 開會劈頭부터 議員釋放問題를 비롯하여 行政府와 幾多의 摩擦과 波瀾이 있어서 一時는 激化하였으나 政府와 國會는 모두 國家의 危難을 생각하여 큰 破綻에는 이르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協助와 盲從은 同意가 아니니 意識的 協調는 있을지언정 無自覺한 盲從이 있어서는 不可합니다. 國會는 國民의 代表인 選良인 것을 痛感하여 今後에도 苟히 非違가 있으면 國民의 威信을 代하여 正하고 鞭撻하는 것이 元來의 使命인 줄로 아옵니다.

오는 7月1日 第4回臨時國會가 再開되기까지 議員諸氏의 如한
健康을 빌며 모든 上程한 案件에 대한 充分한 準備를 쌓으리라고 믿
고 두어마디 所感으로 閉會辭를 드리는 바입니다.

檀紀 4282年 6月 20日

國會議長 申 翼 熙

第 4 回國會 (臨時會)

開會式辭

內外貴賓 여러분! 議員 여러분!

오늘 第 4 回臨時會를 開會함에 當하여 두어마디 말씀으로 式辭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臨時會는 첫째로 山積한 法律案 및 追加豫算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둘째로는 前番 國會에서 多大數의 意思로 決議된 것을 合理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세째로는 大韓民國의 基礎를 더욱 鞏固히 하기 위하여 議員 4分之1 以上の 要請으로 열게 된 것입니다. 法律案으로는 議員이 提出한 것으로 國會法, 反民族行爲處罰法 등의 改正案이 있고 閉會中에 外務國防委員會에서 起草한 兵役法案 등 5件의 軍事法案이 있으며, 政府에서 提出한 것으로는 豫算關係 및 財政經濟關係로는 援助物資運營에 관한 件, 麗水復舊事業의 保證融資, 韓·美間의 電力協定批准 등이 있고, 法律案으로는 法院組織法, 公務員法을 爲始하여 諸稅法 其他 教育 軍事關係 등 62件이 있습니다. 첫째로 議員提出 및 委員會付託으로 起草된 것은 開會即時로 上程하여 慎重且迅速히 通過하여야 할 것이요, 政府提出案件도 時急重要的 것이 許多하나 이것은 前番 國會에서, 國會는 行政府에 그 改組強化와 및 警察事件 負責問題가 구현되기까지 政府의 提出案件만은 審議를 拒否하기로 決議되었으니 此等 案件의 審議의 速度는 全혀 政府가 國會에 보여주는 誠意와 正比例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府에서 國會가 滿足할 만한 誠意를 보여주지 아니하여 案件審議가 지연된다면 그 責任은 當然히 政府가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前番 國會에서는, 行政府의 全面的 改組를 決議한 바 있는데 이것은 現下의 國難을 打開하기 위하여 國會가 아무리 協贊의 精誠을 다 할지라도 行政府가 國民의 信賴와 運營의 妙를 얻지 못하면 그 完遂를 期키 어렵다는 見地에서 國會는 그러한 決議를 하였던 것이니 國會는 國民의 選良인 威信과 權威로써 이 決議를 合理的으로 더욱 推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大韓民國의 基礎를 더욱 鞏固히 하기 위하여 全 會期를 通하여 一致한 步調로 協心合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國內 國外로 重大한 危機에 있습니다. 38 線에서는 祖國의 自由를 防衛하기 위하여 國防을 擔當한 青年軍人들이 피를 흘리고 넘어지며, 國際적으로는 美國의 對韓援助案이 그 나라 國會에 上程되어 불이 나게 討議를 繼續中입니다. 議員同志는 우리의 一言一動이 極히 國家民族에 關係된다는 것을 諒察하여 끝까지 이 重大한 任務를 다 하기에 互議協調의 精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特히 閉會中에 金若水副議長을 爲始하여 盧鎰煥·姜旭中·金沃周·金秉會·朴允源·黃潤鎬 등 諸議員이 國家保安法違反嫌疑로 拘禁된 것은 向者의 3 議員 起訴와 함께 不詳事이요 또 不幸한 일입니다. 우리 司法當局의 公平한 裁判을 기다리며 더욱 우리 使命을 다 하기에 忠實하기를 期하여야 할 것입니다.

檀紀 4282 年 7 月 1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 4 回 國會開會式)

國會議長 議員 여러분 第四回臨時國會를 開會함에 當하여 大統領이 親히 謁世지를 주면 좋겠다는 要請이 있어서 이 機會를 利用하여 다만 몇마디 緊切한 條件을 國會여러분에게 說明하려 합니다. 언제든지 國會議員 여러분이 要請이 있다면 나로는 誠意껏 協議하는 뜻을 決意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國會開會時에도 臨席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다시 開會할적에 나의 意思를 몇가지 말하는것이 좋을가하여 오늘 臨席하기로 協議된 것입니다.

내말을 始作하기 前에 國會와 政府의 全民族이 다같이 놀라하며 슬픔을 當한 白凡金九先生의 被害事件에 對하여 우리가 서로 吊辭하는 뜻과 慰勞하는 말을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터입니다. 元來 暗殺이라는 것은 開明한나라사람들의 極히 꺼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開明한 사람으로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크게 수치롭게 녀기는 바이며 더욱이 國家에 特殊한 指導者요 愛國者로서 우리가 다같이 崇拜하는 金九先生이 이런일을 當한 것은 우리가 더욱히 얼굴을 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國家의 變을 因緣하여 우리가 一切로 哀痛하는中에서 우리 民族의 團結心이 더욱 鞏固해서 民國基礎를 建設하는데 더욱 많은 貢獻이 된다면 이는 金主席의 平生 나라를 爲해서 貢獻하자는 目的이 完遂되는 것입니다.

政府와 國民이 合해서 國民葬을 舉行함으로 마지막 迎生送死의 錢送을 하는데 遺憾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몇가지 緊切한 條件을 들어서 國會와 政府가 協議的으로 進行해야 되겠다는 要點을 表意하고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行政 立法 司法 이 區別로는 세가지로 나누어 있으나 政權을 鞏固히하며 民生을 安全케 하자는 目的은 다같은 것이니 술하나이 발이 셋 달린 것과 같이 발이 平均한 位置에서 서로 맞이며 도어야 술이 술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발이 길거나 짧으면 全部가 다 바로 잡히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三權合作이 이렇게 重大한 것은 더 說明이 要求치 않는 것입니다. 國會議員中 몇분은 政府에서 協議하는 힘이 不足하다는 批評도 있으나 나로는 아직까지 이런 批評이 公平한 正論이라고 보기 어려운 形便입니다. 내가 이말을 하는 것은 行政府에서 다 잘하고 立法府에서 다 잘못했다는 意味가 아니요 아직까지는 行政府에서 法어년 條件이나 또 國會에 觸感될만한 말이나 일을 한 줄로 생각되지 아니하며 우리로서는 協調하려한 것이 번번히 誤解를 일으킨 것 같으니 이것은 國會議員 여러분이 다 誤解를 가지고 故意로 했다면지 行政府에서 하는 일은 다 不公平하게 보아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遺憾되는 것은 國會內의 몇몇 議員이 우리 民生에 對하여 不適當한 意圖를 가지고 愛國 선동해서 惡感을 일으게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인데 어떤 때에는 國會議員 여러분이 이를 充分히 覺悟못해서 끌려가는 弊가 있는 것을 弱點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로는 國會內의 公平한 愛國志士가 大多數 이니만치 언제든지 모든 問題가 既決되는 날은 나라이 도움이 되고 同族에게 福利가 될 줄로 믿는 까닭에 別로 憂慮는 아니되고 지내는 것입니다. 目下에 急한 條件을 몇가지 말씀하려면 첫째 追加豫算案이 여기에 하나 둘 셋으로 백했으나 이것은 輕重의 區別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적을 것뿐입니다.

이것이 通過되어야 政府에서 모든 일을 次序로 進行할터이므로 이
以上 더 延施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萬一 이 案이 不可하다면
否決이라도 되어야 行政府에서 어떻게 할것을 알고 지내나갈터이니
여러분이 깊이 注意해 보시며 곧 協議通過될줄로 믿는 바입니다. 다
음에는 國稅에 關한 諸法案이 大端時急합니다.

우리民衆이 그 前에는 稅納을 아니받이기 爲해서 여러가지로 逃避하
여 收俸이 極히 微弱하였으나 民主政府가 樹立된 以後로 稅納收俸이
많이 增加되었다고 우리 親友들이 致賀하며 韓人들의 愛國心을 可히
알 수 있다고 한것이니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稅納을 公平히 매여서
하루바빠 實施해야 할것이 가장 急하고 또 繁한 일입니다.

다음은 公務員法 이러한 緊急한 것은 政府官吏들의 職務와 責任을
이에 다 昭詳히 表明할 것이므로 이것을 모르고 안저서 國事를 行
함에는 많은 障礙를 받게 될것이니 이것도 早速한 時日內에 通過公
布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農地改革法案이 通過된 것은 여러분
의 많은 努力으로 된것이니만치 깊이 多幸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그
러나 政府에서 多少 躊躇하는 點은 地主에게 補給할 金額을 政府에
서 많이 負擔하게 되니 農民들에게 厚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다
合意하는 바이지만 地主들의 將來生活方途와 또는 政府에서 많은 負
擔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한가지 어려운 問題이므로 政府에서 若干
改正案을 提出한 것이있으니 이에 對해서 多少 參照한 後에 最後決
定이 速히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歸屬財產臨時措置法은 이것이 即時 通過되기를 바라고
事實을 若干 說明해서 提出된 것인데 至今까지 延施하여 온것은 果

然 國家의 損害가 如干히 아닙니다. 所謂 敵產家屋으로 말할지라도 國有物로서 主人없는 物件처럼 보게되는 理由로 하루를 지나갈수록 유리창을 떼어가며 木材와 建物에 破傷이 增加됨으로 이것을 하루바삐 措處해야만 巨大한 國家財産을 保全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이 이것을 覺悟하실줄 알고 이법이 速히 通過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萬一 이것이 無期限하고 延施한다면 더기다릴 수 없으므로 臨時條例를 定해서 進行하려고 한것이니 國家의 財産을 애끼는 마음으로 하루바삐 通過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모든 劇場과 工場을 다 팔아서 民有物을 만들어야 運營이 바로되고 협잡의 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條件에 함께 붙여서 더 遲滯말고 通過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福票發行法案에 對해서는 이때까지 遲延된 것을 나는 大端히 意外로 알고 지내는 터입니다. 麗水 順天 濟州道 叛亂事件以後로 罹災民 救濟策을 政府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므로 福票를 發行해서 民間의 많은 財産을 얻어 相當한 救濟策을 세우기로 한것인데 벌써 몇달이 지난것입니다. 이 法案이 通過못되어 罹災民들의 困難之境은 말로도 다할 수 없고 눈으로 보기어려운 形便입니다. 이 福票發行을 不道德한 노름의 性質로는 볼 수 없는 것이요 오직 救濟策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도 速히 通過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反民法에 對해서는 내가 自初로 여러분에게 勸告한것이 무슨 行政當局의 地位나 勢力을 固執한 것이 아니요 오직 立法府의 權位를 保護하여이 反民法問題를 速히 解決 削除하려는 것이 行政府 唯一한 意圖였으니 立法府에서도 조금이라도 異議없을것을 믿는바입니다.

그러므로 調査委員들은 調査만해서 登錄해야 몇百名 몇千名 或은

몇萬名이라도 다名單을 만들어 行政府에 넘기면 行政府에서는 各人의 有無罪를 묻지않고 다 名錄에 따라 잡아두고 立法府에서 定한 特別檢察部와 特別裁判部에 넘겨서 法대로 處決할것이라고 公言한 것이나 그대로 速히 進行해서 몇 週日안에 이 名錄을 만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다 奮闘努力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萬一 이를 憑籍해가지고 如前히 法外이일을 繼續進行해서 民心이 煽動되며 輿論이 波動되여 反民法이 自然 無力하게 된다면 國會의 威信과 民國에 損害가 莫大한 것이므로 이에 對해서 國會議員 여러분이 速히 協議進行시기를 付託합니다. 萬一 이대로 또 몇週日을 끝나간다면 行政府에서는 그저 放任할 수 없으므로 調査委員을 따로 내시라도 即時이 反民法을 執行할 것입니다. 이것은 國會를 威脅하는 말로 듣지마시고 오직 緊急한 國事를 處理해야만 될 必要를 깨닫는 責任心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政府에서는 國會를 尊重히 하는 本意로 이때까지 忍耐하고 기다려온 것이나 國會에서 이것을 諒解하는 本意로 政府의 義를 너무 疎忽해 생각지 마시고 하로바베 이 法案을 通過하셔서 重大問題가 速히 處決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付託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西洋사람이 말하기를 民主建設의 어린 애기라고 그러니다. 사람의 生命은 어린애때가 第一 危殆합니다. 왜그리나하면 어릴적에 우리가 넘어진 것을 바로잡아서 이것을 保護해 가지고서 長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生命이 危殆한 것입니다.

우리의 重大한 責任은 國會나 政府는 第一重大한 責任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保護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第一 큰 責任

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대로 協議를 해서 對內對外를 莫論하고 公文을 돌려가지고서 우리의 앞길을 解決해 나가서 우리 時局의 어려운 問題를 잘 處理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付託합니다.

그리고 些少한것보다도 좀 큰것을 重要的것을 먼저 作定해서 民國의 民衆이 國會와 政府에 對해서 마음을 더욱히 懇切히 만들기 爲해서 世界의 사람들이 잘한다는 소리가 連續해서 나오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檀紀 4282 年 7 月 1 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第4回臨時國會에서는 國民皆兵의 基礎가 되는 兵役法案과 官吏들이 國家에 奉仕하는 데에 準備할 公務員法案을 爲始하여 營業稅法案, 法院組織法案, 地方官署設置法案 등 幾多 重要法案이 通過된 것은 特記할 일이며 其他 租稅, 產業等 當面한 措置案에도 많은 貢獻을 하였습니다. 前番 國會以來 行政府와 多少의 문제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國會는 이 國家危難한 時期를 깊이 省察하여 모든 것을 高處大局으로 보아 모든 區區한 見地를 超越하여 國家의 緊急한 法案通過와 施政協助에 힘썼습니다. 行政府의 過誤를 指摘 糾彈함이 國家 國民에 奉公하는 國會의 使命이라면 國家를 위하여 一切의 相持를 保留하고 要請되는 緊急案 通過에 全力한 國會의 態度에 대하여도 全國民이 正當한 批判이 自在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會期中에도 國際的으로는 大西洋條約加盟 各國들이 續續 그 條約을 批准하고 太平洋同盟案이 極東諸國間에 眞摯하게 論議되고 있으며, 國內로는 38線에 依然히 日夜로 銃聲이 들리는 中이요 地域的으로 있는 苦害는 民心에 影響이 없지 않습니다. 이 內外多難한 때에 爲先 會期에 의하여 이번 國會만은 一但 閉會하는 것이나 臨時追加豫算을 爲始한 幾多의 法案을 審議하기 위하여 月餘가 지나면 다시 臨時國會를 열게 될 것입니다. 閉會中에 議員同志 여러분은 懸案의 討究와 民意의 把握에 힘써서 次期 國會에서도 더욱 더 民意에 報答하는 바 있어야 할 것입니다.

閉會中 議員諸氏의 健康을 빌며 더욱 奮闘奉公의 實을 舉하시기 바
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2 年 8 月 1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第5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第5回國會는 오늘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今年에만도 이미 2次的 臨時國會를 열었으나 그것은 모두 國會自體로서 그 必要에 의하여 集會되었는데 이 번만은 大統領으로부터 臨時集會의 要請이 있어서 열게 된 것입니다. 이번 會期에는 前 會期에 通過되었던 法院組織法의 再議를 始作해가지고 歸屬財産處理法案・諸稅法・軍事關係法案・教育基本法案・協同組合法案 등 60餘件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나 財政・經濟・國防・教育 등 모든 重要國策에 關聯된 것으로 慎重且迅速한 審議通過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特히 今般 會期에 政府로서 提出할 一部 追加豫算은 일이 美國國會의 對韓國援助案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對內 對外로 重大한 影響이 있는 것이니 議員諸位는 眞摯하게 檢討審議하여 우리 國策推進에 秋毫도 遺憾 없기를 期하여야 겠습니다. 지난 閉會中에 國家保安法違反 其他 嫌疑로 몇 議員이 拘禁된데 대하여는 事件이 檢察의 손에 있어 그 起訴與否는 未定인 만큼 그 歸結을 기다리거니와, 國民의 選良中에서 이러한 嫌疑를 받아 國民으로 하여금 疑訝와 失望을 품게 한 것은 자못 寒心痛歎할 일입니다.

國會議員自身으로서도 더욱 自肅自警하여 苟히 國民의 疑訝를 살만한 嫌疑를 받지 않도록 하려니와 政府도 또한 事態의 重大性和 國內 國外로 미치는 바 影響을 考慮하여 法の 運營에 慎重이 期待되는 바입니다. 大概 立法・司法・行政의 區分은 그 任務限界에 대한 區分이요 그 어느 一部の 威信問題 든지가 對外的으로는 國家全體에 대한 威信에 影響된다는 것을 深思熟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으로 國會가 通過한 法案에 대하여 大統領의 異議로써 再議를 要求할 수 있음은 우리 憲法에 明示되었으나 再議要求는 大體로 萬不得已한 事情에 局限할 것입니다. 多少의 意見差異로써 再議의 要求가 頻發하게 되면 이것도 亦是 國家全體의 威信에 影響되는 바 없지 아니합니다. 以上の 두어가지 問題는 司法・行政의 關係當局과 充分한 協議折衝을 期하여 新建國家로써의 權威와 尊嚴을 宣揚하는 데 힘쓰려니와 議員諸位도 今後 더욱 自警自肅하여 一層의 慎重을 期하기 바랍니다. 閉會中에 諸位는 各 地方을 巡歷하여 民心의 動態를 살피고 民意의 所在를 把握하시었을 터이니 그 蓄積한 精力과 抱負를 기울이어 國政 審議에 努力貢獻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2 年 9 月 12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式辭(第5回國會開會式)

오늘 第五回國會臨時會議를 開會하는 자리에 大統領의 敎書가 있으면 좋겠다는 意圖下에서 몇가지 提出된 政府의 緊急案件을 簡單히 說明하여 臨時開會의 必要한 理由를 알리고자하는 바입니다. 國會創立以後 大統領의 特別召集으로 國會가 열리게 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議員여러분이 立法府의 責任을 지신以後로 國事に 晝夜努力해서 많은 成績을 보이게 한것은 우리가 다 感謝히 여기는 同時에 이번休會中 넉넉한 時日을 가지고 相當히 休息할 機會가 있었던것을 다停止하고 特別會議를 召集하게된것은 甚히 未安함을 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國事に 緊急한 問題가 있을적에는 여러분은 手酷를 생각치않고 또다시 誠心을 다하여 鞠躬盡瘁하기에 躊躇치 않으실줄로 아는바입니다. 國事に 緊急한 案件을 몇가지만 說明할터이니 깊이 注意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歸屬財產處理法입니다.

이 歸屬財產問題에 對해서는 數三次討議가 있었으므로 더 解釋을 要求치 아니하며 오직 그 緊急한 關係만을 말하려 합니다. 既往에도 屢히 公開로 陳述한바이지만 歸屬財產은 하루바비 民間放賣해서 私有財產으로 만들지못하고는 하루라도 더 遲滯하면 그만한 損害가 國家經濟에 미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敵產住宅 七千九百餘채와 企業體二千二百餘所와 劇場四十餘곳을 政府에서 臨時로 保管하고 있으나 官舍로 所用할 住宅 몇 百채와 重要한 機械工場 百餘곳과 劇場으로서 大邱 釜山 三處에있는 國立劇場을 除한外에는 다 民間에 放賣하여 私有物로 만들어야 집없는사람이 집이 있게되며 企業家들이 工業

을 發展시킬 것이며 文化人들이 演藝劇과 映畫를 發達시키게 될 것이니 이에 對해서는 官民間에 아무異議도 없이 一致된 意見으로 하루바비 進行해야 할 것인데 至今까지 끌어온 것은 經濟上 莫大한 損失이요 民族生活에 支障이 많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遲滯된 것은 權力을 가진 紳分들이 多少間 私事關係가 있어서 故意로 延拖시켰다는 評論이 있기에 이르렀으나 이번에 또 遲滯해서 延拖하게 된다면 政府閣員들이나 國會議員 여러분이나 民間의 많은 批評을 免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 機會를 잃지 말고 最善의 努力으로 即時 이 法案이 通過하시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이 問題에 따라서 한가지 添付하려는 意見은 機械工場을 賣下할적에는 지난번 農地改革法案으로 農地를 바친 既往地主들이 機械廠을 차지해서 工業을 發展시키도록 特別히 注意하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財政家들은 土地로 資本을 삼아서 國內經濟의 土臺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所有土地를 다 내놓은 것은 國民의 公益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資本家가 없이 工業을 發展하려면 極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地主들이 모두 다 生活길이 없게 되면 經濟的發展이 遲滯될 憂慮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前地主들中에서 工業을 主張할만한 技能이 있는 사람에게는 特別한 機會를 주어 相當한 工場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圓滿한 效果를 줄 줄로 믿는바입니다.

追加豫算案

지난번 豫算案件이 提出되었다가 다시 保留시킨 것은 重大한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私家나 國家를 勿論하고 財政上 收入支出에 豫算이 均衡되지 못해서 收入이 支出을 堪當치 못하게 되면 그살림을 扶持하기 어려운 것

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니 政府로서는 絶對로 收入總額以內에서 經費의 限度를 定하는 것이므로 大統領의 指示로 企劃處에 命令하여 追加豫算案中에서 緊急치않은 項目은 무엇이든지 다 削除하여 政府各機關內의 人員은 京鄕을 勿論하고 極히 주려서 그費用이 最少限度內에 들도록 만들어서 豫算의 均衡을 確實히 세우도록 하자는 것이니 이案件에 對해서 이러한 意圖를 標準삼아 速히 通過해야 할것입니다. 하루라도 遲滯되면 앞에 調整할 計策이 漸漸 어려워질것입니다. 한가지 注意해서 添付할 條件은 治安上 特別費用만은 軍警과 其他機關에 必要한 經費로서 避할 수 없는 形便이므로 이에 關한 額數는 通常豫算案에 添付하지말고 따로 세워서 特別한 方法으로 支出하여야만 될것이니 이것도 屢屢히 說明할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電力代償案件

電力代償에 關한 案件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以北電力代償로서 以前 美軍政에서 物資를 準備했던것인데 總額이 大略 九百萬餘弗에 該當하는 物資가 至今 倉庫안에 쌓여있으므로 어떤物資는 우리에게 緊急히 需用될 것도 있고 또 어떤物資는 오랫동안 倉庫에 두면 損傷될 念慮도 있음으로 내여 쓸것은 쓰고 팔것은 팔자는 意圖로 美國政府에서 이 物資를 우리政府에 넘겨준다는 條約을 成立하려는 것입니다. 이 案件이 國會에 提出되었다가 大統領指示로 保留하게 된것이니 그 理由는 美國政府에서 이 物資를 民國政府에 넘겨준 後에는 이 問題에 다시 干涉이 없겠다는 條件이 있었으므로 民國政府로서는 美國과 蘇聯이 南北을 占領한 關係者이니만치 電力代償問題에 있어서도 美國이 無干涉한 樣으로 만드는것은 우리가 원치않는 바이므로 이 條件에 對해서 駐韓美國大使와의 特別協議로 언젠지 이 問題가 發生할 때에는 美國이 協助

하겠다는 擔保가 있어서 充分히 諒解가 成立된 것이고 또한 條件은 이 物資를 民間에서 쓰든지 팔든지해서 그 代金을 貯蓄해 둘 것이나 大略 一・二年內로는 이 貯蓄金도 民國國庫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案件도 國會에서 速히 通過가 되어야만 많은 物資의 損失이 없이 處分될 것입니다.

法院組織法案

이 法院組織法案은 既往에 國會에서 通過된 것인데 大統領의 意圖와 若干 差異가 있어서 國會의 再考慮를 要請하여 다시 提出된것이므로 이 案件이 亦是 時急한 理由는 이리합니다. 우리 憲法은 三權分立으로 行政部와 立法部는 이미 法制가 成立되어 施行하는 中이요 오직 司法部만이 아직도 組織法이 서지못해서 남의 쓰던法을 依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形便에 適當치 못한 點도 많고 또 이와같이 羞恥로운 일이 없으니 여기에 對해서도 國會議員 여러분의 特別한 注意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徵稅法案

國家의 財政은 稅納으로 基本되는 法인데 稅納을 받을 法案이 八・九件되는中 아직까지 한가지만 通過된것이니 國家收入의 原則이 서지 못하고 枝葉만 다스리려면 아무 解決策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稅納에 關한 法案을 速히 通過시켜서 徵稅法制를 確立해야 될것입니다.

海軍基地法案

내가 지난번 鎮海灣에 갔을적에 우리軍艦한隻에 들어가서 視察하는 中 한房을 드려다보니 壁에 글을 써붙이기를 「본반자 忠武公을 찾아오자 우리바다」라고 한것입니다. 이것이 한사람의 意思發表라고

하겠으나 實相은 우리海軍全體의 精神입니다. 우리바다를 찾아서 保護해야 할 것은 海軍뿐아니라 우리全民族이 다같이 最先最急의 義務로 아는 것입니다. 海面을 찾는다는것은 다만 軍事上 問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經濟上 莫大한 問題입니다. 東洋모든 나라의 海面中에서 우리나라에 屬한 漁場이 가장 좋은 漁場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前에 日本漁船들이와서 우리 漁場에 侵入하여 고기를 잡는故로 우리海軍警備隊가 그들을 쫓아보냈더니 얼마後에는 親日하는 美國사람들이 日本에서 公布하기를 “맥아더” 線을 느려서 우리 漁場까지도 그 안에 包含되었으니 日인들이 고기잡는것도 막지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政府에서 “맥아더” 將軍에게 交渉한 後에 이것이 다 막혀져서 우리 漁場을 우리가 保護하고 있으나 速力있는 船舶이 몇十隻 있어야 할것이오 따라서 非常한 일이 있을적에 우리가 海面을 防禦치 못하고는 海岸을 保障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이 甚히 急한것입니다.

大韓海運公社法

우리나라의 海軍은 壬辰年 “히데요시” 大戰以後로 더욱 必要性을 느껴오던바인데 至今와서는 共產分子들이 海蔘威와 上海方面으로 漸漸蔓延하여 우리半島江山의 모든海面으로 加里拉軍과 軍器를 密送하며 섬과 海岸으로 潛入해서 우리의 糧穀과 必需品을 실어내가는等 모든 危險性을 보이고 있느니만치 우리가 이것을 다 相當할 準備로서 막지않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海軍으로서는 다른나라들과 같이 큰 戰艦이나 巡洋艦을 들 수 없는 터이므로 또 必要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大洋을 通할만한 商船을 여러隻 작만해서 우리의 工業發展과 商業擴張을 도우게 하는 同時에 이 商船들을 다 準備해서 有事之時

에는 軍艦으로 만들어 가져야 될 것이므로 至今 우리 政府에서 相當한 船舶을 사기로 交渉하고 있는 中이오 其他 漁船도 몇隻을 사서 얼마 안에 美州에서 떠나올 것이며 四千噸되는 「콜텍」이라는 배 七隻을 우리에게 美國이 주어서 未久에 올 것입니다.

몇隻은 와있는 中입니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만 以後에 찾을른 지 疑問이라고 그럽니다. 또 日本에서 찾아올배가 여러隻되므로 이것도 와싱턴에서 우리 大使가 交渉하고 있으니 얼마안에는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船舶을 大韓海運公社라는 團體에 委任해서 使用하며 保護할 것이므로 이 法案이 또한 時急히 通過되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軍事顧問團法案

美國에서 駐屯軍을 撤廢한뒤에 우리의 要請에 따라 軍事顧問團을 두어 우리 國軍訓練과 組織과 裝備等 모든 事務에 顧問團資格으로 援助할 協約이 成立된것인데 그 將校들은 五百名을 局限하고 와서 우리를 도움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必要치않게 作定될때에는 물러가기로 된것이니 이 案件도 또한 緊急한中 한가지이니 早速히 通過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海外僑民登錄法案

民國政府가 樹立된後 國權을 擴張하고 通商과 外交를 增進하며 海外僑民의 權利를 保護하고 福利를 圖謀하려는 意圖下에서 海外僑民의 登錄을 實施하는中이나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登錄을 拒否하는 者가 있으면 그는 共產分子로 他國을 지의 祖國이라하는 分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大韓民國 國民의 資格을 認證할 수 없는것이니 이에對한 法案이 分明히 成立되어야 할 것입니다.

以上은 다 우리생각에 緊急히 여기는 案件들이오 이밖에 모든 案件도 여러가지 있으나 더 提議치 아니하고 至今은 다만 國會議員 여러 분이 알고자 할 條件 몇가지를 大概 說明하리 합니다. 美國의 經濟援助案은 上下院 委員會에서는 다 通過되었으나 美國下院에서 至今 休會中이므로 不遠間 開會되면 먼저 提出해서 通過될것이 無慮하다하는 中입니다. 이 經濟援助案에 努力한 여러 親舊들中에 特히 호프먼氏가 極力으로 힘쓰는데 對해서는 感激히 여기지 않을수 없는 바입니다. 또 軍事援助案은 全部가 大西洋同盟軍資金으로 쓰게될터인데 그中 얼마는 歐羅巴의 몇나라와 亞細亞의 몇나라를 合해서 얼마씩 分配할터인데 韓國이 그中에 參加되었으니 트르만大統領이 우리에게 對해서 特別히 注意하는 故로 相當한 額數를 얻게되기를 바라는 中입니다.

大太平洋同盟問題에 對해서는 蔣介石總統과 連名으로 奎리노大統領에게 委託해서 「바키오」에서 太平洋沿岸 모든나라代表를 請하라고 委任시켰는데 至今 奎리노大統領은 自己의 代表에게 委任해서 各國과 協議를 얻는中이나 協議되는데로 請牒이 發送되면 몇나라가 參加될지는 모르겠지만 參加되는 여러나라들은 大西洋同盟의 大旨를 따라서 그와 같은 同盟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 말씀안하겠고 이 몇가지 提議한것을 여러분 特히 注意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議員一同이 國事를 爲해서 努力하시는데 以上 몇가지 重要한 問題에 對해서 充分한 協議로 圓滿히 決處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檀紀 4282 年 9 月 12 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第5回臨時國會的閉會式에 臨하여 몇 마디 말씀으로 閉會의 辭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臨時國會는 지난 9月12日 開會한 以來 約 3個月 동안 議員同志 여러분의 쉬지 않는 努力으로 2百50億圓에 達하는 追加豫算通過를 爲始하여 財政經濟에 重大한 關聯이 있는 歸屬財產處理法案, 國民의 百年大計를 爲한 教育法案, 現下 時局에 對應하려는 戒嚴法案 등 및 其他 議案들을 合計하면 67件을 通過시켜서 建國途程에 多大한 功果를 거두었으며 이를 위하여는 2回의 會期延長까지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한 말씀 할 것은 議員同志 여러분께서는 臨時國會의 性格에 對해서 特別한 認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臨時國會는 當面한 緊急重大한 案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定期國會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열게 되는 것이니 그 上程과 討議는 本來의 目標인 重大案件을 重點主義로 進行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輕重과 緩急이 엇갈려서 그 本來의 目標은 뒤로 미루고 다른 建議나 案件이 먼저 上程되어서 討議하는 동안에 所期한 本來의 目標가 過延된 感이 없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點을 좀 더 諒察하여 다른 臨時國會에 있어서는 今般과 같이 會期延長을 거듭하지 않고도 本來의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번 國會에서 人權의 擁護, 搜查機關의 一元化 問題, 治安

문제에 관한 質疑 등 여러가지 問題에 대하여 國政監査의 責任에 힘
쓴 것은 國民의 代表가 모인 國會로서 當然하고 또 正當한 使命의 行
事입니다.

다만 이것은 部分的 또는 顯著한 問題에 限하였고 國政全般에 亘한
監査가 組織的 또는 體系的이 되지를 못한 點이 遺憾인데, 오는 定期
國會까지에는 이 國政監査案을 本格的으로 開始해서 今後로는 不切히
國政을 監査하여 遺憾 없기를 期하는 것이 民主主義 國家의 國會로써
의 참된 民主政治의 實을 擧하는 것이니 議員同志 여러분께서는 이 點
에 대하여 끊임없는 考察과 立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定期國會까지 議員同志 여러분은 民情을 視察하고 民意를 把
握해서 다음 會期에 協心戮力의 準備를 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健
康과 奮闘가 如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4282 年 12 月 4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國務總理致辭（第5回國會閉會式）

大統領閣下께서 親히 나오실려고 以前時間까지 하셨습니다가 갑자기 要公으로 因緣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저를 보고 代身나와서 여러분께 政府를 代表해서 몇 말씀하라고 그래서 미처 原稿도 準備할 새없이 口頭로 말씀하게 되어서 마음에 未安합니다.

國會成立 當時 回顧할적에 여러가지의 困難한 條件이 밖으로 안으로 여러가지의 支障을 많이 주었음에도 不拘하고 國會議員 여러분의 精神的으로나 負責하는 態度로나 表現된 것은 確實히 民主主義 大韓民國의 建設을 爲해서 크나 큰 努力을 하신것이 또한 建國에 對해서 貢獻했음이 至極히 크다고 믿는 바입니다.

特別히 今般 第五次 會議은 그 性質에 있어서 時間的으로 緊急性을 느끼는 重要한 追加豫算 其他의 遲延할 수 없는 모든 法律案을 國會의 通過를 求하기 爲해서 大統領閣下가 召集을 要請하신 臨時 會議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동안에 여러분의 血勞는 自他가 公認할 만큼 컸으며 또 따라서 成果가 大端히 컸었습니다.

時間과 함께 國會와 行政府사이에는 同身合力 一致團結이라는 것이 國民에게 보여준 것이며 또 따라서 이것을 世界사람으로 하여금 疑心치 않게한 것입니다. 特別히 會期末에 있어서 國會에 行政府側에서 送付한 第二次 追加豫算案 및 管財法에 對한 是正要求 …… 行政府 當局에서도 時間的으로 보아서 大端히 無理를 느끼지 않는바

아닙니다만 政府에서 經濟再建을 爲해서 收支의 均衡, 通貨의 價値安定 여기에 全主力을 하노라고 苦心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特別히 大韓民國의 前途를 放害하려는 共產徒輩의 나머지 殘黨들을 今般 多期를 期해서 徹底히 掃蕩해서 國際적으로 닥치는 앞날의 重大한 局面에 있어 後顧之悔가 없이 우리의 主動的 軍略을 그대로 運營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至極히 重要的 性格의 것이고 여기에 配合된 國債法案은 亦是 그 重要性이 한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政府의 苦衷을 諒察하시고 또 이 管財法은 大韓民國 經濟再建에 莫大한 關係가 있으며 民生解決에 至大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冷靜히 批判하셔서 不眠不休의 努力으로 밤을 낮으로 삼고 努力했으면 既決되었던 것을 是正해 주시는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行政府 當局으로서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릴 뿐더러 이 風雨同舟 同心協力한다는 이 精神은 비단 行政府의 立法府 사이에 間無隔하게 表現되었을 뿐더러 이것은 足히 舉族舉國의인 協心同力과 風雨同舟의 精神을 促進시킬 것입니다.

오늘 떠나간 美國의 國會議員들 一行 前番에 왔던 사람들 共同 一致하게 우리의 國會를 極口讚揚할 것입니다. 우리의 行政府를 極口讚揚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勿論 自體가 過度의 興奮이나 過度의 滿足을 느낄수는 없으며 더욱 努力奮闘하여야 될것만은 事實 임니다마는 이와같은 國際的 輿論은 우리의 努力 邁進으로 하여금 虛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確實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기야말로 다시 重復 함니다만은 國家를 사랑하는 것은 主觀的으로 하고 國家의 運命은

客觀的으로 打算해야 한다는 이 鐵則에 根據하고서 行政府와 立法府의 間無隔한 協調에 依支해서만 環聚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表現에 依해서 우리가 收穫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休會期間에는 여러분께서는 施政을 協調하시고 民苦를 解決하기 爲해서 公的 私的으로 政府에 많은 鞭撻을 주시며 建議를 주시고 많은 收穫있이 健康하게 次期에 여러분을 對面할 것을 바라는 바이며 五次 臨時會議閉院 直前의 機會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行政府를 代表해서 感謝의 뜻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簡單히 이만 그치겠습니다.

檀紀 4282 年 12 月 4 日

國務總理 李 範 奭

第6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來賓 여러분!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第6回定期國會를 開會함에 臨하여 몇 마디 말씀으로 所信을 披瀝하여 開會辭를 드리려 합니다.

多事多難하던 4282年이 어느덧 저물고 며칠 안되어 4283年을 맞게 되는 이때에 두번째 定期國會를 열게 되니 過去를 돌아보고 將來를 展望하여 新生國家의 國民의 選良議會인 우리 國會의 使命은 더욱 途遠任重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 1年동안의 國際 國內의 情勢를 살피건데 國際間的 民主主義 對 共產主義의 對立은 조금도 緩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激化된 感이 있습니다. 歐洲에서는 「마아셜」 援助案의 強力한 進行과 北大西洋同盟이 造成되어 모든 自由愛好國家는 防衛를 더욱 굳게 하여가는 중이요, 極東에서는 中國大陸이 우선 現在로 보아서는 共產軍의 猖獗로 인하여 國民政府는 臺灣으로 쫓기어 政事를 準備中이므로 이것이 極東全體에 미치는 바 영향은 자못 큰 바입니다. 이 危難한 情勢에 處하여 新生 大韓民國은 비록 우리가 目的하는 바 全國的 總選舉에 의한 國土統一을 完遂하지 못한 것은 自歎하여 一大痛恨事라 할지라도 우리 國會는 過去 1年 동안 모든 基礎的 建設에 對하여 法案通過·豫算通過 등 行政府와 協心戮力하여 幾多의 功績을 남긴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입니다. 특히

定期國會 以外에 臨時國會를 열기 4회에 미치어 重要案件을 處理하
었는데 이번 定期國會에는 政府에서 提出할 4283年度의 豫算案과 第
5回臨時國會에서 넘어온 60餘件의 案件이 있습니다. 이 60餘件 中
에는 稅法 其他 財政에 關聯한 것이 있어서 新年度豫算의 基礎를 이루
는 것이므로 豫算案討議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이 未
決案件의 審議는 急速히 되기를 要하는 바입니다.

過年 1年 동안에는 人權의 옹호, 行政府에 對한 問責·建議 등으로
鞭撻과 非違匡正을 힘썼으므로 或 世人中에는 國會와 行政府의 對立이
나 있지 않은가 보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은 오로지 新生祖國을
위한 國民代表의 奉公의 誠意에서 나온 것이요 더욱 問責하기 위한 問
責이나 非難하기 爲한 非難은 秋毫도 없었고, 一路 建國의 大業에 協
心戮力하여 過誤 없기를 기한 바입니다. 특히 第5回臨時國會의 決議
에 의하여 廣範한 範圍로 國政을 監査하게 된 것은 行政府에 缺陷이
있으면 이것을 補救匡正하는 同時에 將來에도 過誤없는 國政의 進行이
되기를 기하려는 誠意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行政府의 行政은 그 定한
바, 法規에 의하여 各各 맡은 職責을 遂行한다 할지라도 國會가 國民
을 代表하여 이를 監視할 것은 勿論입니다. 더욱 우리는 지금 國際機
關으로서 유엔 韓委의 協力으로 國土統一을 企圖하는 同時에 美國의 援
助로 國防과 經濟를 建設하는 중에 있으니 이 두가지 國際的 援助는
비록 유엔이 그 本來의 使命으로 平和保障의 機關이요 美國이 그 나라
建國大義로 自由民主의 守護者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自身으로써 世界
平和를 위한 安定勢力이 되고 反共鬪爭의 堡壘가 될만한 信念과 資格

을 具備치 못한다면 그들의 援助를 效果的으로 有終의 美를 얻기 어려울 것이요, 만약 우리 政府로서 過誤의 非違로 조금이라도 信用을 잃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國家의 不幸이요 나아가서는 全國民을 위하여 恨을 千秋에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議員同志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今後 數年 동안은 우리 나라로 보아 가장 重大한 時期이요, 우리 國民은 世界環視中에 한 個의 試驗臺에 올라 선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一步를 잘 못 하다가는 悔를 後世에 남길 터이니 國會는 더욱 自肅自省하는 同時에 밖으로 國民外交의 實을 舉하고 안으로 國政監査를 慎重히 하여 더욱 民主主義를 暢達시키어 國民의 期待 乃至 友邦의 期待를 辜負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檀紀 4282 年 12 月 20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6回國會開會式)

第二次定期國會가 開會하는 자리에 내가 친히 나가서 여러분에게 感謝한 뜻이라도 表하고저 하였으나 數日間 感氣로 신음하고 있어서 國務總理에게 付託해서 簡單히 歡迎과 祝賀하는 禮를 表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저번 臨時國會가 열린後 얼마 時日이 지나시오 重大案件들이 지체되었음에 對해서는 本大統領以外에 憂慮心을 가진분들이 많게 되었든 것인데 마침 閉會期日을 延期해서 여러분의 特別한 努力으로 모든것이 相當히 處決되어 重大한 關係가 없을만치 된것을 나로서는 깊이 感謝한 마음을 免키 어려우며 따라서 이번 開會에도 議長以下 國會議員一同이 다 建國初代에 重要緊急한 問題를 가장 最善으로 추중히 여겨서 切實히 討議하고 通過시키므로서 이 初創時期에 모든 重大한 法案을 지연없이 一一히 通過實施케 하신 그 功効에 對하여 모든 友邦들로 하여금 感服된 마음이 생기게 하며 全民族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第一 처음되는 國會가 남의 나라 初代國會에 對해서 比較的 優秀한 歷史를 가지게 됨을 여러분의 最高의 目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방으로 努力해서 建設하는 것은 民國의 土臺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土臺가 굳건히 서서 그위에 우리가 各各 몇해 동안을 쌓어 놓고 또 우리가 始作한 것을 우리뒤에 오는 사람들이 繼承해서 그 土臺위에 더욱 찬란하게 成就하여 民國의 福利와 榮譽가 日後

子孫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唯一한 目的이니 만치 이 目的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些少한 意見이나 利害를 다 超越하고 志公무사인
大韓民國과 大韓民族을 爲하는 一片丹心 누구나 의심없이 믿고 推仰
하도록 분투努力해서 이 마음과 이 주장으로 南北이 하루바삐 統一되고
成功되기를 懇切히 바라며 付託하는 바입니다.

지금 緊重한 案件이 여러가지 있으나 여러분이 다 깊이 考慮하시므
로 하나도 遺漏없이 一一히 處決하실 줄로 믿으므로 더 陳述치 아니하
고 오즉 檀紀四二八三年 새해를 맞이하며 國會議員 여러분의 萬福과
健康을 祝賀하므로 簡單히 致辭를 代身하는 바입니다.

檀紀 4282年 12月 20日

大統領 李 承 晚

閉會式辭

오늘 歷史的인 初代 大韓民國國會閉會式을 舉行함에 際하여 猥褻히 議長의 任에 있는 나로써 閉會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實로 甚深한 感懷가 없을 수 없습니다.

回顧컨대 且今부터 2年前 國內外 政治情勢가 複雜多端한 가운데 5·10 選舉를 斷行하여 우리 初代國會議員 全員은 各各 10萬 國民의 選良으로써 國民의 信任을 받아 議席을 차지하고 檀紀 4281年5月31日에 閉會를 宣言할때 우리는 祖國의 再建과 自主獨立을 完遂하기 위하여 憲法을 制定하고 政府를 樹立하여 南北統一의 大業을 完成하여 國家萬年의 基礎를 確立하고 國民의 福利를 圖謀해서 國際親善과 世界平和에 最大의 忠誠과 努力을 다하겠다고 殉國先烈과 3千萬同胞 앞에 宣誓하였던 것입니다.

以來로 우리國會는 新生 大韓民國과 더불어 참으로 多岐多樣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새로이 草創함에 있어 더욱이 經驗이 없는 우리 初代國會議員들로서는 어려운 問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過去 2年 동안에 있어서 國內的으로는 這間 共產破壞分子에 의한 濟州島·麗水·順天을 비롯한 叛亂事件이 있었고 38線에 衝突事件이 繼續的으로 있었으며, 一部 國會議員의 被檢된 事件도 있었고 其他의 產業再建과 民生問題 등 許多한 難問에 逢着하였던 것이며, 國際的으로는 우리 나라의 國際的 承認과 유엔加入問題, 友邦 美國의 援助獲

得 및 對外 通商條約締結 등의 各種의 外交交渉에 直面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議員同志 여러분은 始終, 一切의 勞苦를 不辭하고 愛國의 情熱과 不眠不休의 努力으로 協心戮力하여 모든 問題를 큰 허물이 없이 解決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國會는 지나간 2 個年 동안에 前後의 6 회에 걸친 臨時 및 定期會議에 있어서 會期 640 日 가운데에 290 日間을 開會하였고 그 동안 國會法·憲法 및 政府組織法을 爲始한 法律案·豫算案·建議案·決議案 등 무려 182 件의 重要한 議案을 討議處決하였던 것으로 어느 나라 議會史上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記錄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大韓民國의 나라의 터전은 나날이 鞏固히 되고 今日的 發展을 보이게 되었으나 아직도 民族의 懇願인 國土統一을 이루지 못한 채 있으며 產業復興과 民生問題解決 등등의 許多한 宿題를 남겨 놓고 今日的 閉會式을 舉行하게 되었으니 한便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이 너무나 不足하였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今般 第2次總選舉가 實施되어서 國民들은 過去 3年 동안의 政治生活의 經驗과 訓練을 밑천삼아 各自의 信任할만한 새로운 選良들을 選出하였으며 우리 初代國會는 安心하고 모든 懸案과 宿題를 次期國會에 넘겨주고 이 자리에 閉會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議員同志들 中에는 一部 다시 再選되어 次期國會에 參席할 분도 계시겠고 一部 議員同志는 國會에 나오지 아니하게 될 것이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處地에는 서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國會內에 있어서나 國會 外에 있어서나 一결같이 愛國愛族의 至誠을 다하여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大韓民國의 隆盛과 發展을 圖謀하고 모든 難關을 突破하기 위하여 最善最大의 努力이 있기를 굳게 바라고 믿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議員同志 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빌며 閉會辭의 몇 마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檀紀 4283 年 6 月 2 日

國會議長 申 翼 熙

大統領致辭(第6回國會閉會式)

國會議員들 지금 議長의 鄭重한 閉會辭를 듣고 또 따라서 經過報告書에 歷歷히 말씀하였으니까 나 거기에 對해서 더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感嘆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難關과 우리의 앞길을 열어나가고 措處하자는데에 目標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二年이라는 歲月이 지나가서 第二回國會가 選舉되어서 지금 第一回 國會의 閉院式을 하는 이때에 있어서 많은 感想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一年동안 國會議長이나 여러분이 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많은 努力을 하신데 對해서 無限한 感謝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라를 爲해서 이사람에게 對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全的으로 感謝하면서 이안에서 된 일이라든지 한말이라든지 或은 듣기좋은 말도 하고 듣기싫은 언짢은 말도 있었지만 그 大旨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이사람의 마음이나 우리 民國建設의 도움이 되기 爲해서 일을 하신데 對해서 여기에 對해서 無限히 感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各各 물러가실지라도 個人個人 사이나 或은 團體團體사이에 조금이라도 遺憾을 가지거나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公的으로 우리나라를 爲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그 大旨만을 가지고 努力하면 좋은줄 믿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民國政府를 樹立해 가지고 第二回國會를 여러분과 함께 總選舉를 하게 된것을 大端히 榮光

으로 생각합니다. 勿論 여러분도 다 各己 그렇게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은 다 一一히 記錄해 있는 것입니다.

以後에도 歷史에 남을 것입니다.

第1回國會는 民國建設을 爲해서 基礎를 잘 세우게 된 것입니다.

東洋에서는 집을 세울라면 上樑을 세우는 것이 第一重要한데 西洋에서는 먼저 柱礎들을 닦는 것이 第一重要하며 이것을 完全히한 뒤에 그위에다 建築을 하는데 民國建設을 爲해서 여러분이 土台가 되어서 여러분이 貢獻하시는 것이 土台가 되도록 努力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집을 잘 지키고 못지키고 하겠지만 그집을 잘 서게 오래오래 늘어나갈 土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나가나 國會議員이 되나 무슨 다른 議員이 되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우리의 唯一한 功績은 우리民國의 土台를 永久히 튼튼히 세워서 우리나라의 獨立을 完全히 保存하고 우리民衆의 自由權을 永久히 保障하려는 그 目的은 우리國會議員이나 國會議員이 아니나 오나가나 나라를 爲해서 奮闘努力하시기 바라며 우리民國政府가 樹立되고 우리가 여기서 努力하고 奮闘한 그 結果가 우리民衆에게 永遠한 福利를 주며 우리子孫들에게 미치나가야 여기서 우리가 있어있는 第一回 國會議員들의 하신일이 더욱 빛나고 우리의 記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나 길게 얘기 아니합니다. 作別하는 이때에 大端히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各各 돌아가시드라도 여러분의 業績은 여기에 그대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뒤에 오는 國會議員들이 계시니까 다 그분들에게

말길수 있으니만큼 過히 設設히 여기지 마시고 二年동안에 努力하신 效果가 永久히 서 있어서 우리民國과 우리民族에게 永久히 福利가 될 것을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며 다만 말씀할 것은 아무쪼록 健康에 注意하셔서 國會안에 있을때 보다도 더 努力들을 하시고 政府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 對해서 助力해주시고 서로 校正해 가도록 해주 시기 바라며 더욱이 共產에 對해서 鬭爭하는데는 이안에 계실때 보다 더 한層 힘있게 活動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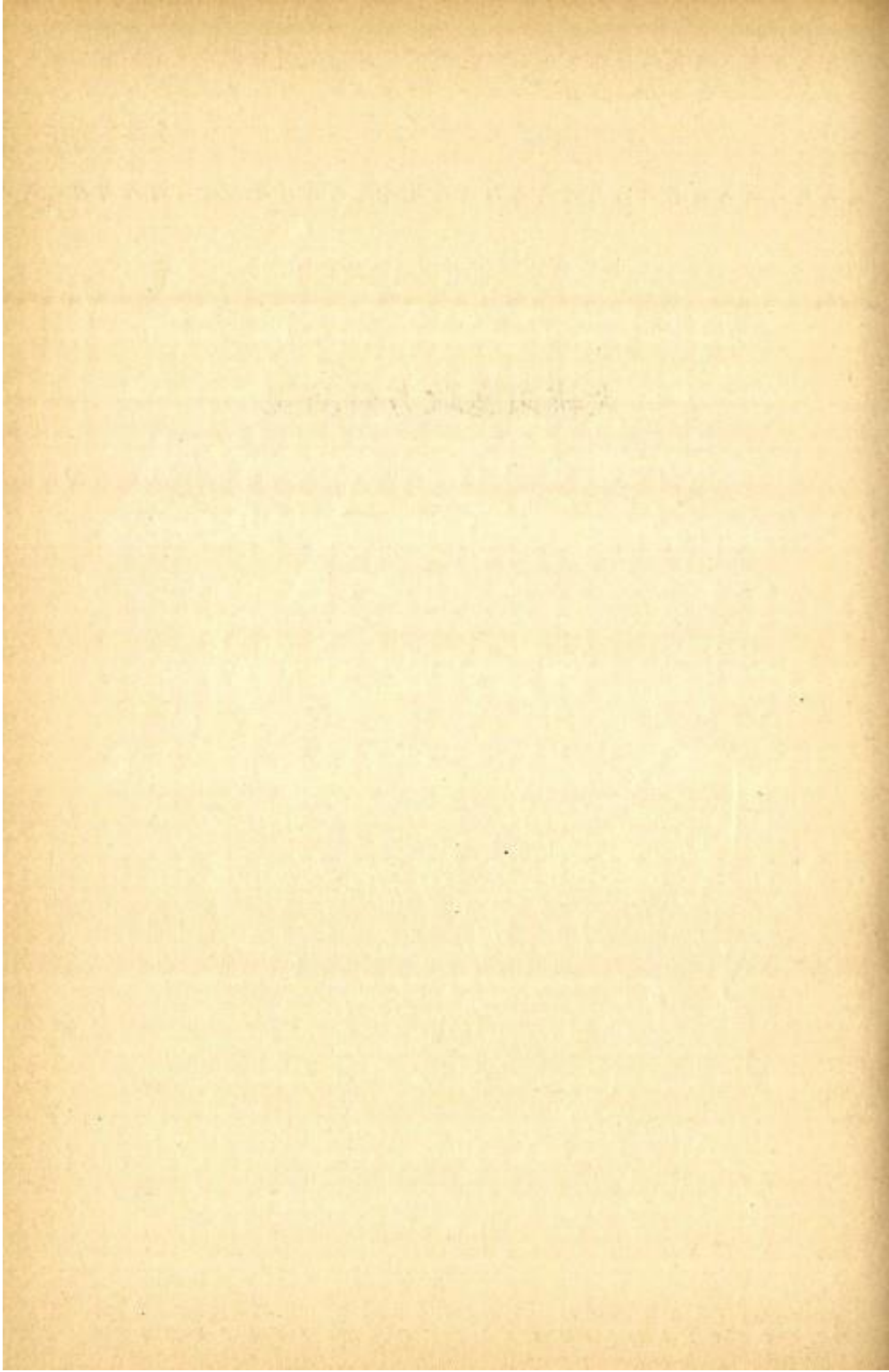
共產黨員이 해가는 일이나 그 사람들이 해가는 말은 우리民國에 우리民衆에게 絶對背馳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民主國家의 獨立權을 永久히 保障하고 우리民衆의 自由權을 保存하려는 것을 우리가 誓約하고 그 決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 여기서 努力하고 싸우신것을 밖에 나가서 더 一層 우리나라의 永久한 發展을 爲해서 民國의 基礎가 完全히 자피이게 해주시도록 여러분에게 付託합니다. 그런데 日前에 어떠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第一回 國會議員을 選舉해 가지고 歷史的 重要的 意味가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特히 다른 나라와 달라서 四千年五千年에 歷史를 가지고 처음된 일이니만큼 이 國會가 解散하게 될때 記念으로 무슨 證明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議論해 보았어요. 이렇게 알맞게 만들어서 議長이 거기에다도 姓名을 써가지고 第一回國會議員들이라고 議長이 署名해서 그래서 하나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날字가 좀 여러분이 가시기前에 充分히 없을터 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어떻게든지 速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議長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도 처음하는 일이니

만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程度 感想談으로 끄치며 여러분
께서 오나가나 한뜻으로 鬭爭해 주심사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檀紀 4283 年 6 月 2 日

大統領 李 承 晚

○ 大統領施政方針演説



大統領施政方針演說

1948. 9.30
第1回國會(臨時會)
第78次本會議

一. 序 論

檀君始祖의 傳統的인 歷史와 單一民族으로서 燦爛한 文化를 繼承하여 온 우리 大韓民國은 歷代 殉國先烈的 끊임없는 加護와 世界民主主義諸國家의 絶對한 同情的 聲援에 依하여 이제 必야호로 國權을 恢復하고 新生自主獨立民族的 民主主義國家로 誕生하여 殉國先烈的 大義에 報答케 됨은 大韓民族 全體의 千載一遇인 기쁨이며 또한 子孫萬代의 光榮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三千萬同胞의 熱烈한 歡喜와 世界友好諸邦의 歡呼裡에 民國政府의 正式成立을 보게되자 友邦美國 中國과 比國의 率先承認을 얻었으며 지난 八月十五日에는 祖國解放의 使徒 「맥아더」元師의 遠訪을 받아 大韓民國政府樹立 國民慶祝大會 席上에서 大韓民國이 自主獨立民族的 民主主義國家임을 널리 中外에 宣布하였음은 非單 우리 民族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한 世界民主主義 諸國民의 큰기쁨의 하나일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新生民國의 榮光스러운 歷史的인 마당에 本人이 尊貴한 大統領의 重責을 받아 이제 國會議員 諸位와 國內 國外 三千萬同胞앞에 施政의 大要를 披瀝함은 나의 가장 欣快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大抵 祖國向路의 大綱은 國祖宣示의 崇高한 建國情神과 偉大한 己未獨立情神에 依鑑하여 昭明한 터이며 國家政綱의 基準은 이미 公布된 國憲에 明示되었나니 나는 맛당히 傳統에 依憑하고 國憲을 遵守하여 日夜 競競 오로지 祖國隆昌에 老軀를 鞭撻할 뿐입니다. 施政의 基本方針에 있어서는 이미 大統領就任式과 民國政府樹立 國民慶祝大會 席上에서 闡明한바 있었으나 나는 이제 다시 親愛하는 議員諸位에게 政府施政方策의 一端을 開陳하여 諸位의 注意를 새로움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二. 民族國家로서의 民國의 特性

半萬年の 悠久한 歷史를 가진 우리 民族은 全世代를 通하여 同一한 血統과 疆土를 繼承保有하여 왔으며 共同한 文化와 運命을 創造擔荷하여온 優秀한 單一民族입니다. 아득한 古代로부터 無數한 外部의 威脅에 對하여는 恒常 우리 祖上先人들은 鐵血의 英勇心과 堅結한 民族意識으로 이를 克服擊退 하였으며 안으로는 偉大한 德性과 創造的 資質으로써 不斷히 그 燦爛한 藝術과 發明으로 人類文化에 貢獻寄與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卓越한 歷史를 貫通하여 우리 民族의 不屈의 英勇性과 伶敏한 創發性은 지금도 우리의 血管속에 틀림없이 躍動하고 있음을 體得하는 것입니다.

이 卓越한 德性과 優秀한 資質은 이 疆域이 不幸이도 倭國에게 蹂躪되었던 過去四十年間에도 連綿히 承傳되어 한번 己未獨立宣言時와

같이 民族意識 昂揚의 機轉에 當面하면 直時 그 本質을 顯現하여 正義와 人道와 平和를 사랑하는 世界人類로 하여금 우리民族은 不可滅의 存在이며 大韓國家 再生이 必然의임을 認識시켜 왔던 터입니다.

貴重한 自己의 生命과 肉親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崇高한 民族의 生命에 貢獻한 殉國先人烈士들의 英雄的鬪爭은 及其也 今次 世界大戰中 美國을 爲始한 主要聯合國으로 하여금 우리民族의 自主獨立을 屢次 約束宣明시키고야 말았던 것이니 勝利는 正義에 加擔한다는 古今의 鐵則이 聯合國 完勝에 具現된 結果 우리는 오늘날 光榮이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잃었던 民族과 國土와 文化를 찾고 이제 瑞氣玲瓏하고 生氣充盈한 光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過去에 想到하고 未來에 觀照하여 先烈에 對한 無限한 感謝를 울리며 아울러 悔悟와 反省을 促求하여 單一民族 國家의 一員으로서 祖國再建의 聖業에 熱誠과 努力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三. 基本國策

新生大韓民國은 이러한 歷史的 緣由와 國際的信義下에 誕生한 것이므로 이를 守護貫徹하려는바 基本大策은 民族全體의 福利를 保續하고 國家威信을 安固케 할 수 있는 民族的 民主主義國家를 建設하여 子孫萬代에 傳承시키는데 뚜렷한 指標가 서있는 것입니다. 換言하면 大韓民國은 完全한 主權國家인 同時에 우리 民族의 歷史的 獨自性과 現實的環境에 비추어 반드시 單一民族國家인 것이며 決코 어떠한 個人的 또는 集團的特權도 容許되지 않을 것입니다.

主權은 오로지 三千萬民族에게 있고 모든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權利와 責任이 基本的으로 萬民에 均等한 國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國家理念에 符合되지 않는 모든 過去의 惡弊를 內包한 社會制度는 맞당히 根本的으로 改革을 斷行하여 참으로 民族全體의 全面的 均衡發展을 保障할 수 있는 民族國家를 建設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世界歷史에서 落後됨을 免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國家에 있어서 諸般制度가 이 方向으로 進展한다면 同胞가 平等한 人格과 生活과 教養을 가지게 될 것임으로 同胞間에는 原則的으로 優秀의 差別이라든가 階級的 摩擦이라든가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나는 同族間의 對立같은 것이 自然消滅되고 三千萬 全民族으로 하여금 自由로운 發達의 길을 걸게하며 眞正한 愛國思想을 提高시켜서 우리 民族의 基盤을 堅固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先人烈士가 壯烈한 鬪爭을 하면서 暫時도 잊지 않던 理想이었으며 또 우리 民族의 運命과 文化를 開拓하여 民族萬年の 福利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國家의 基本國策이 이미 말한바와 같은 進대 新政府의 使命도 거기서 演繹되는 것임을 認識하여 주실줄로 믿읍니다.

解放後 직지않은 民族意志의 銷況, 力量의 分散, 混迷와 障礙가 繼起하였으나 모든 國民은 過去에 淡淡하고 未來에 淸淨하여 些少한 是非曲直과 小義妄信을 超越하고 民族의 情熱과 叡智를 恰然히 歸一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은 國策實踐의 第一步를 힘차게 디더내는데 指

向하여야 할 것입니다.

民族과 國家를 沒却한 依他心과 正義와 公道에서 離脫한 私慾과 그
러고 嚴肅한 現實의 要請을 無視한 空論 虛說과 派閥, 黨爭 등으로 在
再遷日하는 弊端等 社會의 惡習과 民族을 抑沮하는 一切의 病弊를 刷
新是正하여 思想의 統一, 精神의 一致를 圖謀하므로써 國家民族의 自
主自立과 世界民主主義 友邦과의 共存共榮의 基盤을 닦아서 우리民族
의 全力量과 歷史的資質을 集中邁進하는데 政府는 不斷의 努力을 注
入할 것입니다.

이제야 新生大韓民國에 朝氣蓬發하는 新興國家의 礎石은 놓여지고
榮光스러운 民族復興의 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四. 政府의 當面政策

歷史의 指向, 民族의 希求, 世界의 大勢에 配合된 新政府의 使命이
如斯하다면 政府의 當面政策은 爲先 早速한 期間內에 軍政을 完全引
受하고 國際的 承認과 協助를 얻어 國家自治에 基礎를 尊定하므로써
塗炭에 呻吟하는 民生問題를 解決하여 國家富強의 元本을 培養育成하
므로써 國力の 充實을 庶幾할 것이니 政府의 重點은 오로지 國利民福
의 增強에 志向될 것이며 또 政府는 爲先 南韓에 있어서 時急히 國軍
을 建設하고 國防에 必要한 施設을 促進하여서 眞空狀態에 빠진 國內
治安을 確保하되 生産振興에 人的缺陷을 防止하고 國家의 經濟的 負
擔을 輕減하면서 一旦有事之秋에 能히 國家가 強力한 自制力을 發動
함에 適合한 兵役制度를 實施하여 平時 最少限度의 優秀한 精銳國軍

을 組織編成하므로써 組是와 國策을 守護保全하여 一方政治적으로 多數 友邦의 同志를 獲取하여 國際聯合과의 緊密한 合作下에 國際公約을 平和裡에 極力推進케 할 것이니 이리므로써 同族相爭相殘의 慘禍를 防止하면서 안으로는 半萬年の 傳統에 빛나는 三千萬同胞의 民族의 道義的 共同反省으로서 民族統一 疆土完整에 指向하는 南北統一國家 早期實現에 邁進할 것입니다. 政府當面政策의 詳細에 關하여서는 組閣以來時日이 얼은關係로 現在로서는 各各 主務委員의 愼重한 研究와 果敢한 實踐에 期待할바 적지않겠으나 以下 新政府 施政의 基本大綱을 開陳하여 諸位의 協贊을 要請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國權의 完全恢復과 國際承認

다 아시는 바와같이 八月十二日以後 美國과 中國은 이미 事實上 우리 大韓民國을 承認하였고 지난 八月 十九日에는 極東友好國家로서 過去 우리와 處地를 같이하던 比國의 承認을 얻었으며 國際聯合 朝鮮委員會團 亦是 全幅的支持를 不辭하는 바이며 他面 美軍政은 八月十五日로서 一役 終結을 告하였고 其間 軍政의 行政權移讓에 關한 協定이 韓美共同會談을 主軸으로 하여 友好裡에 順調로히 九月十一日에 調印되었으니 여기에 民國國權은 完全히 回復되었다는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또 國際的 承認問題도 우리 國家가 聯合國의 數次公約과 그 絶對多數의 支持後援下에 組織된 國家이니만치 正義와 平和를 希念하는 國家는 美國 中國과 比國의 뒤를이어 承認의 友誼를 表明할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이 여러 友邦들은 過去에 우리의 참된 벗이였지만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도 더욱 우리와 함께 人類의 正義와 自由를 保衛하기 爲하여 苦樂과 運命을 共同히 하고 참된 벗이 될 것이니 國際聯合加入問題도 多少의 波瀾曲折은 豫測되나 畢竟 實現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를 爲하여 政府는 九月二十一日開催된 國際聯合總會에 對處하기 爲하여 이미 大統領特使를 派遣하여 世界聯合國家와의 親善과 外交協助를 圖謀하므로써 民國의 國際的 地位를 安固케 하는데 奇與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添加할 것은 對日問題에 關한 政府의 對策이니 우리는 極東友好諸國家와 더불어 日本의 今後動向에 至大한 關心을 가질 것입니다.

第一次世界大戰以後의 獨逸이 當時의 巴里講和條約을 一方的으로 破棄하고 再武裝國家로 登場하여 所謂 樞軸國家群의 主動國으로서 第二次 世界大戰의 直接 導火線이 되었던 歷史的 事實을 前鑑한 우리는 日本의 帝國主義的 侵略主義의 完全拋棄와 向後의 民主主義的 再建에 關하여 맛당히 嚴正한 監視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政府는 過去의 日本帝國主義 政策으로 因한 모든 害惡을 恢復하고 또한 將來 隣接國家로서의 正常한 外交關係를 保護하기 爲하여 聯合國의 一員으로서 對日講和會議에 參列케할 것을 聯合國에 要請할 것이며 民國이 對日賠償에 對한 正當한 權利를 保有할 것이며 또한 그 兩後의 發展에 關하여 國際的 義務를 負荷할 것을 主張할 것입니다.

要컨데 大韓民國은 오직 正義와 人道에 立脚한 眞正한 民主主義의 實踐國家이며 또 民主主義를 保衛하는 國家群의 一員으로써 안으로

生存의 길을 찾고 밖으로 精神이 같은 友邦들과 더불어 國際萬邦의 親善援助와 世界人類文化의 樹立貢獻에 全力을 다할 心算입니다.

2. 民生改善과 國內當面重要政策

日本帝國主義의 荷酷한 強壓政策 特히 戰時中 對殖民地戰費 擄取의 그것으로 因하여 우리나라의 資源과 民力은 餘地없이 荒廢濶渴되었으며 今次 世界大戰의 長期擴展으로 因한 全世界 共通한 經濟破綻의 影響을 받아 우리나라 經濟는 二重적으로 疲弊한 것입니다.

農工 其他 重要産業의 一般狀態는 雪上加霜으로 美蘇兩軍의 不自然한 分割占領으로 因하여 一層 萎縮되어 窮逼痲痺의 一路를 걸어왔으며 이 結果는 社會文化 民心等 各 方面에 顯著한 惡影響을 미치어왔음으로 此際에 奮起하여 大勢를 挽回하는 方途를 取하지 아니하면 前途의 曙光이 消滅할 憂慮도 없지 아니하니 政府는 同胞로 하여금 憲法이 制定하는바 生活의 基本的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여 社會正氣를 實現하고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하는 經濟를 確立하여 國家自活의 原動力을 培養함이 逼切한 急務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政府는 現下 國家經濟의 危機를 克服하고 國民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기 爲하여 産業의 緊急再建과 經濟復興에 治政의 重點을 置하여 그 實踐에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입니다.

經濟基本政策에 있어서는 現下 國內實情에 비추어 憲法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綜合的 經濟體制를 確立하여 이에 計劃性을 保有케 하되 可能한 限 個人的 創意와 經營의 自由를 保障하여 이에 適切한 保護,

助成, 獎勵政策을 꾀할 것입니다.

政府는 綜合的 經濟政策을 策定하기 爲하여 곧 國力의 基本實態調査에 着手할 것입니다.

産業의 再建에 있어서는 農工均衡立國을 指向하는 産業國家再建에 置重하되 緻密한 年次計劃에 依하여 食糧의 增産, 生必品の 自給自足과 動力源의 確保 및 地下, 水産資源의 積極開發과 이에 附隨하는 重要工業을 積極助成獎勵하고 交通 通信機關의 急速한 復舊와 敏活한 運用을 企圖하며 山林荒廢의 復興을 急速圖謀하여 生産의 全面的昂揚을 促進하므로써 國民經濟의 向上을 期心할 것이며 아울러 失業者의 全面的 轉向에 專力할 것입니다.

一方適切한 財政金融政策을 確立하고 物價貿易의 統制管理政策을 樹立하여 物價의 全面的 合理的 安定을 策定하므로써 現下의 深刻한 인플레이 - 션을 極力防遏할 것입니다.

民生問題 解決에 있어서 恒常 나 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農民과 勞動者의 生活向上의 念願이니 政府는 農民과 勞動者의 生活向上을 爲하여 時急한 對策이 있을 것입니다.

前者에 있어서는 憲法의 條項에 依據하여 앞으로 土地改革法이 制定施行될 것이니 土地改革의 基本目標는 專制的 資本制的 土地制度의 矛盾을 除去하여 農家經濟의 自主性を 附與하므로써 土地生産力의 增強과 農村文化의 發展寄與에 指向될 것인 故로 먼저 小作制度를 撤廢하여 耕者有其田의 原則을 確立할 것이나 農民大衆의 願하는 바에 依하여 政府는 均等한 農地를 適當한 價格 또는 現物補償의 方式으로

써 農民에게 分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國民의 約 七割을 占하는 農民同胞의 念願인 米穀收集의 改善을 政府에서 國會에 向하여 法律案을 提出하였던바 아직 法律이 制定되지 아니하고 時期가 至極히 急迫한 事情으로 因하여 政府의 斷乎한 決定으로 世界食糧事情과 그 調節을 爲한 同協助의 精神을 維持하고 要保障數量을 獲得코저 臨時非常措置를 實行하여 農民諸位의 生產品과 農民의 要消費工業生產品과의 價値調節에 있어서 그동안 抑鬱한 立場에 있던 農民의 地位를 昂揚保全할 것입니다.

또 後者에 있어서는 憲法의 精神에 依據하여 利益均霑의 權利를 保有하게 될 것이며 其他 社會保險制度를 創定實施하여 그 處遇가 甚히 改善될 것이니 同胞男女는 老少를 不問하고 各各 그 職場에 忠實하여 相互扶助協心하며 勉勵勤行하여 世界文明國家의 國民으로서 國力の 培養 民力の 補強에 힘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產業團體에 關하여서는 從來의 亂立性과 利潤追求至上의 欲求를 止揚하고 그 業種과 規模의 大導를 莫論하고 國家產業政策에 率先할 것을 要請하는 바이며 政府로서는 協同的組織系를 考察하여 政府協力機關의 育成發展에 關心을 가진 것입니다.

元來 產業經濟는 國家 及國民生活의 基本입니다. 經濟的 基盤없이 政治的 基礎가 確立할 수 없는 것이니 國力和 民富의 消長은 오로지 그 成敗에 歸結된다는 것을 뜻깊이 銘刻하여 同胞는 一心協力 經濟道義에 歸一하여 產業振興에 總蹶起할 것을 要望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 產業復興의 重要關鍵은 所謂 敵產의 歸屬問題일 것이니 우리

는 國內 敵產問題에 關하여 急速한 解決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敵產이 過去 四十年間 韓國國民의 膏血의 結晶으로 이루어진 事實은 聯合國으로서도 十分 諒察할바인데 이는 이번 韓美會談에서 政府에 歸屬되었으며 이로 말미아마 政府는 聯合國이 保有하고 있는 國內 모든 敵產을 早速 引受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 財産의 性質에 따라 適切한 施策이 樹立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政府는 對日賠償의 要求를 強力推進하여 韓國으로써 正當히 主張할 수 있는 一切 財貨의 即時 償還要求를 貫徹할 것입니다.

目下 가장 時急한 解決을 要하는 電力問題에 對하여서는 北韓과의 物資交流를 促進하는 一方 同族의 道義的 觀點에서 適切한 協助와 解決이 있기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國內治安의 確保에 있어서는 앞서 言及한 바도 있거니와 今番 우리 政府樹立과 함께 警務部를 政府內務部에 統合함으로 因하여 그 弱體化를 杞憂하는 便이 없지않은듯 하나 治安의 重要性은 그로써 秋毫도 輕減되는 것이 아니니 政府는 銳意警察陣容을 補強合理化하여 民主警察의 實을 舉揚하는 同時에 國內秩序維持에 萬全을 期하고 있는 바입니다.

大韓民國이 國際的地位의 安固와 더불어 世界友好諸邦과의 外交通商도 漸次 活潑하여질 터이고 政府는 國外에 外交官을 派遣하여 經濟에 關한 對策이 樹立될 것이며 貧弱한 國力을 恢復하고 國家經濟의 正當한 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서는 友好國家의 好意的 援助가 要請되는 바이며 政府는 이에 對하여서도 不斷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在外 韓國僑民 特히 在日同胞及 在滿洲同胞의 救護歸還及 處遇改善 問題等에 關하여서는 急速히 適切한 對策이 樹立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同情을 禁할 수 없는 것은 三南地方의 今次의 莫大한 水害로 因하여 많은 同胞가 生命을 잃고 家産을 流失하여 彷徨하는 現狀이니 政府는 財政이 許諾하는 限 適切한 救護復舊對策을 樹立할 것이나 國民도 맞당히 同胞愛의 崇高한 精神에서 相互扶助의 實을 現示할 것을 要請하는 바입니다.

3. 行政의 刷新과 社會氣風의 肅正

以上 若干의 緊急한 當面重要政策에 關하여 政府의 施政方針의 概要를 敘述하였으나 이러한 施策의 成否如何는 오로지 그 局에 當한者가 能히 上司의 意圖를 承服하여 그 使命을 完遂할려는 熱意와 能力을 保有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무릇 國家百政의 成敗의 關鍵은 行政에 있으니 첫째 官規의 遵守, 人事의 刷新 事務의 簡素化及 責任制를 徹底히 團束督勵하여 政府는 全國 官公吏의 先頭에 서서 國民의 公僕으로서의 그 資質의 向上을 圖謀하며 吏道의 匡正에 努力하는 한편 沈滯性과 放縱恣意를 糾察함으로써 命令系統을 確立하면 이에 따르는 地方行政組織을 完備하여 強力한 中央集權制의 行政體系의 馴致에 專力할 것입니다.

그리고 以上の 國策達成 如何는 國家財政의 許否에 있는 것이니 國民은 너무 燥急히 生覺하지 말고 協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特히 財政에 있어서는 國家初創에 있어서 政府支出의 膨脹이 豫想되는 바이나 極히 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緊縮財政方針을 堅持하여

國家財府의 均衡을 維持하기에 努力할 것이며 一方稅制를 整備하되 可及的 簡素合理化하여 國家健全 財政確立에 一意專心하고 있는 바이니 또한 一般의 協助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政府代行機關 其他 公共團體에 있어서도 以上에 說明한 바 政府의 方針에 協助遵行하여 清新한 氣風과 旺盛한 責任觀念을 振作할 것을 附託하는 바입니다. 설령 信義에 違背하며 責任에 輕薄하고 物質에 貪汚하는 徒輩가 있다하면 그는 峻嚴한 國家의 制裁를 避치 못할 것입니다.

各種 公共機關團體의 性格 組織에 關하여는 憲法의 精神에 依據하여 漸次 檢討 再編成하게 될 것입니다.

現今 國內社會相은 極度로 疲弊衰墮하고 있으니 대체 民族意識과 建國精神이 貧困한 國民은 敗亡하고 民族正氣가 旺盛하고 建國理念이 透徹한 國民은 富強하였던 事實은 歷史가 昭示하는 바입니다.

現下의 混沌한 思想을 時急히 統一하고 建國理念을 闡明하여 社會氣風을 肅正하며 民族文化의 極力發展을 圖謀함은 國家創建의 基本課題일 것입니다.

특히 國民教育의 普及을 徹底히 하되 職業技術教育에 置重하여 國民皆勞 尙勞의 美風을 造成하며 科學의 急速한 建設과 外國文化의 適切한 攝取에 努力하여 人材의 養成에 主力하며 아울러 國民保健의 向上 國民體力의 培養 특히 婦女의 社會的 地位의 向上에 主力할 것은 政府의 文教社會施策에 가장 重要한 部面일 것입니다.

勿論 個人의 尊嚴을 保障하며 民權의 蹂躪을 制正하고 個人의 言論

自由를 確保함은 近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의 至上課題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바이나 個人獨善主義的 排他乃至 破壞行動에 依하여 社會秩序를 紊亂케 함은 嚴肅히 警戒하여야 할 것이니 나의 權利를 尊重함과 같이 남의 權利를 尊重하여 國家發展의 大義에 歸依하도록 모든 國民이 合心大同하여야 할 것입니다. 政府는 앞으로 國民組織의 強力化에 關하여서는 不斷의 努力과 不絶의 關心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指摘하여 國民의 注意를 喚起하고자 하는 것은 過去의 親日的 要素의 清算과 宗派的 賣國的 行動의 團束이니 이에 關하여서는 國民各自가 連帶的인 責任下에 이를 監視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解放後의 國內情勢의 不安에 依하여 一時 本意아닌 犯罪를 侵犯하여 司直의 糾彈을 받고 있는 同胞에 對하여서는 이날의 建國의 기쁨을 다같이 나누기 爲하여 適切한 範圍內에서 赦免減刑復權에 關한 對策을 考慮中이던바 一般赦面에 있어서는 지난 八月二十日 議員諸位의 協贊을 얻어 赦免法이 이미 通過된데 對하여서는 깊이 感謝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4. 結 言

以上 政府施策의 大要에 關하여 極히 當面한 重要施策을 舉示한바이다.

要는 百의 理論보다 하나의 實踐에 있고 千의 鬭爭보다 오히려 한 개의 解決에 있는 것이니 政府는 百折不屈의 決心으로써 堅實한 實踐에 邁進할 것을 깊이 盟誓하는 바입니다. 高明하신 議長 議員 여러분 民族半萬年の 燦爛한 歷史的 傳統을 回生하고 子子孫孫의 未來의 隆

昌을 期約한 우리 民族 國家建設의 第一段階에 있어 新政府는 議員諸位의 鞭撻과 國民의 熱誠的支援을 얻어 本人은 關係諸位와 더불어 온갖 忠誠과 情熱과 時間을 오로지 民族과 國家에 바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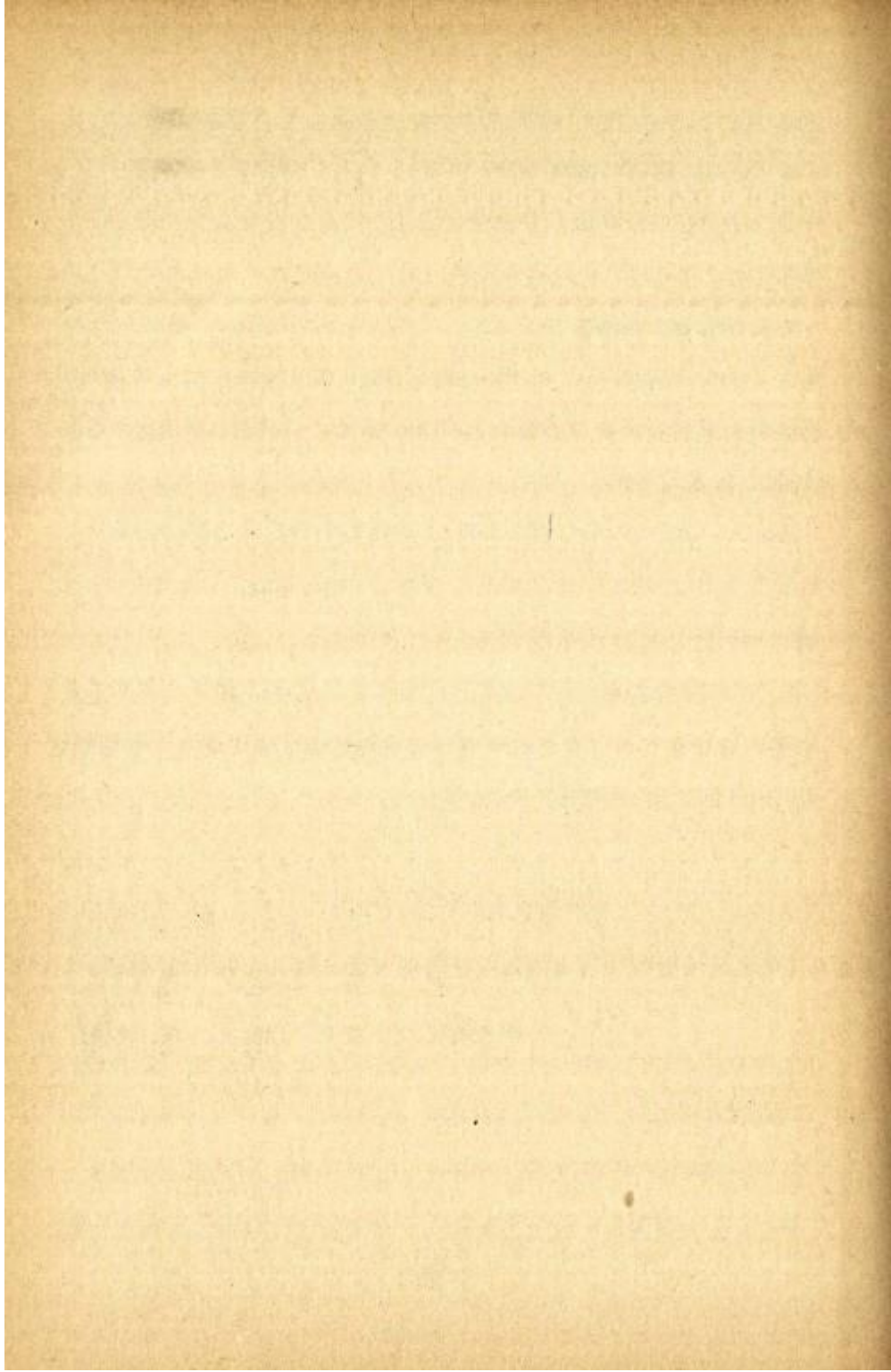
대재 國家基本政綱은 앞서 말한 바와같이 이미 公布된 憲法에 그 精神과 趨向이 昭明하나니 마땅히 國民主權의 制憲精神을 遵守하고 中央地方의 有司同僚의 指教協心을 얻어 萬氏永生共樂의 民族國家建設에 專心할 뿐입니다.

施政의 具體的 細目에 關하여서는 政府로서 緊急히 解決을 要하는 許多한 案件이 있으니 軍政期間의 實績과 現在 實情을 研究考究하여 漸次 適切한 具體的 方案을 樹立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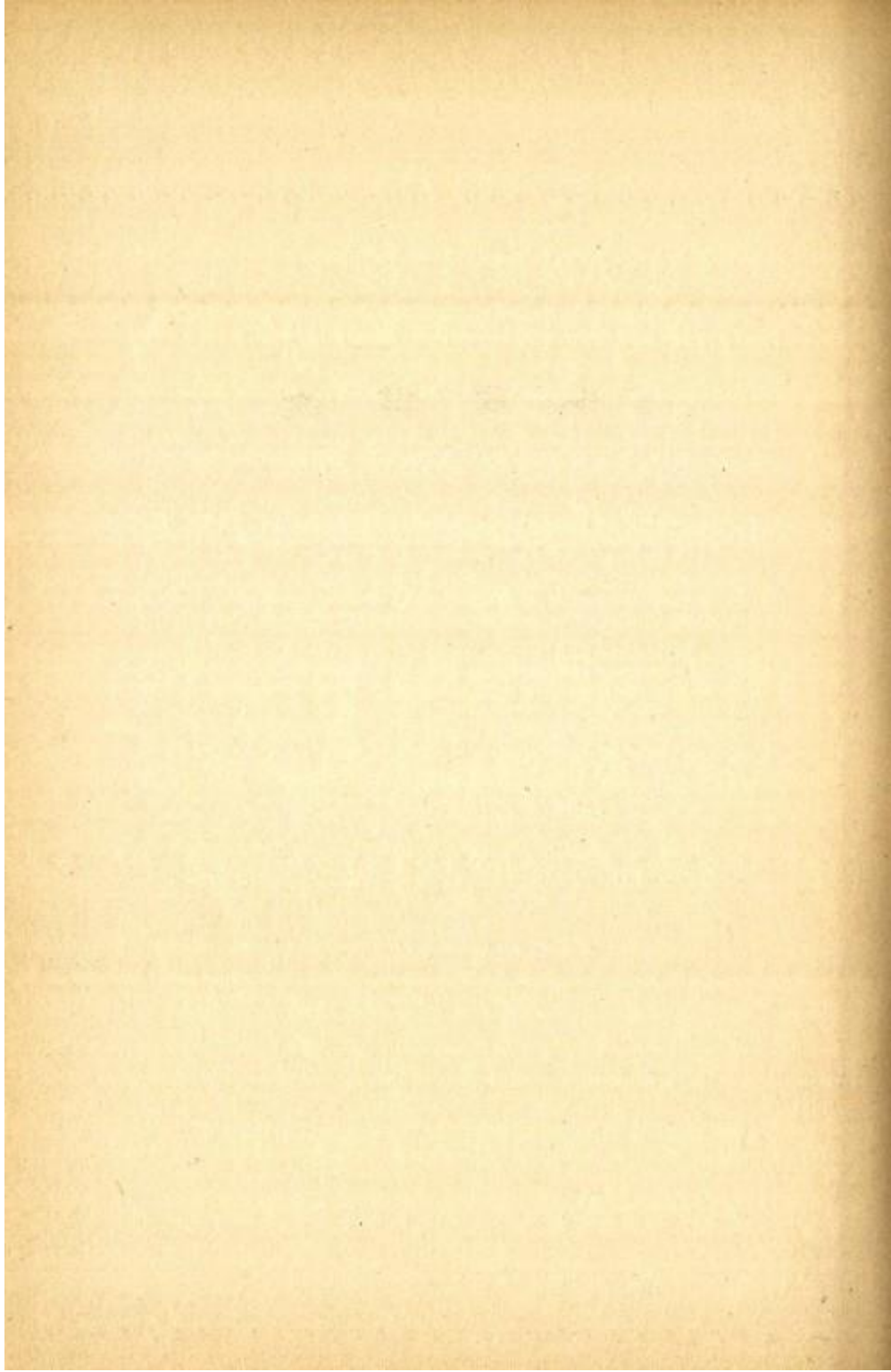
願컨대 議員諸位와 三千萬同胞는 政府의 使命과 意圖를 諒解하여서 政府와 合心協力 分工合作하여 曠古의 祖國再建聖業完遂에 奮闘邁進하여주심을 거듭 要請하는 바입니다.

大韓民國 30年9月 30日

大 統 領 李 承 晚
國 務 總 理 李 範 奭 (代 讀)



○外 賓 演 說



「 존·알·하지 (John R. Hodge) 」 南韓駐屯
美軍司令官의 演說

(1948. 5. 31.)
第 1 回 國會 (臨時會)
開 會 式

議長 韓國國民代表 및 貴賓여러분

오늘은 韓國의 歷史的인 榮光의 날입니다. 韓國國民의 모든 代表들의 會合은 韓國獨立을 向하여 오늘까지 있는 民主的 發展의 第一重大한 步調입니다.

美國官民과 現地에 와서 韓國獨立과 統一恢復에 最大努力을 하고 있는 數千名의 美國人은 愛國的이요 平和를 사랑하는 韓國國民과 더불어 이 歷史的인 開院式을 같이 祝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큰 所望과 自信을 가지고 여러분의 問題를 健全히 幸福스럽게 解決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國會가 있을 수 있고 兄今 形成이 된것은 一九四七年十一月一四日 四三對零으로 國際聯合總會에서 國聯監視下에 韓國에 選舉를 施行하기로 票決된 結果인데 其選舉에서 韓國國民은 여러분을 自己네의 代表로 選出한 것입니다. 이 國會에서 國事를 審議하는 것도 여러분의 責任인 同時에 여러분을 選拔한 國民의 希望과 意思에도 여러분의 責任이 있다는 것을 本官은 指摘하는 바입니다. 이 國會는 軍政이나 南朝鮮過渡政府의 附屬이나 或은 一部가 아니라 韓國國民有權者代表의 國會로 韓國國家를 爲하여 民主政府를 組織하고 그런 政府가 組織되면 國際聯合韓國委員會에 通知하도록 할 것입니다.

政府가 組織된 後 運營할 準備가 되면 그 政府가 國際聯合韓國委員團과 協議하여 政府의 機能을 引受할 것이요 그 政府는 世界自由國家에서 自主獨立國家로 承認을 받을 資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韓國의 將來는 韓國人自身의 손에 놓여있읍니다. 그 將來의 큰 責任은 이 國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앞으로 數日 或은 數週間에 하는 일이 韓國의 將來를 大部分 決定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問題에 當面하고 계십니다. 그 問題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日常 말씀하는 問題인데 解決만은 여러분이 마땅히 하여야할 問題입니다. 全世界의 眠目은 여러분의 國事審議에 集中되어 있으며 이 國會에서 決議하는 結果를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를 判斷할 것을 아셔야 합니다. 韓國國民은 五月一〇日 大慶祝의 投票로 여러분을 自己네 代表로 信任한다는 것을 表示했으며 國際聯合決議文에 있는 韓國民主政府組織의 義務履行을 有權者의 投票로 여러분에게 委任한 것입니다. 美國을 代表하여 韓國駐屯美軍司令官의 資格으로 또 韓國民族의 親舊의 한사람으로 여러분의 成功을 빌며 여러분이 失敗할수가 없다는 信念을 表現합니다. 本官은 貴國政府樹立에 있어 諸位의 審議에 左右할 意思는 秋毫도 없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點으로든지 도울 길이 있다면 힘있는데 까지 돕고져하며 도울 用意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모든 義務履行에 있어서 하느님의 鞭撻과 祝福있기를 빕니다.

「 미켈 · 바에 (M.A.P. Valle) 」 國際聯合
臨時韓國委員團議長の 演說

(1948. 6.30
第 1 回國會(臨時會)
第 21 次本會議)

韓國國會議長 紳士諸位 / 國際聯合臨時韓國委員團議長으로 세르반테스의 豐富한 言語로 韓國民의 榮譽스러운 國會議員諸位에게 人事의 말씀을 드릴 機會를 얻게된 것은 特히 本人에 對하여 眞實로 一大榮光입니다. 于先 貴國會開院式에 本委員團一同이 參席치 못한 것은 一大의 遺憾이었읍니다. 當時 本委員團은 上海에서 本委員團의 報告文 第一部를 作成하는 中이었으므로 本委員團의 要請에 依하여 本委員團 佛蘭西代表의 一員인 「코스틸」氏가 本委員團을 代表하여 貴開院式에 參席하였읍니다. 今日 本人은 이 機會를 利用하여 六月二五日 委員團은 一九四八年 五月一〇日 施行한 選舉의 結果는 本委員團의 監視가 可能하며 全韓國人口의 約 三分之二를 包含하는 韓國地域內에 在住하는 選舉人의 自由意思를 正當히 表現한 것이라는 意見을 記錄에 올리고 全員一致하여 可決하였다는 것을 諸位에게 公布합니다. 本議決은 一九四七年 十一月一四日附 國際聯合總會議決의 條項에 依하여 本委員團이 選舉를 監視한 것을 參照하여 採擇된 것입니다. 監視의 結果 本委員團은 以前에 言論自由 出版自由及集會自由의 民主主義의 權利를 尊重하는 相當한 程度의 自由雰圍氣가 存在한다고 宣言하였읍

니다. 本委員團의 決議는 本委員團이 建議한 選舉節次를 各 關係官憲이 大體로 正確히 適用하였다는 것을 本委員團이 滿足히 然後에 採擇된 것입니다. 選舉施行中 韓國民이 發顯한 愛國精神을 本委員團은 祝賀하는 同時에 이에 出席하신 國會議員諸位께서는 最大의 努力을 아끼시지 않으며 또한 誠心誠意로 可能한 最短期限內 韓國統一達成을 期하여 奮闘努力하심을 本委員團은 希望합니다. 諸位의 努力은 全韓國 愛國者의 全的協調를 받을줄로 本人은 確信합니다. 過般選舉에 關한 本委員團의 決議를 公布함에 添加하여 一九四七年 十一月一四日附 國際聯合總會決議 第二에 依하여 本委員團은 韓國民이 選舉한 代表者와 그분들이 그러한 相議를 要望하면 協議할 用意가 있다는 事實을 再次 말씀합니다. 韓國民의 平和와 繁榮을 衷心으로 祈願하는 나머지 國際聯合 臨時韓國委員團은 本人으로 하여금 本委員團의 韓國民將來一卽 韓國의 子孫들이 그 祖國의 偉大性을 爲하여 堅忍不拔하는 精神을 紛骨碎身하는 以上 實로 끝임없이 淸란할 將來에 對한 信念을 強調하라 要請하였읍니다.

「 필립·씨·제션 (Phillip C. Jessup) 美合衆國
大統領特使의演說

(1950. 1. 12.
第 6 回國會 (定期會)
第 3 次本會議)

議長 大韓民國國會議員여러분 오늘 이時間에 이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까지 드릴수가 있게 한 큰 榮光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데 對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지금 내안해와 나 사이에 아울러서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신 大韓民國을 爲해서 말씀하신 여러가지에 對해
서 同感인 同時에 敬意를 表합니다.

美國과 大韓民國사이에 親交를 말씀할것 같으면 過去 여러해 歷史를
가졌지만 이번大戰과 또 그大戰에 있어서의 勝利로 말미아마 韓國과
美國사이에 親交는 더욱 가까워지는 同時에 그 親近된 國交를 우리나
라에서는 더욱 더욱 歡迎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韓國의 建國과 確固한 地盤을 세우기 위해서 蘇聯과 蘇聯의
協助를 請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方向에 있어서 協助가 不可能한 까닭에 우리는 政
策을 돌려서 「유엔」을 相對로 삼고 「유엔」으로 하여금 韓國의 將
來를 開拓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外交政策으로 말씀할것같으면
「유엔」에 基準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
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代表한만큼 지금 이時間에 「유엔」에 있어
서의 韓國問題가 論議되고 있든 것을 몇가지 들어 말씀할 權利도 있
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유엔」이 열려서 韓國問題를 論議할 그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會員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大韓民國이 어떻게 完全한 國權을 세워서 이 世界萬邦에 列할수가 있을까 하는 疑訝한 點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美國은 그러한 疑心을 하고 있을 그대에 우리 美國만은 그 사람들과 같이 疑訝한다든지 疑心한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對한 確實한 證據로 말씀할 것 같으면 過去 「유엔」의 모든 會議에 있어서 美國이 그러한 態度를 取했고 그러한 信條를 가졌었고 特別히 몇個月前에 열렸든 「유엔」總會에 있어서의 모든 氣分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國內에서 建設的인 努力과 確實한 證據를 보여준 그 까닭에 또 아울러서 韓國「유엔」委員團의 總會報告書를 通해서 前에 가졌든 그러한 疑訝하고 疑心스럽든 態度는 一掃되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그 結果로 바서 우리나라에 感激을 주는 그 證左로서 美國 「트루만」大統領께서 國會에 敎書의 一端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에게 紹介하겠습니다. 거기에 大統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最後 卽 말하자면 結局에 目的은 어데있느냐 하면 世界의 平和에 있습니다. 世界 平和에 있어서 그것을 成功하는데에도 다른 國家와 같이 協助를 해서 나아가는데에 成功할 수가 있다고 보는 同時에 다른 國家와 協助하는데에는 우리가 먼저 國內에서 完全히 努力해야 겠다고 말했습니다. 美國國內의 모든 힘을 強化시키는데 있어서는 單純히 軍力 武力뿐만 아니라 그나라 國內經濟力과 社會的健康과 아울러서 民主機關의 健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故로 우리는 民主國家의 生産力을 增加하고 그것

을 維持해서 우리民主機關들이 個人的 自由를 確保하는 꾸준한 信念을 가져야 합니다.

美國大統領께서는 네가지 點을 包含한 네「포인트」의 案을 表示했는데 그 案은 亞細亞의 協助와 모든 計劃을 보면 네가지 「포인트」의 「프로그램」의 內容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이 世界의 큰 恐怖心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恐怖心을 주게 하는 것은 世界萬邦 各國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 하느냐 하면 거짓말 證據 거짓말피로서 이끄러 나가려는 共產主義로 말미암아 그 民衆의 自由와 높은生活 程度가 破壞될 그것을 念慮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方法을 選擇하지 않고 끝끝내 나가며 우리들의 缺陷을 利用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또는 무슨 일에 對해서 缺陷을 利用해서 自己네들의 方法으로서 世界萬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것과 같이 約束하는 것입니다.

이 抗戰이라고 하는 것은 武力을 가지고 抗戰하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抗戰으로 말할것 같으면 우리들의 經濟機能과 技術과 모든 能率에 對한 抗戰인 同時에 우리들로 하여금 團結을 해서 다른나라 사람과 合해서 일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지금 읽어드린 말은 다른것이 아니고 美國大統領이 自己 사랑하는 百姓에게 國會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입니다.

美國의 大統領이 美國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제가 敢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말 가운데 包含된 眞理 다른民主 國家에도 適用될 것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國家의

國力이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經濟力이든 지 社會力이든지 或은 다른 힘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해서 그 國家를 維持하는데에 必要한 것입니다.

結局 美國에 있어서나 여러분 大國民國에 있어서나 우리의 經濟機構에 있어서 우리 社會生活에 있어서 各百姓의 民權을 人民의 自由를 維持할 수 있는 民主機關을 維持하고 그것을 發展시킬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美國과 韓國은 더불어서 將來에 있어서 더 나은 未知生活을 우리는 鬭爭에 勝利할 것입니다. 이것이 卽 協同적으로 發展해 나가는 길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民主主義적으로 向上하는 路程을 表示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1個部門만이 1個國家만이 간단히 이 目的을 成就하고 完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完遂하는데에는 世界各國의 自由를 찾는 百姓들이 한데 뭉쳐서 한 方面으로 나가는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무쵸」 大使와 일하시는 一行을 통해서 美國은 確實히 믿건데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수가 있다고 하는 證據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할 것은 나 個人과 내안해와 우리國家를 代表해서 이 機會를 주신데 對해서 거듭 거듭 感謝를 드립니다.

